



15

독일통일 총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15

독일통일 총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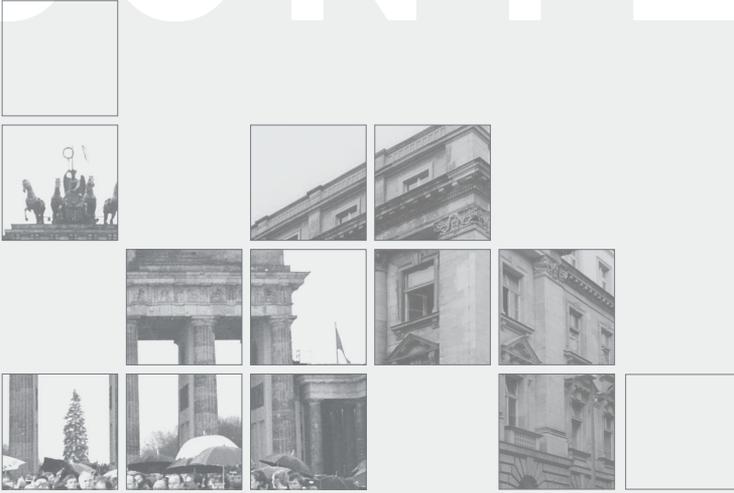
회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들어가며	10
제1장 화폐통합의 정치적 배경	13
제2장 체제경쟁 40년	16
제1절 기본 경제상황	16
제2절 산업구조	20
1. 에너지/연료공업	21
2. 화학공업	22
3. 석재공업	23
4. 철강/비철금속공업	23
5. 기계/차량공업	24
6. 전자/정밀기계/광학	25
7. 섬유공업	25
8. 식량/기호품공업	25
제3절 국가재정	27
1. 중앙계획경제와 국가재정	27
2. 재정수입 구조	29
3. 재정지출 구조	31

제4절 은행제도	32
1. 역할	32
2. 은행제도의 조직과 구조	34
제5절 동독 마르크	35
제6절 대외경제	37
제3장 동독의 경제위기	39
제4장 화폐통합 과정	46
제1절 동독인의 이주행렬	47
제2절 화폐통합 논란	48
제3절 화폐통합의 정치적 선택	51
제4절 화폐교환비율의 결정	55
제5절 화폐통합의 실행	59
제6절 연방은행의 관할권 확대	61
제7절 동독 은행제도 개혁	63
제5장 화폐통합의 경제적 충격	66
제6장 화폐통합의 부작용	73
제1절뱅크런	73
제2절 외환 스캔들	74
제3절 사기	77
제4절 도난	77
제5절 은행의 부당이익	78
제7장 화폐통합 25년	92
제8장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100

CONTENTS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과 독일통일

들어가며	110
제1장 동독경제와 금융	112
제2장 변혁기-통합으로의 길, 통일을 위한 구상	123
제3장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와 결정	129
제4장 화폐교환비율	139
제5장 화폐통합조약	151
제6장 화폐통합의 후속조치	156
제7장 금융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방감사원의 평가	160
제8장 화폐통합 분석이 주는 시사점	174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82
문서 요약	196
문서 요약(문서번호 1~71)	196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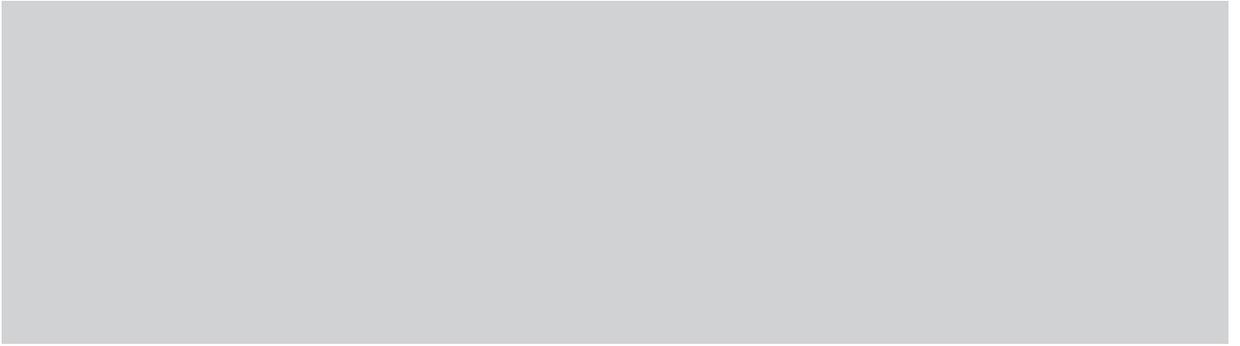
표 목차

표 1-1) 동서독 주요 지표(1989년 기준)	17
표 1-2) 4인 근로자 가계의 순소득 지출구조	18
표 1-3) 도시별 산업총생산 비중(1988년)	20
표 1-4) 동독의 산업구조(1988년)	21
표 1-5)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22
표 1-6)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1988년)	27
표 1-7) 동독의 국가재정(1988년)	31
표 2-1) 동독 금융기관들의 구채무 청구권	164
표 2-2) 서독은행에 의한 동독 금융기관 인수	167
표 2-3) 동서독 화폐통합 연표	177

그림 목차

그림 1-1) 동독주민의 이주행렬(1989-1990년)	48
그림 1-2) 동독 근로자 가계저축률(두 자녀 가구)	67
그림 1-3) 동독지역의 산업생산 변화	69
그림 1-4) 동서독지역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2012년)	93
그림 1-5) 구동독의 구조전환-산업부문별 취업인구 비중	94
그림 1-6) 동서독지역 산업의 매출 중 수출의 비중	95
그림 1-7) 정규직 근로자 월소득총액(2013년)	96
그림 1-8) 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주민의 비율(2012년)	98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 호 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들어가며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동서독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지도 4반세기 이상이 흘렀다. 평소 주도면밀한 독일인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과 같은 것이었다. 1989년은 동독에게 건국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공식적으로는 이를 기념하는 축제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이 당시만 해도 1년 후에 동독, 즉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견한 독일인은 아무도 없었다. 해외에서도 동독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다. 동독 지도부가 호언했던 막강한 지지기반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상상은 더욱 근거 없다는 비판을 자초했을 것이다. 동독 공산당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 당원 수만 해도 거의 230만 명으로 동독 성인인구의 1/6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소위 위성정당인 ‘형제정당’, 청년조직인 ‘자유독일청년단’, 노동단체인 ‘자유독일노조연맹’, 예비군에 해당하는 ‘기업전투집단(Betriebskampfgruppe)’ 등도 막강한 회원 수를 자랑하고 있었다.

사실 동독의 체제전환의 물꼬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 공산당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이 동독의 정치환경에도 더디게나마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동독 지도부는 개혁을

거부했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소수의 동독 재야운동에서뿐만 아니라 동독 공산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었다. 동독 정권의 정당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첫 번째 분명한 조짐은 1989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조작한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에서 나타났다. 그해 여름에는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이주를 요구하면서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의 동독대사관을 점거했다. 9월에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했고 동독인들은 서방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자유와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대 규모는 갈수록 커져갔다. 같은 해 10월 베를린을 방문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너무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다”라는 함축성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동독 개혁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가지고 동베를린 주재 소련대사관에 동의를 구하고자 했지만 당시 소련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0월 중순에는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물러났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동독에서 통일운동이 확산된 데에는 동독의 경제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동독경제의 부실한 모습이 예전에는 생산설비의 잦은 가동중단에서 감지만 되었을 뿐,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다. 동독경제의 실상에 관한 정보는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서 1989년 가을부터는 공개되기 시작했다. 1989년 10월 7일에만도 호네커 서기장은 동독이 건국 이래 ‘현대적인 구조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이미 ‘세계 10대 공업국에 속하는 동독경제의 생산성은 마이크로전자 기술을 활용해서 더 빨리 상승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하지만 실상은 동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살고 있었다. 갈수록 많은 경제적 자원이 소비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생산적 투자는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자산소비적 사회정책’(Hübner 1998)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출수입과 해외차입은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의 통일'이라는 당초 당 노선에서 예정되었던 것처럼 생산설비 구매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식량과 같은 소비재 구입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독일통일은 서독과 동독의 체제경쟁에서 동독이 패배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화폐통합에 이르게 된 정치적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화폐통합을 필요하게 만든 동독의 경제위기 상황을 동독의 자체 비밀문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일반적인 경제상황을 일별하고자 한다.

화폐통합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학계와 정계에서의 논란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화폐통합의 협상과정 및 내용, 실행과정에 대해 일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화폐통합이라는 '충격요법'이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화폐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화폐통합이라는 역사적 격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행위나 그에 준하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화폐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서독은행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악용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반도통일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화폐통합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경제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화폐통합의 당초 목표였던 '동서독 생활수준의 균등화'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이어서 독일 화폐통합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장

화폐통합의 정치적 배경

40년에 걸친 일당독재체제를 종식시킨 동독의 평화적 혁명은 동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개혁운동의 일부였다. ‘철의 장막’을 걷어내는 이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추동했던 페레스트로이카 덕분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서 냉전의 해소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지만 소련의 경제적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소련의 내적 요구에 따른 사회주의 개혁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사이에 동유럽의 정치적 지형이 급변했다. 동유럽에서 1989년이 혁명의 해였다면 1990년은 자유로운 민주선거의 해였다. 자유, 민족자율, 독립은 물론 시장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이 개혁운동의 주요 목표들이었다. 소련에서의 개혁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매우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기정사실들이 형성되어 동유럽의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라이프치히의 시위가 갈수록 고조되자 동독 공산당 정권은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개혁운동의 한복판에서 동독은 분단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동독의 개혁은 그 진행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서독의 존재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다. 40여 년에 걸쳐 진행된 두 나라의 체제경쟁 속에서 서독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된 동방정책은 무엇보다도



두 나라 사이의 정보의 흐름을 비록 비대칭적으로나마 원활하게 했으며,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이주에 대한 법적, 사실적 제약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적었다. 동독인들은 대부분 서독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서독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자가 급증했다. 1990년 3월 말까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이주자가 발생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동독은 주민의 3%를 잃은 셈이었다. 그중에는 특히 서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숙련인력이 많았다. 이는 당시 숙련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서독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성과가 부진했던 동독에게는 재앙이었다. 이러한 급속한 이주는 국경이 개방되고 향후 동서독의 관계를 점진적인 동화로 설정했던 초기 발상들, 가령 당시 콜 수상의 10개항계획이 실행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독 마르크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는 당시 동독 시위대의 구호는 동독 주민에게 동독에 머물지라도 조만간 그들의 상태가 지속가능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서독정부는 1990년 2월 7일 ‘경제화폐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협상을 동독정부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3월 18일 인민회의 선거결과는 이러한 동맹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신속한 정치적 통일에 대한 찬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독이 서독의 경제사회질서를 대폭 상당 부분을 도입하고 상당 부분의 주권을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이 ‘경제화폐동맹’은 국가적 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정치적 통일을 위한 정확한 일정은 전혀 잡혀 있지 않았다. 이는 또한 동서독과 4개 연합국(2+4) 사이에서 이루어진 독일통일의 외교안보 측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는 속도에도 좌우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할지가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독일통일을 결정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없었다. 1990년 후반을 지나면서 다시 구성된 동독의 5개 주가 서독헌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전독 의회가 독일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일독일은 40여 년 동안 보존된 서독의 구성원리를 수용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와 함께 자유로운 연방법치 국가로 건설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천은 특히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의 주민과 기업에게 엄청난 변화를 의미했다. 여기에서는 화폐통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동서독 체제경쟁 40년을 결산해보기로 한다.

체제경쟁 40년¹⁾

제1절 기본 경제상황

동독의 경제발전을 위한 출발조건은 분명 서독에 비해 불리했다. 독일의 탈군사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포츠담협정에 의거하여 동독에서는 소련이 상당한 산업시설을 해체하여 본국으로 가져간 데 반해 서독에서는 그러한 해체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동서냉전의 국제환경 하에서 ‘마셜 플랜’을 통해 경제재건을 위한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이 서독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된 현실을 출발조건인 차이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80년대 후반 들어 갈수록 체제 내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은 공식 통계와는 반대로 체계적으로 미화되고 있었고, 대체로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훗날 경제계획 담당자들의 고백이었다.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는 전체적으로 부족했고, 그에 따라 국민경제의 자본스톡은 낙후되었다. 이는 기업의 생산자본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에도 해당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의 도입도 대부분 포기되었다. 그 결과 서독과 비교할

¹⁾ 이 장은 화폐통합이 발효되기 직전에 작성된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해져 주민의 생활수준도 낮아졌다. 1980년대 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동시에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동베를린의 대기오염이 서베를린에 비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표 1-1) 동서독 주요 지표(1989년 기준)

	면적 (1,000km ²)	인구 (백만 명)	취업인구 (백만 명)	GDP (10억 마르크*)	세계무역 비중(%)	대선진국 수출** (10억 DM)
동독	108.0	16.5	9.0	353.0	1.0	5.5
서독	249	62	28	2,237	10	550

* 동독은 동독 마르크, 서독은 서독 마르크 표시.

** 내독무역 제외.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먼저 동독은 국토면적에서 서독의 43% 수준이었지만, 인구는 27% 수준이었다. 국민총생산에서는 서독의 1/6 수준이었지만,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정도는 서독에 크게 뒤떨어졌다(표 1-1) 참조). 두 나라 사이에는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했다. 서독과는 가격구조와 생산구조가 상이할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고 단지 편차가 적지 않은 추정치만 있을 뿐이지만 격차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다음 절 참조). 국민생산의 비교에서도 격차는 확인된다. 서방의 국민경제 통계방식에 따르면 동독의 국내총생산은 1989년에 3,530억 동독 마르크를 달성했다. 1:1 비율로 서독 마르크로 환산하면 구매력이 대등하다고 가정할 때 이는 서독의 약 1/6에 해당하며, 취업자 1인당으로는 절반, 주민 1인당으로는 약 60%에 달하는 수치이다. 실제 격차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물의 품질 또한 열등했고 공급애로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수준에서는 격차가 훨씬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독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독 근로자 4인 가족의 평균 순소득은 1989년 약 2,300 동독 마르크였다. 참고로 서독에서는 4,100 서독 마르크였다. 그밖에 서독의 높은 소득은 짧은 노동시간(주당 노동시간이 서독은 38시간, 동독은 43시간)에 외벌이 가정



이 달성하는 소득이었다. 반면에 동독 가계에서는 여성의 높은 취업률(서독의 50%에 비해 83%)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동독의 소비관행을 기초로 하여 구매력에 따른 정정을 거칠지라도 소득격차에는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값비싼 공산품의 비중이 높은 서독의 상품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독 가계의 소득우위는 더 커질 것이다.

재화그룹별 소득지출 비중이 상이했던 사실은 1차적으로 상이한 소비관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표 1-2〉 참조). 그것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왜곡된 가격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동독에서 가격은 대부분 재화와 용역의 비용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은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의 도구였다. 식량과 교통서비스, 임대료(난방, 전기, 가스 포함)는 특히 국가의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했다. 통일 후 동독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빵값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빵이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난방비가 저렴하다보니 난방을 끄지 않고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직장에 출근하는 사례도 있었다.

표 1-2) 4인 근로자 가계의 순소득 지출구조*

(단위 : %)

항목	동독	서독
생필품	22.7	16.5
기호품	8.2	3.8
신발/의복	12.5	5.6
기타 공산품	22.6	20.7
임대료, 난방, 전기, 가스	3.7	21.9
자동차세/보험/수수료/이자	9.19	10.8
기타 서비스	7.6	13.1
자산 형성/부채 상환	12.8	7.6
합계	100.0 (= 2,308 동독 마르크)	100.0 (= 4,115 서독 마르크)

* 이 구조는 특히 가계유형과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비교가 가능함.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동독에서는 적지 않은 가격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

독 가계는 평균적으로 임대료로 소득의 5%도 지출하지 않았다. 이는 서독의 약 2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서독주민의 주거면적이 더 넓은 데 기인하기도 했다(1인당 36m² 대 27m²). 아울러 동독 주택에서는 편의성이 부족했다(중앙난방비율이 서독은 71%인데 비해 동독은 41%). 또한 동독에서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주택의 상태가 열악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동서독의 임대료 격차 4배가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독 가정이 내구소비재를 구비한 정도는 서구의 기준으로 본다면 소박했다. 동독 가정의 절반만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이마저도 품질면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서독은 100가구당 94가구). 마찬가지로 동독 가구의 절반만이 칼라TV를 보유하고 있었다(서독에서는 100가구당 89.4가구). 동독에서 전화기는 사치재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6가구당 1가구만이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비해 서독에서는 흔한 생필품이었다. 동독에서는 100만 건 이상의 전화기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했다. 서독에서는 이미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많은 제품들이 동독에서는 사실상 보급되지 않았거나 매우 드물었다. 세탁물건조기,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CD플레이어, 가정용컴퓨터가 그러했다².

동독은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특별한 업적의 하나로 내세우곤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독의 사회안전망에 비해 중요한 약점을 드러냈다. 가령 노령연금은 1989년 말 450 마르크 정도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부실했다. 단지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특혜처럼 소수의 분야에서는 서독에서보다 앞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거의 국가의 수중에만 있었다. 국가소유 100%를 '사회주의의 완성'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산업은 완전히 국유화되어 있었고 교통부문도 거의 100% 국가소유였다. 동독에서 잔존

.....

² 통일 직전 동독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베를린에 소재하는 동독박물관(DDR Museum)에서 체험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



하던 사영기업은 대부분 소매업, 요식업, 수공업에 국한되었다. 특히 수공업에서는 거의 80,000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었다. 사영기업에 종사하던 취업자 수는 약 4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에 달했다.

산업, 운수, 인구가 지역적으로나 국지적으로 집중되고 고도로 도시화된 경제권은 동베를린과 막데부르크를 제외하고 동독 남부지역(드레스덴/켄니츠, 츠빅кау/할레/라이프치히)에 위치해 있었다. 할레,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켄니츠를 아우르는 경제권에서만 동독 산업총생산의 절반가량이 생산되었다. 반면에 로스톡, 슈베린, 노이브란덴부르크를 아우르는 북부경제권은 규모는 비슷했지만 비중이 7.7%에 지나지 않았다.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남북격차가 두드러졌다.

표 1-3) 도시별 산업총생산 비중(1988년)

(단위 : %)

도시	로스톡	슈베린	노이브란덴부르크	포츠담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코트부스	막데부르크
비중	3.3	2.53	1.9	5.7	7.0	6.2	6.6

도시	할레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켄니츠	에르푸르트	게라	줄	동베를린
비중	15.9	7.9	10.7	12.3	6.8	4.8	3.0	5.6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제2절 산업구조

동독의 공업생산은 서독의 약 1/4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약 2/3에 달했다. 서독의 40%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었다.

표 1-4) 동독의 산업구조(1988년)

(단위 : %)

부문	식품/기호품공업	수자원	에너지/연료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비중	15	1	7	20	10
부문	철강/비철금속	석재공업	기계/차량공업	전자/정밀기계/광학	섬유
비중	9	2	21	9	6

출처: 독일경제연구소(DIW), 동독통계연감.

거의 모든 공업생산이 수많은 개별기업들을 결합하고 있던 콤비나트에서 이루어졌다. 약 130개에 달했던 콤비나트는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었고 95개의 소규모 콤비나트는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동독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 수준의 1/3 내지 1/2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나라의 노동생산성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동독에서는 비용과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 직전 동독기업의 생산성이 예전보다 더 비관적으로 추정되었던 이유는 많은 동독 생산물의 품질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동독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무엇보다도 납품되는 자재의 결합과 납품 지연, 지나치게 높은 자기생산 비중, 과도한 관리비용, 노동자들의 동기 부족, 낙후된 생산설비,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등에 기인했다.

주요 산업부문으로는 다음 8가지를 거론할 수 있으며 이들 부문이 공업 총생산의 약 90%를 차지했다.

1. 에너지/연료공업

동독에서는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70%가 국내산 갈탄으로 충당되었다. 1978년부터 석탄은 더 이상 채굴되지 않았다. 수입 에너지원으로는 석유와 가스가 있었으며 원자력에너지는 서독보다 훨씬 적게 사용되었다. 동독은 세계 갈탄생산량의 1/4을 차지하는 최대생산국이었다. 발열량은 낮으면서 유



황과 수분 함량이 높은 저품질의 갈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낡은 발전설비의 성능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효율성 손실과 에너지 낭비가 매우 심했다. 그리하여 동독의 1인당 에너지소비가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였다. 여기에는 가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높은 보조금도 한몫했다. 서독의 1인당 에너지소비는 동독보다 1/5 내지 1/4 적었다.

표 1-5)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단위 : %)

	서독(1989년)	동독(1987년)
석유	40.3	13.2
석탄	19.2	3.8
가스	16.9	9.4
원자력	12.5	2.9
갈탄	8.5	69.7
수력	2.6	1.0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동독 에너지산업이 안고 있던 또 다른 문제는 발전기술이 매우 낡았을뿐만 아니라 갈탄사용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몇몇 발전소는 가동연한을 넘겼을뿐만 아니라 서구식의 탈황설비나 탈질소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동독은 유럽에서 이산화황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했다. 주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유럽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였다.

2. 화학공업

동독의 화학공업은 대부분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었다. 현대적인 석유 화학공장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설비가 2차대전 이전에 갖추어진 것이었다. 공장들은 주로 할레/라이프치히권(로이나, 부나, 비터펠트)과 슈베트/오데르에 밀집되어 있었다. 14개 콤비나트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는 독점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원자재 생산지에 가깝게 입지해서 기초생산물과 대량

생산물을 생산(갈탄을 화학원료로 가공)했을 뿐 부가가치 생산은 높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령 동독 전체 화학공업에서 합성수지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독의 26%에 비해 약 12%로 매우 낮았다. 그나마 동독의 합성수지가공은 서독의 생산성 수준에 가장 먼저 접근한 부분이었다. 동독 화학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비료였다. 비료는 서방에 대한 주요수출품이기도 했다.

3. 석재공업

건축자재산업은 동독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부문에 속했다. 콤나트 구조의 이동성 부족은 고품질의 건축자재가 도입되는 것을 막았다. 주택건설기술에서는 조립식주택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임대료가 낮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에서는 성장동력이 발생할 수 없었다. 건축물 품질은 오히려 다시 열악해지는 상황이었다. 동독 주택의 40% 이상이 입주한 지 70년 이상 되어 낡았다. 반면에 서독에서는 그 비중이 21% 정도였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대부터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종사자 수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4. 철강/비철금속공업

동독의 철강공장은 매우 노후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너무 작았다.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공정이 사용되는 철강생산설비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38%). 반면에 서독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제강기술의 비중이 90%에 달했다. 산소철강공장의 원강생산 비중이 28%에 그쳐 서독의 8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서독에서는 1983년부터 더 이상 투입되지 않고 있는 전통적인 지멘스-마르탱노 공법에 따라 생산된 원강의 비중이 동독에서는 42%를 넘었다. 고부가가치의 철강제품에 집중하는 서독기업들과는 달리 동독 철



강공업은 특히 재가공역량의 부족 때문에 단순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동독에는 열연강판 생산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을 위해서 열연강판 반제품을 압연해야 했다. 서구에서와는 반대로 동독에서 철강산업 종사자는 크게 증가했다. 유럽의 과잉설비가 동독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았다. 철강생산을 자립하려는 의욕이 동독이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주요동기로 작용했다.

5. 기계/차량공업

상호경제협력기구(COMECON) 내에서 합의된 분업에 의거하여 동독 기계공업 제품은 주로 소련에 공급되었다. 따라서 생산물의 종류는 주로 소련의 필요에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했다. 소련은 인쇄기의 절반, 농기계의 41%, 선박 및 선박장비의 27%를 동독에서 수입했다. 나아가 동독은 중장비와 공작기계 분야가 탁월했다. 컴퓨터기반 기계의 비중은 특히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리스트에 의거한 공급제한으로 인해 서방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공작기계와 인쇄기 부문에서는 동독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자동차공업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에서도 낙후되어 있었다. 개인교통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관심이 매우 적었다.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대기수요가 3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미 보급된 승용차 수에 버금가는 수치였다. 조선공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로스톡에 소재하는 조선콤비나트와 슈트랄준트에 소재하는 세계 최대 어선조선소는 소련의 대규모 수요 덕분에 대량생산의 이점을 살릴 수 있었다. 가령 30종의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적지 않은 비용절감이 가능했었다. 나아가 조선소는 소련의 대대적인 보수 주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6. 전자/정밀기계/광학

이 부문은 현대화 정도에서 매우 이질적이었다. 마이크로전자에서 동독은 막대한 투자 덕분에 서방을 상당히 추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었다. 전자데이터처리 설비를 유일하게 제작하던 로보트론 콤비나트는 서방 경쟁자들과는 달리 모든 부품을 사실상 자체생산했다. 전구, 냉장고, 전동타자기와 같은 소비재의 대서방 수출은 상당히 두드러졌지만 통신 분야는 발전 수준이 낮았다. 기계적 최종재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비효율적인 자립경제 추구하고 자본부족과 함께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리스트는 강력한 기술이전과 혁신 주기의 단축을 방해했다. 반면에 칼 차이스 콤비나트에서 생산되는 광학기계, 가령 망원경, 우주선카메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7. 섬유공업

서독에서는 섬유공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었던 데 반해 동독에서는 콤비나트로 조직한 결과 기업 규모가 매우 컸다. 주로 표준화된 대량 생산품이 생산되었다. 제3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강한 경쟁 상대로 부상했다.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하기 어려웠다. 자본부족으로 인해 유연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없었다. 독일 섬유산업이 작센/튀링겐으로 집중되던 2차대전 이전에 도입된 기계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고급 섬유제품에 대한 주민의 대기수요는 매우 컸다.

8. 식량/기호품공업

주민에 대한 생필품 공급이 양적인 면에서는 좋았다. 그러나 식량은 질이



낮았으며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다. 가령 육류와 같은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의 품질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맥주와 같은 다른 생필품에서도 생산설비가 크게 부족했다. 몰락하기 전 20년 동안 특히 고급 제품의 품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여기에서도 자립경제 목표가 경쟁 부족을 초래하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독의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했다. 서독에 비해 인구 대비 2배가 넓었던 동독의 농경지는 모두 사회주의 부문에 속했다. 공업에서처럼 대형화를 모범으로 농업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40% 정도에 머물렀고 면적생산성은 약 75%에 그쳤다.

농업용 기계의 상태는 동독이 몰락하기 전 수년 동안 악화되고 있었다. 동독에서 농산물과 가공 제품(육류, 계란 등)의 생산자가격은 유럽연합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과일, 계란, 가금류 등 일부 농축산물은 상당 부분 개인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되어 공급상황이 개선되기도 했다.

동독의 교통망은 노선구성이나 확장상태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운송부문은 동독경제에서 애로가 두드러진 부문이었다. 철도망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낙후되어 있었다. 1980년대 초부터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철도를 화물운송수단으로 집중 이용함에 따라 철로가 크게 혹사당했다. 전체 철도망의 1/3이 공사구간이었고, 따라서 감속구간이었다. 화물차량은 기껏해야 시속 60km, 여객차량은 시속 100km로 달렸다. 동독정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4,000km의 철도망 중에서 7,000-9,000km가 완전히 새로이 건설되어야 했다. 나아가 주요 노선의 전기화와 복선화, 신호체계 및 역사의 현대화와 보수가 필요했다. 아울러 차량(궤차, 기관차)도 교체되고 대형화되어야 했다. 컨테이너 운반에 필요한 화물차량도 없었다.

표 1-6)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1988년)

(단위 : 백만 톤)

	동독	서독
철도	349.4	302.2
원격도로	27.0	390.5
근거리도로	518.1	2,180.0
원격파이프수송	37.0	68.8
내륙수로	20.3	233.3
항공	0.03	1.08

출처: 연방교통부, 동독통계연감, 1989.

도로망은 서독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았지만 상태는 마찬가지로 열악했다. 고속도로와 주변도로의 노면, 하부, 진입로뿐만 아니라 조망상태도 열악했다. 동독 고속도로의 2/3 가량이 2차대전 이전에 건설된 것이었다. 그렇지 않은 고속도로는 주로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었던 베를린-함부르크, 베를린-헬름슈테트 사이의 통과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라이프치히-드레스덴, 베를린-로스톡 고속도로와 베를린 순환도로 일부가 있었을 뿐이다. 서독에서는 화물운송의 10%도 차지하지 않았던 도로와 철도의 결합교통이 동독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교통망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통일 후 시급한 교체투자를 위해서만도 1,0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환경, 에너지, 통신, 소비재산업(주택건설 제외)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분야에서 5,0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서독의 연간 설비투자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제3절 국가재정

1. 중앙계획경제와 국가재정

동독의 중앙계획경제에서는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계획과 조종을 위해



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인적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쳤을뿐만 아니라(분배기능), 국민경제의 자원을 개별 사용영역, 부문, 지역에 배분하고(배분기능) 각각의 5개년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과업의 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가의 예산감독에 포함되어 있었다(통제기능).

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재정이 국가에 의해 수립된 수량계획에 대한 화폐적 대응계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거시경제적 계획목표치가 다양한 재화종류와 미시경제적 차원(콤비나트, 기업)에 할당되었고, 기업의 재무계획목표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계획은 부문과 분야별로 투자를 포함한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확정했다.

동독의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타 지방정부의 예산, 사회보험 예산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 하위 차원의 재정은 각각의 상위 지도차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통제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에 대하여 지휘권을 가졌다. 동독의 지방정부 사이에서 서독식의 재정조정은 없었다.

거시경제적 계획도구로서 국가재정은 연간수지로서뿐만 아니라 5개년계획의 전망계획으로서도 작성되었다(중기재정계획). 1989년도 동독통계연감에 따르면 1988년도 동독 예산은 2,70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지출의 73%는 중앙정부에 할당되었고, 약 20%가 지방정부 그리고 약 7%가 사회보험에 할당되었다.

재무부는 다른 모든 재정기구 및 차원에 대하여 지휘권을 가졌다. 독립적인 권력기관(회계감사원이나 기타 유사 기관)에 의한 집행부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집행의 규칙과 원칙(완벽성, 총액일치의 원칙, 명확성, 공개성 등)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서독의 것과 일치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서로만 남아 있었다.

2. 재정수입 구조

동독의 예산회계에서는 4가지 유형의 수입이 구분될 수 있다. 인민소유 콤비나트 및 기업으로부터의 납입금, 조세, 사회보험 분담금, 기타 분담금 및 사용료, 수수료가 그것이다. 이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수입원이 인민소유부문으로부터의 납입금으로서 1988년에 총수입 2,060억 동독 마르크의 76.4%를 차지했다. 이 납입금은 생산기금공과금, 상업기금공과금, 이윤납입금, 생산물 관련 공과금, 사회기금에 대한 분담금으로 징수되었다.

생산기금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공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민소유 기업이 보유한 생산요소 자본(설비자산과 유동자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서독의 재산세와 유사한 이 공과금은 대체로 투입된 총설비자산 및 유동자산(1986년부터는 과세기반의 순가치)의 6%에 달했다. 상업기금공과금은 국영 도소매업, 생산수단거래, 호텔 및 요식업에 부과되었다. 이때 공과금부과율은 1%(호텔 및 요식업)에서 6% 사이였다. 두 공과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1988년 30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순이윤납입금은 국가가 임의로 정하는 납입금이었다. 부과율을 변경함으로써 국가는 구조정책과 직접적인 투자조정을 시도했다. 납입금은 과세기반이 되는 이윤이 독립적인 잔여변수로서 계산되고 거기에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윤세와 차이가 있다. 과세부담은 각의의 의결에 따라 매년 기업별로 확정되었다. 순이윤은 계획된 총이윤에서 생산기금공과금을 제하고 산정되었다.

기업의 제품가격, 비용, 계획에 따른 이윤할증은 국가가 책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순이윤의 크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계획을 초과하는 이윤은 재정계획에 정해진 비중에 따라서 국가재정으로 납입되고 나머지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사회기금과 수당기금을 포함하는 기업기금으로 산입되어야 했다. 실현된 이윤이 계획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기업들은 정해진 순이윤납입금을 납부해야 했다. 1988년에 순이윤납입금에서 발생한



수입이 435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생산물 관련 공과금은 본질적으로 기업가격(자기비용+이윤)과 산업양도 가격(생산물 관련 공과금을 포함하여 도소매기업 및 모든 직접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인수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소비세였다. 이 공과금은 일단 각 콤비나트에 부과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계가 해당 재화를 구매할 때 부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1988년에 43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1984년 말에는 사회기금을 위한 분담금이 도입되었다. 공업과 건설업에서 징수된 이 공과금은 각각 계획된 임금기금(임금총액)의 70%에 달했다. 이는 한때 서독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임금총액세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 항목은 1988년 재정수입에 350억 동독 마르크나 기여했다.

민간부문에 부과되면서 예산에서 드러난 조세로는 생산협동조합, 수공업, 사영기업에 대한 공과금과 임금소득세, 지방세가 있다. 조세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7.7%(208억 동독 마르크)에 지나지 않았고 이중 3.7%를 임금소득세가 차지했다.

서독과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일련의 직업군과 기업군에 대하여 소위 경제정책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반영하는 특유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가령 근로자활동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임금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반면에 잔존하는 민간부문(자영업, 자유업, 임대업, 자산)의 이윤 또는 총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 89%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었고 40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98%까지 상승했다.

동독에서 자본회사는 1989년 11월 정치적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부담했으며 2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 그 밖에 영업세와 재산세가 있었지만 이들은 사소한 재정적 의미밖에 가지지 못했다.

표 1-7) 동독의 국가재정(1988년)

(단위 : 10억 동독 마르크)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콤비나트 및 인민소유 기업 납입금	206.0	투자 및 R&D 직접 보조금	98.9
조세 및 공과금	20.8	가격지지	60.6
사회보장 부담금	18.8	국가소비	64.0
수수료, 이용료, 부담금	3.0	가계이전	30.5
은행 및 보험 납입금	9.8	총투자	16.0
기타 수입	11.6	-	-
합계	270.0	합계	270.0

출처: 동독통계연보 1988년.

영업이익세는 최고 20%에 달했으며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 과세기반에서 징수될 수 있었다. 자본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0.5-2.5%의 세율이, 법인의 경우에는 2-2.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부담을 모두 합산할 경우에-소득 또는 이윤과 비교할 때-한계세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최종소비가 중간재 생산보다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산협동조합의 실적에 대해서는 최고 45%의 이윤세가 부과되었던 반면에 중간재 공급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60%가 적용되었다.

사회보장분담금은 동독 재정수입의 3대 원천으로서 1988년 188억 동독 마르크가 징수되어 총수입의 7%를 차지했다. 노동자와 협동농장 구성원의 분담률은 수입의 10%였고 기업의 분담률이 임금과 급여의 12.5%였다. 자영업자 소득에서는 20%가 징수되었다.

3. 재정지출 구조

동독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조도 사회주의적 조종시스템과 국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했다. 재정지출에서 보조금 지급이 큰 비중을 차지했



었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이다.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이 1988년에 989억 동독 마르크로서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인민 소유 경제부문에 대한 보조금, 농업 지원금, 국영기업의 연구 및 직업훈련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자가격, 협정요금,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낮은 가격의 형태로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기업에 지불되었다. 1988년 가격지지 규모는 606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고, 이 중 320억 동독 마르크가 식량가격 보조금이었다.

보조금 및 가격지지와 더불어 국가소비는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개별항목이었다. 여기에는 인건비 지출(국가 공무원의 임금, 급여)과 특히 국방을 위한 현물지출에 필요한 지급이 포함되었다. 1988년 국가소비 규모는 64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네 번째로 큰 지출항목이 사회보장급여 형태(연금, 질병수당, 양육수당, 직업훈련지원금, 실업지원금)로 가계에 지급되는 이전지출이었다. 1988년에 이 지출은 305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동독의 재정지출 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순수한’ 투자지출의 비중이 눈에 띄게 적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지원과 상관이 있었다. 1988년 총투자는 160억 동독 마르크로서 총지출의 5.9%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망의 유지보수와 주택 현대화를 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4절 은행제도

1. 역할

동독에서 1990년 봄까지 유효했던 1단계 은행체제는 그 기본골격이 1970년대 초에 형성되었다. 이 시기가 지난 다음 은행체제는 다양한 개혁국면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집중화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동독의 은행

기구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은행의 핵심임무는 (중앙계획에 따른 자원배분을 통한 국민소득의) 분배기능, 통제기능, 촉진기능(즉, 경제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동독기업들에게는 국가신용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신용이 은행제도를 통해서 배정되었다. 대출과 저축에 대한 이자율은 경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했다. 화폐시장이나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투자재원이 은행 차입 이외에 기업의 자체 자원(감가상각 및 이윤)과 국가 재정에서의 보조금으로 조달되었다는 점에서는 선진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였지만 대부분 중앙계획에 의해 결정되었고 각 재원의 비중이 달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기업은 자신을 담당하는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아울러 어떤 계좌에 어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사전에 지시되었다. 현금보유는 좁은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었다. 주민들도 현금잔고는 가능한 한 적게 보유해야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축금고(Sparkasse)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독의 1단계 은행체제에서 중앙은행(Staatsbank)에게는 계획달성이라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자본조종을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통화정책은 통화공급의 변동과 국민경제 재화생산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목표를 추구했다. 이 점에서는 서방 중앙은행과 유사한 목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용 할당, 조건 설정, 투입 통제를 수단으로 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중앙은행은 은행과 저축금고에서의 계좌잔고와 계좌이동, 그리고 현금유통계획을 이용하여 화폐유통을 조사하고 통제했다.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신용경제도 중앙계획에 의해 조종되는 조건 하에서는 비공식시장에서의 가격인플레이션이나 '현금인플레이션'을 방지할 때 발생하는 조정문제나 위험은 기업의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소득의 지출이나 노동력의 투입에서 가계가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공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다.



2. 은행제도의 조직과 구조

동독의 은행제도는 중앙은행, 국영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저축금고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중앙은행

동독의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이자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각료회의의 구성원이었고 다른 상업은행들에 대하여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발권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계획하고 규제했다. 중앙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들의 계좌를 보유하고 저축은 물론 리파이낸싱 신용 공급에 관한 조건을 결정했으며 금융기관들의 지불거래, 정산거래, 신용거래에서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중앙은행 지점은 지방행정의 금융부서와 협력하여 국가재정의 ‘현금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국가재정의 계좌는 중앙은행이 관리했다.

상업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은 공업, 건설업, 국내상업, 교통, 우정, 통신 등의 분야는 물론 주민에 대한 외환 판매도 담당했다. 중앙은행은 180개 지역지점을 운영했고 콤비나트에 41개 공업지점, 그리고 100개가 넘는 지국 및 환전소를 운영했다.

2) 저축금고

시와 군의 평의회 시설로서 196개의 기관이 2,500개 이상의 지국(점업으로 운영되는 중개소 제외)을 운영하면서 재무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들은 가계, 임금수취자, 자유직업자, 소매상인, 개인 수공업자, 자영업자들과의 은행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저축예금, 보통예금, 급여계좌와 함께 내구소비재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소규모 신용대출이 있었다. 동독 저축예금 중에서 저축금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말 약 80%를 차지했다. 그 밖에 우체국저축예금소, 우편환국, 제국철도저축금고, 제국철도금

고가 은행서비스를 제공했다.

3) 여타 금융기관

그 밖에 중앙은행 산하에는 특유한 고객군과 업무군을 상대로 하는 다음과 같은 상업은행들이 있었다.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ABA)는 14개의 지점을 두고 대외경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불거래, 정산거래를 결제했으며 대외무역기업의 재원을 조달했다.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eutsche Handelsbank AG; DHB)는 대외경제거래(특히 통과무역과 3각무역)를 담당하는 특수기관이었다. 농업식량산업은행(Bank für Landwirtschaft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BLN)은 산하 농민무역회사(Bäuerlichen Handelsgesellschaften; BHG)와 농촌주민의 저축거래와 지불거래를 결제했다. 96개의 수공업영업협동조합금고(Genossenschaftskassen für Handwerk und Gewerbe; GK)는 주로 협동조합이나 개인의 수공업기업과 상업기업을 위해 저축업무와 신용업무를 담당했다.

제5절 동독 마르크

동독 마르크는 1990년 7월 1일 서독 마르크가 도입될 때까지 순수한 국내통화였다. 태환성이 없었고 다른 통화와의 공식적인 교환은 비상업부문(주로 해외관광)에서만 가능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몇몇 예외(루블화)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동서독 간 여행에서는 1989년 말까지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었다. 서방 방문객들은 이 비율로 최소금액을 환전할 의무가 있었다. 서독으로 여행하는 동독주민은 이 환율로 1인당 15 서독 마르크를 환전할 수 있었다. 서독주민이 동독주민에게 이체하는 현금선물도 이 환율로 결제되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관광객 거래에서 최소환전제는 폐지되었고 1 서독 마르크 = 3 동독 마르크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동서독 간 여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외환기금 덕분에 14세가 넘는 동독인은 1인당 1년에 한 차례 200 서독 마르크를(최초 100 서독 마르크는 1:1, 두 번째 100 서독 마르크에 대해서는 1:5 환율로) 환전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동독에 거주하는 개인과 기업은 1990년 초부터 동독중앙은행에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의 대외무역에서는 공식적인 교환비율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서방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환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동독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1989년 가을 서방에서 1 서독 마르크를 벌기 위해서는 4.40 동독 마르크만큼의 재화를 수출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 추정치가 균형환율로서 가지는 설명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이었다.

- 동독에서 가격비율은 실제적인 희소성비율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정보가 없었다.
- 수출입이 정책적으로 조종되었다.
- 서방과의 서비스교역(관광, 통근고용)은 매우 적었다.
- 민간자본거래가 없었다.
- 동독의 대외채무와 외환보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서방과 동독 마르크 지폐로 이루어지는 무역에서 산정된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우연적인 운동의 결과로서 형성된 가격이었다. 그러나 동독 마르크의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불법거래에 지나지 않았다.

1989년 11월 동서독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평가는 극심한 변동을 보였다. 동독 마르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

독주민들이 (비자신청 의무와 최소환전제가 폐지된 다음) 동독여행을 위해 환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방에서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급증했다. 1990년 전반기가 지나면서 서독과의 조속한 통화동맹과 신속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전망이 밝아질수록 서방에서 동독 마르크 지폐에 대한 평가는 상승했다.

제6절 대외경제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의 독점은 동독경제를 국제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차단했다. 따라서 동독제품은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 결과 동독이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수준도 낮았고 서방과의 무역도 활발하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의 대외무역전략은 원칙적으로 서방과의 교역을 최소화하는 역내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상호경제원조위원회(COMECON) 회원국들과의 무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동독 대외무역의 2/3가 이들 나라와의 것이었다.

동독에게 중요한 무역상대국은 소련으로서 이와는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40%에 이르렀다. 반대로 동독도 소련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었다. 다만 여기에서는 동독과의 무역이 대략 10%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두 나라의 무역은-두 나라가 COMECON 회원국들과 행한 무역과 마찬가지로-두 나라 정부가 채택하고 결국에는 콤비나트와 기업의 계약으로 채워지는 연례의정서에 기초해서 결제되었다. 1989년 11월에 1990년도 연례의정서가 서명되었다. 그에 따르면 동독의 수출은 68억 대체루블(TRbl)³, 수입은 64억 대체루블에 이를 예정이었다. 동독의 주요 수출상품은 기계, 장비, 운송수단, 공업용 소비재로 구성되었던 반면에 소련은 동독의 에너지 및 원료 수

.....

³ 대체루블은 COMECON무역에서 사용된 정산단위였다. 공식 교환비율은 동독 마르크가 아니라 외환동독 마르크에 대해서만 1:4.67로 존재했다.



입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켰다. 가령 1990년에는 석유 1,700만 톤, 천연가스 80억³, 석탄 450만 톤의 공급이 예정되었다. 동독의 대소 수출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던 노동력은 거의 50만 명, 동독 산업인력의 약 15%에 이르렀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나라들과의 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통계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이들과의 상품교역에서 정산을 위해 적용된 대체루블 환율은 매우 비현실적이었으며 가격은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으로부터도 괴리되었을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에 따라서 상이한, 왜곡된 가격이었다. 따라서 공식적인 무역데이터는 무역집중도를 계산하는 데 조건부로 사용될 수 있었을 뿐이다. 동독 국내가격과 근사치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새로 추정한 무역비중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령 소련과의 무역비중은 거의 40%에서 약 25%로 급감한 반면에 서방국가들과의 무역비중은-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면-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동독의 대서방 무역의 절반 이상이 내독무역이었다. 1989년 총액이 약 150억 서독 마르크였다. 이는 서독무역의 1%가 채 안되는 규모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상대국은-서방의 통계에 따르면-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였다. 서방 선진국들과의 무역총액은-내독무역을 제외하면-1989년에 110억 서독 마르크 수준이었다.

동독의 대외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수지, 채무, 외환보유에 관한 수치가 공표되었지만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수치도 없었고 그것을 산정하는 방법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신뢰할 수 있었다. 서방의 추정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무는-내독 지불거래 안팎의 서독 마르크 신용을 포함할 때-1989년 말 약 200억 달러에 달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권은 10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순채무가 1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다.

동독의 경제위기

1989년 호네커가 퇴진하면서 취임한 에곤 크렌츠 서기장은 동독경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때 조사에 참여한 인물은 당시 동독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르하르트 쉬러(Gerhard Schürer)는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호네커에게 경제정책 노선의 전환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인물이다. 게르하르트 바일(Gerhard Beil)은 1986년부터 대외무역장관이였다. 알렉산더 샬크-골로드콥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는 공식적으로는 대외무역부차관이었으나 동시에 동독비밀경찰 대령으로 위장해서 활동하던 정보요원이기도 했다. 그는 동독비밀경찰의 서독 내 비밀경제제국으로 불리던 '상업조정분과'를 이끌었다. 에른스트 회프너(Ernst Höfner)는 1981년부터 재무장관이였다. 마지막으로 아르노 돈다(Arno Donda)는 1963년부터 국가중앙통계관리소를 지휘했다.

이들이 10월 30일 제출한 보고서(Schürer/Beil/Schalck/Höfner 1989)에서 나타난 동독경제의 실상은 문자 그대로 재앙이였다. 동독은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적률이 1970년 29%에서 1989년 21%로 하락하면서 생산부문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산적 투자를 위한 축적률이 1970년 16.1%에서 1988년 9.9%로 하락했다.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생산부문에서의 축적률은 1970년대 이후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0년부터 1988년까지 생산부문에서의 투자는 122% 상승한 반면에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생산부문에서의 투자는 200% 상승했다. 자원이 건설에 집중되면서 보건과 같은 민생부문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마이크로전자, 공작기계제작, 공업용기계제작은 물론 가구공업이나 유리도자기공업과 같은 경공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최신 설비들이 도입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설비마모율이 공업에서는 1975년 47.1%에서 1988년 53.8%로, 건설부문에서는 49%에서 67%로, 교통부문에서는 48.4%에서 52.1%로, 농업산림식량경제부문에서는 50.2%에서 61.3%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유지보수작업이 과도하게 필요해졌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중업원의 비중이 공업에서 1980년대 이후 40%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동시에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일련의 과학기술 성과가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생산적 축적의 감소는 특히 1986년부터 생산 및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갈수록 부문 간 불비례가 심각해지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국민소득 증가속도는 3.6%이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므로 1985년까지 달성했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생산적 축적의 장기적인 감소는 1990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8차 당대회 이후 소비는 전반적으로 자기실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이 주로 ‘비사회주의 경제부문(Nicht Sozialistisches Wirtschaftsgebiet)’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문의 부채가 1970년 20억 청산마

르크(VM)⁴에서 1989년 490억 청산마르크로 증가했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화폐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주민에게 공급되는 상품기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 이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상당한 구매력 과잉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주요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국민소득성장률은 3.6%, 상품기금증가율은 4.0%, 주민의 순화폐소득증가율은 4.3%, 주민의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은 4.5%였다. 이는 실적증가율은 계획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데 반해 소비, 주택건설,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다는 의미이다. 1986-1990년의 5개년계획에 의거한 국민소득성장률 목표치는 4.8%였기 때문에 실제 실적치와는 1.2%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5년 동안의 이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60억 동독 마르크가 된다. 이러한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축적의 감소, 국내부채의 증가, 해외차입의 증가가 감수되었다.

구매력과 상품기금 사이의 비율의 변천은 초과구매력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순화폐소득은 연간 4.3% 증가하여 상품기금 증가율 4%보다 빨랐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이는 138.9% 대 131.4%의 비율로 요약된다. 초과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그 규모는 60억 마르크에 달했다. 이는 주민 전체의 연간 순화폐소득 증가분과 비슷한 규모였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평균임금 상승의 비율에서도 목표와 실적의 괴리는 나타났다.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그 비율은 1.54:1이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1.2: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보험저축을 포함해서 저축예금이 1985년 1,360억 동독 마르크에서 1989년말 1,75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6.5% 증가를 의미한다.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1989년 50억 동독 마르크로 예상되었다. 이는 같은

.....

⁴ 청산마르크(Verrechnungsmark)는 서독 마르크와의 결산에 적용되는 계산단위였다. 1 VM은 1 서독 마르크(DM)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DM이 VM으로 불리기도 했다.



해 상품기금 증가보다 많은 금액이다. 저축예금의 증가는 한편으로 사회의 발전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장래 생활수준의 향상에 관한 소망을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구매욕구, 특히 고급 내구소비재(승용차, 음향기기, TV 등)에 대한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채무는 세입에 비한 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1970년 약 120억 동독 마르크에서 1988년 1,23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했다. 1989년과 1990년에도 세입이 200억 동독 마르크 가량 부족할 것이므로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해 1990년에는 1,40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를 것이다.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국가채무 증가, 재생산과정에서의 부진한 효율성 향상, 국제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비용에 의거한 공산품 가격 결정 등은 동독 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요인들이다.

3.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1986-1990년 5개년계획은 크게 미달했다. 이미 1971-1980년 사이에 210억 VM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었다. 그로 인해 발생한 해외차입과 이자가 오늘날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외채무의 주요원인이다.

1981년부터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경상수지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1981-1985년 사이에 특히 난방연료를 경유에서 갈탄 및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석유제품을 유리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무역흑자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 흑자 덕분에 1980-1986년 사이에 대서방 순채무는 280억 VM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86년부터는 특히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했다. 1986-1988년 사이에 대외채무로 인한 비용과 이자만 해도 대략 130억 VM에 달했던 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에 무역흑자는 약 10억 VM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동독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1986-1990년 사이의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수출목표는 생산성 향상의 부

족으로 140억 VM 미달했던 반면에 수입목표는 약 150억 VM 초과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금속가공업과 마이크로전자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입한 69억 VM 상당의 기계와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목표의 미달로 인해 1986-1990년 사이에 당초 계획되었던 무역흑자 231억 VM 대신에 무역적자 60억 VM이 발생했고, 대서방 순채무는 1989년 말 490억 VM으로, 1985년 대비 190%로 급증했다. 이때 서방 순채무 규모는 동독의 1989년 수출의 약 4배에 해당했다.

1989년에 계획된 외환수입은 특히 채무원금 상환, 이자지불, 수입에 필요한 외환지출의 약 35%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65%는 은행차입과 여타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이는 곧 기존 채무의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이 새로운 채무에 의해서만 상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자지불을 위해서만도 재정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국제기준은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대비 수출의 비율로 측정되는 채무상환비율이 2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야 수입과 기타 지출을 위해 수출의 75%가 사용될 수 있다. 동독은 비사회주의경제권 수출과 관련하여 1989년에 채무상환비율이 150%에 이르렀다.

1990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안 자료에 기초할 때 경상수지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대서방 순채무는 비사회주의경제권 무역흑자가 3-5억 VM일 경우 1990년 말에 약 570억 VM으로 증가할 것이다. 1990년에 비용과 이자를 합쳐 80억 VM을 초과할 것이다.

대서방 순채무가 증가하지 않으려면 1990년에 국내생산에서 300 동독 마르크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는 3년에 걸친 국민소득 증가(계획치)에 해당하며 소비가 25-30%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지불능력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무역흑자가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초과수출(10억 VM)	2.0	4.6	6.7	9.2	10.2	11.3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동독의 대서방 순채무는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서방 순채무(10억 VM)	55.5	62.0	63.7	62.0	60.0	57.0

그러나 이러한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전제가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충족될 수 없다. 당면한 지불불능의 결과는 채무유예이다. 이 경우 국제통화기금이 동독의 정책결정에 개입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국제통화기금이 비용 동향, 통화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개입의 중단, 기업의 민영화, 보조금 축소 내지 중단, 국가의 수입정책 결정 중단을 수반한다.

대외비로 분류되었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무는 절망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급증하던 대외채무는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1989년 말 490억 외환마르크⁵에 달했다. 그 밖에 국가재정은 국내은행에 1,23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독 연방은행이 주장하듯이 동독경제가 완전한 초과채무 상태에 있는지는 의문일지라도 동독이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생산 증가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비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⁵ 외환마르크(Valutamark)는 대외무역에서 적용되는 계산단위였다. 그 산정방식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지만 1989년에는 1 외환마르크가 4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Brenke 2015).

없었고 이로 인해 지도부는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호네커 이 후 취임한 크렌츠 정부나 모드로우 정부는 동독 자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 함으로써 자립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개혁의 중심에는 엄격한 계획경제와의 결별,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 확대, 실적에 부응하는 임금체 계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이 있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활동도 대폭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소유관계의 핵심은 국영기업의 유지였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49%까지만 허용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독의 지원 전망이 어두웠을뿐만 아니라 동독인들이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 문이다.

화폐통합 과정

통일독일에서 화폐통합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에도 2015년에도, 5년을 주기로 화폐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평가는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열광과 충격 등으로 매번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화폐교환비율에 대해서는 1:1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에 비하면 화폐통합의 정치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Brenke 2015). 불안정한 대외정치적 상황, 특히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화폐통합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화폐통합 방안에 대해 콜 수상에게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티로 자라친(Thilo Sarrazin)에 따르면 화폐통합은 ‘독일통일로 가는 불가피한 초석’으로서 당시에는 동독을 어떤 방식으로든 돌이킬 수 없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비록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동서독통일에 동의했지만 소련의 국내 정치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서 동독인들의 이주행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동독인들 손에 서독 마르크를 쥐어주는 길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티로 자라친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면 동서독 사이에 관세장벽을 쌓아야 했을 것이고, 이주행렬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동독의 평균소득은 1,100-1,400 동독 마르크였고 당시 시장환율은 1:7이었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동독가족이 서독으로 이주해서 사회부조금을 신청하면 대략 1,000 서독 마르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독 마르크로 환산하면 7,000 마르크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화폐교환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서독 마르크 도입으로 동독인들의 소득이 서독 수준과 접근할 것이라는 환상을 정치인들이 심어준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제1절 동독인의 이주행렬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미 사회주의 경제의 종식은 예고되었다. 서독으로의 대량이주가 곧바로 시작되었다. 동독인들은 자국의 자립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을뿐만 아니라 서독 수준의 생활수준을 조속히 달성하려는 열망이 강했다. 그래서 시위의 성격이 갈수록 사회주의 개혁에서 통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 대량이주행렬로 이어졌다. 1989년 11월에 73,000명, 12월에 59,000명,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50,000명에 달했다. 동독이 출혈상태에 빠졌다. 동독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에 접근시키려는 구상이나 계획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이주행렬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 다만 이들 수치에는 당시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서베를린 포함) 일자리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주행렬과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은 서독에게는 당시 부족하던 숙련 노동력의 보충을 의미했지만 동독에게는 경제 재건에 필수적인 인력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동독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소위 ‘임금보전금고’를 설치하여 서독에서 일하는 동독인의 임금을 동독 마르크로 환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서독일자리가 갖는 매력을 떨어뜨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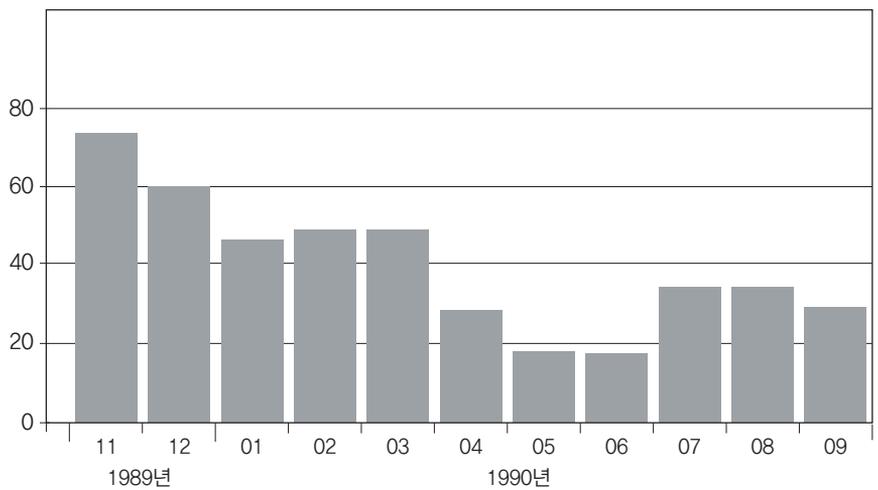


자 했으나 실현될 수 없었다. 그 밖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반적인 제한도 거론되었으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독인의 서독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행렬은 화폐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이 체결되면서 반감되었다(〈그림 1-1〉 참조). 그러다가 화폐통합이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주행렬은 배증되었다. 이 이주행렬은 화폐통합 이전과는 달리 동독기업의 줄도산에 따른 실업과 불완전고용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림 1-1) 동독주민의 이주행렬(1989-1990년)

(단위 : 천 명)



출처: 동독통계청; 신연방주 공동통계청

제2절 화폐통합 논란

화폐통합에 대해서는 동서독의 협상과정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통일이 완성된 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폐통합에 관한 제안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콜 수상의 제안이 발표되었을 때 서독 연방은행 쾰른 총재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도 동독의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화폐통합으로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서독에서 진행된 화폐통합 계획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 통일조약 서명 당사자인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도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일조약을 ‘정치적 급살’이라고 비판했다. 당시에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자문교수단인 전문가위원회(Sachverständigenrat; 소위 ‘5현자’)가 1990년 2월 발표한 공개서한이었다. 여기에서 ‘5현자’는 보조금 지급을 수반하는 계획경제적 가격시스템의 해체를 먼저 단행할 것, 재화부족으로 누적되고 있는 과잉구매력을 해소할 것, 시장경제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시스템을 갖출 것, 국영기업 민영화를 포함하는 여타 개혁들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Sachverständigenrat 1990). 동독 마르크에 대해서는 일단 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점진적이지 가능한 한 조속히 태환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화폐통합을 시행하면 서독에 비해 낮은 소득이 두드러질 것이므로 과도한 임금인상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 까닭은 화폐통합과 함께 동독인들이 서독의 생활수준에 조속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도 마찬가지로 동독의 독자성과 독자적 화폐에 찬성했다. 동독 마르크 환율은 서독 마르크에 연계시키되 동독 마르크 가치는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Flassbeck/Hoffmann/Pohl 1990). 그렇게 해야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시급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독 마르크 태환성은 개혁과정의 마지막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가연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계에도 조속한 화폐통합을 찬성하는 학자도 일부 있었다. 가령 빌게로트는 화폐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이 통일을 위한 충분한 질서정책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Willgeroth 1990).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발권



에 의한 국가재정의 확대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서독 마르크에 기초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신호가 보내질 것이고 투자자들은 환위험이나 태환성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는 다시 이자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화폐가 태환인지 불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경우든 가격과 소득이 생산성에 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통합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임금인상이 발생할 때 커다란 평가절하가 발생할 것이다. 그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은 국내물가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실질임금이 조정될 것이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과도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통해 구매력의 유출을 초래할 것이다. 수요 감소와 실업 증가가 명목임금의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화폐통합은 통일 4반세기가 지나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화폐통합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분명한 것은 통합 당시에 '이상적인 방안'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일찌감치 '독일화폐경제사회동맹' 1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보고서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평가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실린 9개 논문의 결론은 비록 통일이 정치적으로는 성공이었을지라도 10년이 지나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통일의 역사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에 대해서는 종종 높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모범사례'였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처음부터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통일과정을 비판적으로 동반했지만 당시 콜 수상이 강제했던 '정치적 상징'이 경제적 이성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오류'였다는 주장이 이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화폐통합이 달리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경제상황의 적응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유럽화폐동맹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마르크의 과도한 평가절상'이 세계시장에서 동독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양면적이다. 즉 동독의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할 때 교환비

율은 1:4가 적절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화폐통합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이 지연되자 학자들은 통일에 따르는 적응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서독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구동독에게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절 화폐통합의 정치적 선택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당시 동독 지도부 내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인식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발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비록 조심스러웠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가령 1990년 1월에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되는 공동기업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영업의 자유를 완전하게 인정하려는 방침이 예고되었다. 3월로 예정된 인민의회 선거에 앞서서 ‘중앙은행개혁법’이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서구식의 2단계 은행시스템으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동독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거나 이주민 수를 줄이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1990년의 이주물결은 동독의 청년과 숙련인력의 유출을 의미했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된다면 1년 후 동독경제는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독인들은 화폐통합을 열렬히 지지했다. 동독인들이 서독 마르크를 갈망한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 번영과 높은 생활수준을 연상시켰을뿐만 아니라 동독 마르크를 소지했을 때 경험했던 굴욕감도 한 몫 했다. 동독 마르크는 동유럽 다른 나라들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동서독 국경상점에서 생필품임에도 서독 마르크가 없어 사지 못했기 때문에 느꼈던 굴욕감을 그들은 잊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는 “서독 마르크가 오면 우리는 머물 것이다.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에게 갈 것이다”는 구호가



보였다.

정치인들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다. 당시 연방재무부 화폐신용국장이던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가 티로 자라친(Thilo Sarrazin)에게 화폐통합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자라친은 1월 29일 ‘서독 마르크 통화권으로의 동독의 편입에 관한 착상’에 관한 14쪽짜리 메모를 작성했다. 이를 쾰러와 자라친은 콜 수상에게 보고했고 콜은 2월 6일 화폐통합에 관해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했다. “우리는 화폐통합의 조속한 실현을 이주자 물결을 정지시키기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경제5현자의 호소도 소용없었다. 이미 콜 수상은 결심한 상태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나는 이 길이 지금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콜 수상은 동독 모드로우 총리에게 ‘혁명적인 사건에 대한 혁명적인 답변’으로서 화폐통합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콜의 제안은 동독은 물론 서독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서독은 예산의 약탈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동독은 경제적 붕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연방은행 펄 총재마저 기겁을 했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가진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화폐통합이 실현되자 펄 총재는 사임했다.

화폐통합의 예고는 1990년 3월 중순 동독 선거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서독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동독 기민당과 그 연립정당이 압승했던 것이다. 서독 마르크가 선택되었고 ‘독자적인 동독’ 제안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주민 행렬은 인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연합’이 승리해서 동독이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경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비로소 잦아들었다. 1990년 4월 18,100명이었던 이주민 수는 5월에 11,9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선거 결과로 나타난 동독주민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독정

부는 동독 드 메지에르 정부와 화폐통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현시키기
로 합의했다. 이때 동독에 서독 마르크를 신속하게 도입할 때 발생하는 정치
적 장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점도 같이 부각되었던 것은 사실
이다(Deutsche Bank 1990).

- 서독 마르크를 소지한 동독인들은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동독경제가
자유화되면 경쟁체제가 갖추어짐과 동시에 동독인의 노동의욕이 되살
아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질 것이다.
- 서독 마르크가 도입되면 동독기업들은 즉각 완벽한 태환통화를 소비
할 수 있게 된다. 대외무역이 개방되면 이는 동독기업들에게 서독은 물론
다른 서구의 나라들로부터도 수많은 새로운 조달경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동독기업들은 계획경제 당시 생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국경이 개방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부 동독기업들은 필요한 중간재를 보다 저렴
하거나 품질이 좋은 상태로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단기
적으로는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화폐통합은 서독 자본이 동독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화폐
통합이 없다면 잠재적 자본공급자, 특히 은행들에게는 여전히 ‘동독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을 조달할 때 추가 금리를 부담
해야 하고 상환할 때 태환통화를 조달해야 할 것이다. 동독에 투자하
려는 서독기업도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윤을 송금할 때 환율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 무엇보다도 화폐통합은 동독에서 시장경제 개혁을 즉각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화폐통합과 함께 경제통합이 이
루어지면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 경제질서의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
서로 적대적인 두 개의 경제질서를 하나의 통화로 연결한다면 그 결과
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동독중앙은행의 부총재였던 에드가 모스트(Edgar Most)는 1990년 4월에 본에서 개최된 독일은행총회에서 콜 총리 옆좌석에 앉아 동독중앙은행의 비밀자료까지 동원해서 교환비율에 대해 재고할 것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회고했다(“20 Jahre deutsch-deutsche Währungsunion”, Spiegel 2010년 7월 1일자). 그는 “당신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음에 서명했다. 당신은 동독의 가치를 모른다. 아직 교정할 시간이 있다”고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콜 총리가 한 말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모스트씨, 나는 정치인이고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경제학자이고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동독중앙은행은 경과규정을 가지고 화폐통합을 훨씬 늦게 현실화하려는 자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콜 총리 혼자서 결정했고 언론에 발표했다.

화폐통합에 관한 저작권은 콜 수상에게 있지 않다. 1990년 1월 중순에 이주행렬을 멈추게 하기 위한 화폐통합에 관한 최초의 제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독일 사민당 소속 연방의원이었던 잉그리드 마테우스-마이어가 1990년 1월 19일자 ‘디 차이트’에 기고한 글 ‘머물기 위한 신호’에서 경제화폐통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 콜 수상마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소문이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도 동독경제의 점진적인 개혁을 말했고 과도기 동안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유효기간이 짧았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민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서독은 이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과 동독 재무장관 발터 롬베르크는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유로화 도입에는 수년 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데 비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콜 수상이 2월에 선언하고 7월 1일 실행될 때까지 4개월 남짓 걸렸다. 화폐통합이 없었더라면 통일도 그리 빨리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통합 후 불과 3개월 만에 독일인들은 통일을 자축했다.

당초 서독정부는 ‘화폐경제동맹’을 제안했으나 동독측 협상파트너인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차관의 요구에 의해 ‘사회동맹’이 확대되었다.

제4절 화폐교환비율의 결정

독일연방은행 엔스 바이데만(Jens Weidmann) 총재에 따르면 동서독 화폐통합에서는 ‘마의 사각지대’와 같은 목표가 추구되었다. 첫째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서독상품에 대한 동독인들의 대기수요와 화폐통합 직후 한꺼번에 증가할 통화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연방은행은 이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이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화폐통합과 동시에 동독시장이 서독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개방되었던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동독시장에서 재화공급은 급증했지만 동독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했다. 둘째로, 동독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해되어서는 안된다. 1:1이든 2:1이든 동독기업들에게는 대대적인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통합이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화폐통합 후 동독기업의 줄도산에는 평가절상이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셋째,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주민을 위한 연금과 동독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대폭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콜 수상이 호언했던 ‘우편요금’만큼의 통일비용은 허황된 꿈이었다. 2015년까지 통일비용이 2조 유로까지 추정되기도 했다. 넷째, 동독주민의 구매력(저축)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시적이었고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실업과 불안전고용이 급증하면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화폐통합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와 협상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비율로 동독 마르크



가 서독 마르크와 교환되어야 하는가였다.

동독주민들은 당연히 1:1을 요구했다. 1:2를 권고하는 연방은행의 보고서가 알려지자 동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1:1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동베를린 시위대는 외쳤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동독기업들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고 경쟁력을 잃고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1:6의 교환비율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의 부총재였던 모스트도 1:1 교환비율은 ‘경제적 자살’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동독주민의 저축자산 1,660억 동독 마르크가 어떻게 교환되느냐가 아니라 이 교환비율로 인해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산정되어 하룻밤 사이에 기업들이 대부분 지불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모스트는 1:7의 교환비율이 적절했을 것으로 주장했다. 장벽 붕괴 후 암시장에서는 1:10까지 갔었다. 그랬더라면 민영화도 전혀 다르게 진전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른 교환비율을 적용했을지라도 동독기업과 제품은 구제불능으로 낙후되어 있었다는 비난에 대해서 모스트는 그것이 ‘전형적인 승자의 설명’이라고 반박한다. 신탁청은 먼저 대부분의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 자본시장을 통해 민영화했어야 했다고 한다. 실제로 초대 신탁청장이었던 데트레프 로베더(Detlev Rowedder)는 동독기업의 70-80%는 구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동독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부채 때문에 결국 몰락했는데 여기에서 교환비율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권장환율은 1:5였다. 동독 마르크 환율은 서독 마르크에 연계시키되 동독 마르크 가치는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시급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Flassbeck/Hoffmann/Pohl 1990).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성적이었을지라도 정치적으로 관철될 수 없었다.

동독정부도 1:1에서 벗어나는 비율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환비율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했다. 첫째는 특히 서독 연방은행 쪽에서 화폐가치 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동독주민의 대기 수요로 인해 구매열기가 촉발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율이 가령 1:1이 되면 사실상의 평가절상이 초래되어 동독기업이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로써 동독경제의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신뢰할만한 답변은 찾을 수 없었다. 서독 연방정부는 서독 수준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Ludewig 2015) 동독에서는 크렌츠 정부 하에서 작성된 동독경제 실상에 관한 보고서에서 서독 수준의 40%로 추정되기도 했다.

화폐교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히 국가조약 제1부속서에 정해져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990년 5월에 유효한 단체협상에 의거한 임금과 급여는 1:1의 비율로 교환된다. 장학금, 생활비, 방세 및 임대료와 여타 반복적인 지불도 그러하다. 생명보험과 민간연금보험에 대한 납입금과 급여는 예외로서 2:1로 교환된다.
- 연금도 원칙적으로 1:1의 비율로 교환된다. 그렇지만 사회동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조약 20조에 따라 연금은 인상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독의 연금 수준이 낮고(1989년에 의무보험에서는 최소연금이 330 동독 마르크, 최고연금이 510 동독 마르크, 평균연금이 450 동독 마르크였고, 자발적인 추가보험에서 평균연금은 100 동독 마르크) 서독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동독 마르크로 표시된 다른 모든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2:1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로 교환된다. 이는 대체로 동독에 주거지를 둔 자연인의 예금에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1976년 7월 1일 이후 탄생한 자연인은 2,000 동독 마르크까지, 1931년 7월 2일과 1976년 7월 1일 사이에 태



어난 자연인은 4,000 동독 마르크까지, 1931년 7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자연인은 6,000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와 교환할 수 있다. 동독 비거주자가 동독에 계좌를 보유하면서 교환을 신청하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했던 예금은 2:1의 비율로, 1989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예금은 3:1의 비율로 교환된다.

- 교환은 원칙적으로 동독 금융기관에 보유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독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는 1990년 7월 1일자로 소위 차액보전청구권(Ausgleichsforderungen)이 기재되었다. 이로써 동독은행들의 부채는 1:1로 교환되는데 반해 자산은 1:2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괴리가 메워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차액보전청구권은 동독기업의 채권을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현실적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특정 은행에 배정된 차액보전청구권의 규모는 동시에 자기자본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적어도 정산금액의 4%에 달할 수 있도록 측정되어야 했다. 차액보전청구권은 화폐교환과 신용교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산상 발생하는 200-250억 마르크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까닭은 동독의 금융기관들은 국가조약의 제1부속서에 의거하여 필요해진 자산재평가에서 상법상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산가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액보전청구권은 동독이 화폐교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보전기금(Ausgleichsfonds)’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이다. 이 기금에는 다시 순채무 규모만큼 동독에 대한 채권이 배당되었다. 사실상 차액보전청구권은 (서독) 금융기관에 대한 동독 국가의 채무였다. 차액보전청구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후 3개월 프랑크푸르트 은행간시장(FIBOR) 3개월 금리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는 매년 순가치의 2.5%씩 상환되어야 했다.

국가조약 10조 6항에 따라 동독 예금주에게는 2:1 비율로 교환된 저축 예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미래의 시점에 국영기업 자산에 대한 지분기득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에서 임금, 연금 등에 대해서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독의 당시 임금 수준이 서독의 1/3 정도였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정당하다고 했다(Ludewig 2015).

제5절 화폐통합의 실행

1990년 7월 1일 약 1,850억 동독 마르크가 약 1,230억 서독 마르크(630억 유로 상당)로 교환되었다. 성인은 한 사람당 4,000 마르크, 연금수령자는 6,000 마르크, 어린이는 2,000 마르크를 1:1로 교환할 수 있었다.

화폐통합이 발효되기 직전인 6월 30일에는 동독인 1,600만 명이 개설한 2,470만 개의 계좌에서 동독 마르크가 서독 마르크로 전환되었다.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동독인들에게 서독 마르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지점뿐만 아니라 시장실, 학교까지도 이용되었다. 동독인들은 갈망했던 자동차, 신발, 가구 등을 구매했고 해외여행을 즐겼다.

서독 연방은행은 1990년 6월 30일에 약 4억 4,000만 장의 지폐와 1억 200만 개의 동전을 동독으로 운반했다. 약 28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의 현금이 구동독중앙은행의 15개 지점으로 일단 수송되었고 이들 지점에는 구동독중앙은행 직원들이 근무했다. 그리고 이들 지점은 동독 전역의 은행지점들에서 오는 화폐운송차량의 목적지가 되었다. 도로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위해서는 비행기를 동원하기도 했다. 동독중앙은행 지점에 '임시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실, 창구, 금고 등을 갖추었다. 동독 동전은 훗날 알루미늄 괴로 용해되었고 지폐는 폐기되기 위해 할버슈타트(Halberstadt) 근교에 있는 지하갱도로 운반되었다.



1990년 7월 1일 0시를 기해 도이치은행 알렉산더광장 지점이 문을 열었다. 기다리던 동독인들은 참을성을 잃고 창구로 밀려들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13명이 부상당했고 기절한 사람도 있었다. 정상적인 은행영업시간보다 일찍 0시에 창구가 열리면서 최초의 서독 마르크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서 동독지역 내 모든 은행지점들이 문을 열었다. 은행직원이 헤치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6월 30일까지도 이미 ‘뱅크런’이 일어났다. 화폐통합 이전에 동독인들은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계좌에 맞추어 넣기 위해서 뱅크런을 했다. 은행 창구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려는 사람들로 1주일 동안 붐볐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이 발효되면서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막을 내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파산한 계획경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화폐운송작업은 화폐통합이라는 국가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은행직원들조차 경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화폐운송 경비는 허술했다. 은행지점의 업무차량이 동원되고 지점장이나 운전기사 혼자서 50만 내지 100만 마르크를 운송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통일독일의 행운이었다.

동독인들에게 서독 마르크는 복지의 약속이었고 현란한 상품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다. 그러나 열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치인들과 동독시민들이 신속한 화폐통합에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독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기대했던 경제활성화는 오지 않았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지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구동독의 1인당 총생산은 구서독의 70%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자도 구서독에 비해 훨씬 많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서에서 동으로 2조 유로 가량의 지원이 흘러들어갔음에도 그러하다.

제6절 연방은행의 관할권 확대

서독 연방은행은 1990년 7월 1일자로 동독에서의 통화주권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연방은행은 통일된 통화지역에서 항구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연방은행 및 신용제도에 관한 법’의 효력이 동독으로 확장되었다.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에 관한 결정적인 지표인 화폐공급에 관한 연방은행의 권한이 화폐통합으로 인해 결코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이 위태로워질 조짐이 보이면 연방은행은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

과도기일수록 통화정책상의 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동독의 생산잠재력의 장래 성장과 화폐의 유통속도에 관한 평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장래 통화량과 중요한 통화량 변동에 관한 해석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부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까닭은 원칙적으로 팽창적 방향으로뿐만 아니라 축소적인 방향으로도 예측불가능성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연방은행이 경기대응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동독에서의 화폐교환에 따르는 통화량효과가 연방은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통화량 M3(현금, 요구불예금, 4년 이하 정기예금, 법정해지시한이 있는 저축예금)가 화폐교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정도가 12%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화폐통합 이전에는 사실상 저축예금이 유일한 투자형태로 존재했던 동독주민들이 변화된 환경에서는 연방공채, 저당채권, 저축증권과 같이 통화량으로 계산되지 않고 금리가 높은 투자형태로 대대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통화량 M3는 실제로는 약 10%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확대된 서



독 마르크 경제공간에서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의 국민총생산은 대략 서독 국내총생산의 10-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화폐교환이 오히려 신중한 전망에 기초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Deutsche Bank 1990).

연방은행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독중앙은행 영업소가 있던 자리에 베를린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여타 동독지역에서는 15개의 지점을 설치했다. 임시 관리사무소는 연방은행 이사회 직속으로 두었다. 여기에는 다시 동독정부가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화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독정부와의 밀접한 협력이 합의되었고, 그래서 동독의 담당 장관이 중앙은행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는 의결권도 제안권도 없었기 때문에 공동결정이나 공동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화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연방은행의 자율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동독정부와의 재정적 관계는 서독에서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정부는 연방은행의 계좌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저축예금을 두어야 했고 단지 연방은행에서 최고 8억 서독 마르크의 신용을 인출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공채, 국고증권, 국고어음은 1차적으로 연방은행 자신에 의해서나 연방은행의 양해 하에서만 발행되어야 했다.

국가조약에서 동독의 재정적자의 한도를 규정한 것도 연방은행이 추구하는 안정목표를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정부의 차입은 서독 연방정부와의 협의 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동독에서도 서독에서와 동일한 통화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최저준비금 의무는 1990년 8월 1일부터 도입될 수 있었지만 동독에서는 할인정책, 공

개시장정책 등을 수행할 기반으로서 어음이나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은행화폐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독에 소재하는 금융기관들에게는 총 250억 서독 마르크 규모의 리파이낸싱 할당액이 각자의 잔고에 따라 배정되었다. 이 할당액은 서독 금융기관들의 재할인 할당액(약 600억 서독 마르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동독 금융기관들은 일단 해당 자산이 없어 유가증권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독 금융기관들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되면 할당액은 그만큼 감축되어야 했다.

동독 금융기관의 재할인업무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단독어음과 마찬가지로 3인 미만의 서명이 있는 어음만 허용되었다.

서독이나 서독에 주재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지점에게는 동독 내 업무를 위해 별도의 리파이낸싱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재할인 할당액의 차기 정례 정산에서 그들의 동독 내 활동이 잔고에 따라서 고려되었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후 수개월 동안은 연방은행이 동독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활동해야 했다.

제7절 동독 은행제도 개혁

동독 은행제도는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조종되었던 은행제도를 대신해서 수익성과 위험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영업하면서 경쟁하는 은행들이 들어섰다. 국가조약에서 동독이 서독 은행법을 수용하기로 합의되면서 1990년 중반부터는 동서독에 사실상 은행업을 위해 동일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때부터 동독의 금융기관들은 서독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은행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에서의 은행감독은 서베를린에 있는 연방신용기관감독청의 권한



이 되었다.

모드로우 과도정부에서 이미 1990년 4월 1일에 2단계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전에는 발권은행이자 시중은행으로 활동했던 중앙은행의 업무영역은 발권은행과 주립은행의 기능으로 제한되었다. 이 은행의 발권은행 업무는 다시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독일연방은행으로 이전되었다.

동독중앙은행(과 그의 지점망)의 시중은행 업무는 1990년 4월 1일자로 신설된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독일협동조합은행’이 ‘농업식량경제은행’의 법적인 후계자로서 탄생했다. ‘상공업협동조합금고’는 ‘국민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저축금고들은 이제부터 지자체의 후견 하에서 자립적인 기관들로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원칙적으로는 동독의 은행제도가 서독과 유사하게 갖추어졌다. 그렇지만 아직 광범한 민간은행부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은행들은 1990년 7월 1일부터 지점과 영업소를 동독에 설립하여 은행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서방은행, 특히 서독은행들이 1989년 11월 장벽 개방 이후 동독에 대리점이나 사무실을 개설했다. 당시에 이미 서독은행들은 동독 금융기관들과 합작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동독에 300개 이상의 사업장을 둘 계획을 세웠다. 한때 동독에 3,200개 이상의 은행 지점이 있어서 주민 5,000명당 1개의 지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많은 수는 아니었다. 서독에서는 주민 1,400명당 지점이 한군데 있다.

은행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직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서독의 은행, 저축금고, 협동조합은행은 화폐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협력파트너 동독은행의 직원들을 서독이나 현장에서 교육시켰다. 그 밖에 수많은 서독 전문인력이 일부는 과도기 동안만 동독으로 파견되었다.

민간기업에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던 무렵에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시스템과 보안체계가 부족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국영기업에게 중앙은행이 제공한 위험한 신용에 대해서는 동독정부가 신탁청의 보증을 예고했다.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에서는 저축과 소비자신용, 주택신용부문에 상당한 시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 독점이 무너지고 동독경제가 세계시장에 통합될수록 동독 은행업무에서 외환거래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동독은행들을 독일의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다. 가령 차액보전청구권을 넘어서 보증업무나 유가증권업무에도 은행의 리파이낸싱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화폐통합의 경제적 충격

처음 몇 주 동안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급격한 체제전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볼 수 있었다. 경제동맹은 서독식의 사유재산, 경쟁,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주었다. 즉각적인 화폐통합은 무엇보다도 동독인들에게 서독 마르크를 가져다주었고, 그럼으로써 갈망하던 서독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첫날에만 34억 마르크가 지급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엄청난 구매열기가 나타났다. 이는 화폐통합 이전에 동독인들이 서독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를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가사용품, 여행 등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대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바빴다. 서독기업들은 판매와 이윤에서 기록을 크게 갱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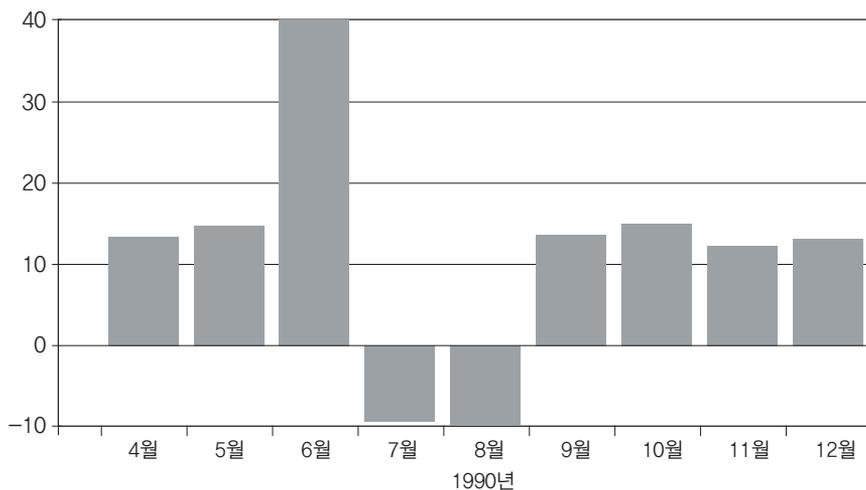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9월 들어 소비는 감소했고 저축률은 다시 증가했다(그림 1-2).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기 전 날인 6월 30일 동독 전 지역에서는 역설적인 ‘구매열기’가 타올랐다. 동독인들은 밀가루, 소금, 식용유, 화장지 등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면서 서독 마르크를 주고 구매하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을 사재기했다. 반면에 가게들은 더 이상 동독제품을 주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처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끼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동독기업의 줄도산을 초

래한 원인의 출발점이 되었다. 2기통 자동차 ‘트라비’에서부터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동독상품이 곧바로 판매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것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마르크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90억 동독 마르크 어치의 동독산 제품이 판매 불가능해졌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독상품이 팔리지 않은 것은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다. 화폐통합이라는 충격요법은 수많은 동독기업들에게는 사실상 급사를 의미했다. 화폐통합이 300-400% 평가절상과 같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동독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국내 매출은 물론 동구권 나라들로의 수출도 급감했다. 공급물품을 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납품업자 등에게는 서독 마르크로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했다.

동독은 순식간에 경제위기에 빠졌다.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실업자는 급증했다. 동독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 엘베강에서 오테르강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탈산업화되었다.

그림 1-2) 동독 근로자 가계저축률(두 자녀 가구)

(단위: 가계소득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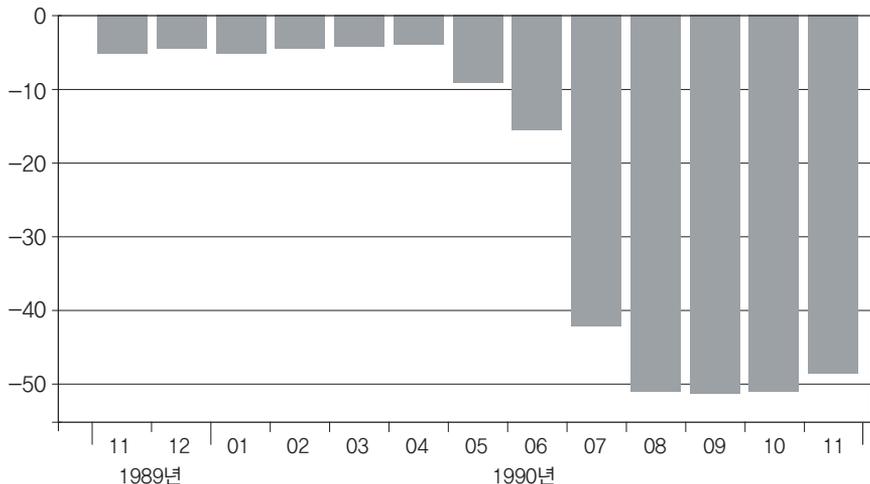
출처: Brenke(2015).



이는 화폐통합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 까닭은 국제경쟁에 노출된 동독경제 부분은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이었고 산업생산이 불과 몇 주 만에 거의 반감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3〉). 경제학자 울리히 부쉬(Ulrich Busch)는 화폐통합을 ‘동독경제에 투하된 중성자탄’에 비유했다. 노동조합에 친화적인 한스 뵉클러(Hans Böckler)재단 산하 거시경제연구소 구스타프 호른(Gustav Horn) 소장에 따르면 “화폐통합 후 6개월 동안 동독생산의 약 60%가 사라졌고, 그럼으로써 구동독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불완전고용이 급증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할 일이 없어서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이 배정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동독지역 취업자의 거의 1/3이 1990년 말까지 일자리를 잃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조짐도 나타났다. “서독사람들은 더 교활했다. 지금은 돈이 장벽이다.” 그 밖에 대대적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1990년 말부터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긴급하게 착수된 직능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조기정년퇴직자도 적지 않았다. 취업 중인 연금생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고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노동시장통계에 포착되지도 않았다. 취업가능인구 980만 명 중에서 1990년 말에 약 300만 명이 실업자이거나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정년퇴직했다. 다음 해에는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기대되었던 지속적인 소비 열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미래전망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림 1-3) 동독지역의 산업생산 변화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출처 : Brenke(2015)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대대적인 조업중단과 인력감축을 수반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화폐통합 이후 나타난 것과 같은 붕괴가 예상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붕괴의 원인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자면, 당시에는 동독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가 정치적, 경제적 변혁과정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동독제품에 대한 이들 나라의 수요가 급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 직후에 나타난 산업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이에 기인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독 연방정부는 동유럽 나라들과 무역하는 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원했다. 연방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후반기에 동유럽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거의 120억 청산루블에 이르는 흑자가 기록되었다. 따라서 동유럽 나라들과의 무역이 없었더라면 동독의 산업생산은 더 심하게 붕괴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독주민의 소비격감을 원인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 마르크를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은 선호를 바꾸어 동독제품



보다 서독제품을 먼저 구매했다. 소비감소로 인한 생산감소는 동독 전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교환비율이 당시 동독의 생산성 수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통합을 전후해서 동서독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추정치의 편차는 매우 크다. 생산성이 서독의 절반에서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Brenke 2015). 생산성 격차는 부문별로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서비스부문에서의 격차가 공업에서보다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을 하면서 생산성 격차를 고려한다면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주장했듯이 4.3:1의 비율이 적용된다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수출하는 동독기업은 4.3배의 평가절상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

잘못된 임금정책도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권은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생활수준의 균등화를 지향했고, 노동조합은 자국 내에 저임금지역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간과되고 있던 사실의 하나는 화폐통합 이전에 이미 상당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990년 2/4분기에 동독에서는 1/4분기보다 임금이 11% 높았으며 그 이전에도 임금은 인상되었다. 임금인상 원인으로는 소비재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 사이에 하락했다. 기업들이 재고를 방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물가상승을 가정해서 임금을 인상한 것은 부분적인 가격상승을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renke 2015).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화폐통합과 함께 비로소 왔다. 부분적으로는 소비수요의 급증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왜곡이 부분적으로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던 생필품 가격이 1990년 7월에 크게 올랐다. 집세는 특히 1991년에 대폭 올랐다. 그러나 화폐통합 이전의 임금인상은 급속한 임금인상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화폐통합 이

후의 시기에 대한 임금인상이 미리 합의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금속노조 연맹은 금속전자산업에서 7월 1일부로 일괄적인 1인당 250 마르크의 임금인상과 10월 1일부로 300 마르크 인상을 관철했다. 이로써 금속전자산업과 같은 중요한 부문에서는 10월 초까지 임금이 4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산업생산의 감소를 더욱 부채질했을 것이다. 1990년 가을부터 단체협상은 독일 전체를 관장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1991년 봄에는 금속전자산업에 대해서 1994년 4월까지 임금을 완전히 서독 수준에 접근시키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질 수 없게 되었다. 사용자협회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자협회를 탈퇴했고 민영화되거나 새로 창업된 많은 기업들이 임금정책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금속산업 사용자협회는 1993년 서독 임금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계획을 해지했다. 경제 전반에서 임금인상은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1995년까지 임금은 소비자물가보다 많이 올랐다. 1992년까지는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도 있었다. 대부분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서독정부도 화폐통합을 준비하면서 기업 줄도산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과 수일 만에 화폐통합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당시 연방 재무부 팀로 자라친(Thilo Sarrazin) 국장에 따르면 동독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동독경제의 성장과 민간자본으로 조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기대했다. 치명적인 오류였다.

화폐통합의 이러한 손실은 동독경제 건설에 소요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때문에 잊혀졌다. 동독지역에 매년 수백억 유로의 이전지출을 가져다주는 연대협약 II는 2019년까지 발효 중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동독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추진되었던 신속한 통일을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독일 전 국민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결과 구서독에서 구동독으로 오늘날까지 2조 유로의 방대한 이전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계획경제에서 단지 계산단위에 불과했던 기업의 채무가 화폐통합과 더불어 시장경제에서의 대출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상환되어야 했다. 이로 인한 구동독기업들의 부담은 결국 이들을 도산으로 몰아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6장

화폐통합의 부작용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다. 화폐통합은 대리인(Strohman), 외환밀수꾼, 투기세력에게 축제의 자리였다.

제1절 뱅크런

7월 1일 화폐통합이 발효되자 동독인들은 서로 서독 마르크를 손에 쥐기 위해서 은행이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은행 문이 밀쳐지고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렇지만 교환되는 동독 마르크의 금액이 제한되자 불공정한 행위가 자행되었다. 동독 마르크 예금을 가지지 않거나 적은 사람이 초과예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담합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동독 마르크를 건네주고 화폐통합과 함께 서독 마르크로 환전해서 건네주거나 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서독 암시장에서 동독 마르크를 새삼 매입해서 계좌에 입금하는 사례도 많았다. 1990년 7월 1일 발효되는 조약이 1990년 5월 14일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동독주민들은 조약이 발효되는 7월 1일까지 새로운 계



좌를 개설하여 자신들의 예금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말하자면 화폐통합 이전에 이미 동독인들은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계좌에 맞추어 넣기 위해서 뱅크런을 했다. 은행 창구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려는 사람들로 1주일 동안 붐볐다.

모든 동독주민은 계좌를 전환하면서 예금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했지만 점검은 거의 없었다. 서독을 방문해서 동독 마르크를 암시장에서 저렴하게 매입해서 동독으로 불법 밀반입한 사람들은 7월 1일이 지나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불법 밀반입에 공범인 서독인도 적지 않았다.

제2절 외환 스캔들

사회질서가 다른 사회질서로 대체될 때면 언제나 사기꾼, 노름꾼, 횡령꾼, 투기꾼들이 날뛴다. 특히 화폐통합의 이행과 국가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독일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동서독이 통합되면서 경제범죄자들에게는 활동공간이 넓어진 셈이다. 1990년 10월 구동독 및 코메콘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슈테른 푸블릭(Stern Publik)’이 벌인 사기행각은 단적인 사례이다(Christ 1990). 사기꾼들이 동독에서 코메콘 국가들로 불법 수출한 금액은 검찰이 1990년 10월 밝혀낸 금액만도 3억 7,500만 마르크에 달한다. 그중 2억 4,900만 마르크는 은행계좌와 현금으로 압수되었다. 총 사기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마르크로 추정되었다. 가담자 수도 그 당시 체포된 4명보다 많을 것으로 베를린 경찰은 추정하고 있었다.

연방 검경은 이러한 사기꾼들을 수사하면서 소련과 폴란드 당국의 협조에 의존했다. 동서독 사기꾼들의 많은 불법거래들이 이들 나라에서 정산되고 공범들도 이들 두 나라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체제전환으로 이들 범죄자들에게는 새로운 조건이 조성되었다. 동독을 포함한 코메콘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무역은 각국의 통화가 자유롭게 태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루블이라는 가상통화로 일단 결제되었다. 각국의 수출기업은 수출을 통해 얻게된 청산루블표시 금액을 고정환율에 따라서 자국 통화로 지급받았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7월 1일까지 동독에서도 그러했다. 수출을 통해 얻어진 1 청산루블에 대해 동독 수출업자는 4.67 동독 마르크를 받고 있었는데 화폐통합과 더불어 2.34 서독 마르크로 환산되었다. 이 환율은 당시 모스크바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청산루블의 교환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1 청산루블이 0.2-0.3 서독 마르크로 거래되고 있었다. 사기꾼들은 2 마르크가 넘는 이 차액에 착안했다. 사기꾼들은 대외무역은행에 있는 계좌로 청산루블을 이체받기만 하면 되었다. 합법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국가가 승인한 수출대금을 이체 받는 길밖에 없었다.

구동독체제 하에서는 청산루블에 대해 동독 마르크만 지불되었기 때문에 수출이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따라서 통제가 느슨했다. 화폐통합 이후에도 잠시 통제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은 있지도 않은 수출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수출로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공범들에게 수출선수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동독 대외무역은행 부행장이었던 존 프리드마르(John Friedmar)는 “이미 6월에 새로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외무역은행은 중앙은행에 계좌로 공급증명이 없는 청산루블이 계좌로 이체되고 있음을 이미 6월에 보고했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다시 동독 경제부에 이러한 의혹을 보고했다. 중앙은행 이사였던 볼프-디터 베링(Wolf-Dieter Behring)에 따르면 “경제부는 이 업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부에는 수출업무를 통제하기 위해서 대외무역국이 있다.”

10월 16일이 되어서 연방경제부 산하 연방경제국이 연방관보에 ‘코메콘 제국과의 수출거래 및 그와 관련된 서류교환 및 지불거래의 결제에 관한 공고’를 게재하였다. 사기꾼들은 석 달 반 동안 큰 노력 들이지 않고 느슨한



통제와 모호한 관할을 악용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져 동독이 코메콘 나라들과 행하던 무역이 혼란에 빠진 사실이 작용했다. 1990년 말까지는 상호 상품공급에 관한 의정서가 유효했지만 적지 않은 동독기업들이 이미 합의된 수입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코메콘 국가에서 수입한 기계, 차량, 중간재로는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독기업들의 대코메콘 수입이 격감했다. 동독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었던 소련으로부터의 수입만도 1990년 전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7% 이상 감소했다. 이는 동독의 겨울이 따뜻하기도 했지만 소련측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동독기업들은 코메콘 회원국들에게 계획대로 공급했다. 이들에게는 유리한 청산루블 교환비율 덕분에 수익성이 매우 좋은 수출이었다. 그렇지만 코메콘 국가들의 대동독 무역수지는 이 불균형 때문에 편향되어 있었다. 소련과의 무역에서 동독은 1990년 초부터 화폐통합 때까지 97억 동독마르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 흑자는 다시 57억 마르크 증가했다. 다른 코메콘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10월 중순에 폴란드는 동독과의 무역에서 12억 마르크, 체코슬로바키아는 10억 마르크, 루마니아는 8억 마르크, 헝가리, 불가리아, 쿠바는 각각 6억 마르크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들 적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청산루블로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측정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1루블당 2.34 마르크라는 비율을 그대로 수용했다. 통일조약에서 동독의 파트너와의 경제관계에서의 '신뢰보호'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메콘 국가들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동독기업들에게는 이 교환비율이 생존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시에 코메콘 나라들도 동독의 거래선으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코메콘 국가들은 서독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독일통일의 조건으로 소련이 제시한 '이전조약'을 소련과 협상하면서 화폐통합 후 5년 동안에는 '과도한 추가적인 재정

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통일독일에게는 화폐통합에 따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사기

동독은행들에서는 범죄자들이 은행원들의 경험부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표사기는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계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수표도 입금했다가 정상적으로 1주일 기다렸다가 출금하기를 몇 회 반복해 은행직원들과 안면을 익히고 나면 입금한 수표를 미리 출금하려 하곤 했다. 그래서 지급하고 나면 부도난 수표도 있었다고 한다.

서독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다. 동독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상흔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청산루블 표시 수표를 마르크 표시 수표처럼 입금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로 인한 손실이 수십억 마르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만 되고 있다.

제4절 도난

화폐통합으로 폐기처분되어야 할 약 1,000억 동독 마르크의 액면가를 가지는 약 6,200만 장의 동독 마르크 지폐가 지하갱도에 묻혔다. 하지만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 도난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번도 실제로 유통된 적이 없는 200 마르크, 500 마르크 지폐를 포함해서 인터넷에서 골동품처럼 거래되고 있는 동독 화폐 일부는 이들 도난당한 화폐일 가능성이 있다.

‘말라히트’라 불리는 이 갱도는 1944년 8월부터 수용소 수감자와 강제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장소였다. 나치는 이곳에서 공습을 피하면서 비행기 등 전쟁무기를 생산했다. 종전과 함께 4,000명의 사망자를 남기면서 이곳은 폐쇄되었다.



당초 이 갱도에 대한 경비를 독일연방군이 담당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9년 한 변호사에게 매각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해부터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점차 많은 신권 동독화폐들이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지하갱도에 큰 구멍이 나 있어 절도범들이 드나들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두 명의 청년이 두 자루 가득한 지폐를 들고 나온 절도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밝혀졌다. 2011년에는 할버슈테트의 한 주택에서 경찰이 우연히 10만 동독 마르크를 발견하기도 했다. 지폐는 부식된 것이 아니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보존되고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을 인수한 재건신용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은 마침내 니더작센주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지폐를 소각시켰다. 그러나 이 조치는 너무 늦게 취해져 이미 대량의 동독 지폐가 이베이 등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제5절 은행의 부당이익

화폐통합을 둘러싸고 발생한 최악의 스캔들은 서독은행들이 동독은행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현한 대규모 부당이익일 것이다. 이에 관한 연방 감사원의 ‘구동독의 구채무청산과 동독 금융기관의 업무인수에 관한 보고서’는 ‘극비’로 분류되어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 이유는 동독은행 매각가격의 공개는 주식법 제395조와 신용제도법 제9조에 따른 침묵의무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보고서를 ‘극비’로 분류했다는 것은 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보고서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내용은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를 통해서 여론에 공개되었다. 그 까닭은 일부 위원들에게는 이 스캔들을 밝혀내는 것이 서독은행들의 모호한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예산위원회의 한 위원의 용기 덕분에 이 보고서가 논문을 작

성하는 데 제공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일로나 비젠얀(Ilona Wiesenjahn)이 ‘동독은행제도의 인수-서독 대형은행을 위한 수십억 거래’라는 제목의 석사논문으로 정리했고 학술지에 발표했다.

화폐통합 직전에 동독에는 서독에서와 같은 2단계 은행체제가 도입되었다. 동독중앙은행은 서독연방은행과 마찬가지로 발권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었다. 통일조약이 실행되고 동독은행들이 정산되면 연방은행이 동서독 전체의 중앙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화폐통합 이후 소위 ‘구청구권’은 총 1,775억 서독 마르크로 산정되었다.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은행들이 동독은행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되어 동독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어 파산에 이르게 했고 연방정부 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통합을 계기로 서독은행들이 동독기업이나 경제, 나아가 통일정부의 재정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실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

1. 가장 큰 규모의 부당이익은 구동독은행들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유한 ‘구채무청구권’이 매각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고스란히 인수은행의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했다. 동독은행을 인수한 서독은행들은 동독기업에게 채권자로서 나서서 소위 대출의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을 요구했다. 베를린시립은행주식회사(Berliner Stadtbank AG), 베를린협동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 Berlin),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eutsche Aus-senhandelsbank AG),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eutsche Handelsbank AG)는 서독은행들에게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었다. 무엇보다도 동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십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이 매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베를린은행주식회사는 동독중앙은행에서 전환된 베를린시립은행주식회사를 4,900만 마르크에 매입함으로써 115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Altschuldenforderungen)을 인수했다. 매각이 실패할 경우에는 베를린시립은행주식회사가 1억 1,500만 마르크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계약되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은 사실상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베를린협동조합은행은 1990년 4월 1일 동독 농업식량경제은행의 후신으로 설립되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협동조합은행이 이 은행을 1억 2,000만 마르크에 매입함으로써 동독은행의 구채무청구권 155억 마르크가 같이 인수되었다. 이 청구권에 대한 이자만도 매매가격의 몇 배에 이르렀다. 연방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막대한 구채무청구권의 인수가 매입 가격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르면 매입은행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취득 없이 위험을 떠안지 않으면서 신용사업을 인수할 수 있었고 고객에 대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ABA)는 화폐통합조약 체결 이전인 1990년 5월에 이루어진 서독주립은행대체센터(WestLB)와 합작투자연구소 ‘독일상공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1991년 1월 9일 연방재무부, DABA, WestLB는 사업처리계약을 체결하여 WestLB가 ‘구채권’의 청산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밖에 사업처리계약에는 WestLB가 DABA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WestLB는 1994년 12월에 DABA를 4억 3,000만 마르크에 인수했다. 이 인수와 함께 구채무청구권 70억 마르크도 매입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채 WestLB에 넘어갔다. 연방감사원은 연방재무부가 DABA 매각 이전에 WestLB의 주식매입옵션의 행사를 승인함으로써 다른 제안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을 비판했다.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HB)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매각되었다. 그 이유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중앙은행이 64%, 신탁청 소유로 넘어간 옛 국영기업이 30%, 독일보험주식회사와 독일해외재보험주식회사가 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구동독중앙은행의 지분이 먼저 공익

경제은행(Bank für Gemeinwirtschaft: BfG)에 2억 2,528만 마르크에 매각되었다. 아울러 65억 마르크에 달하는 구채무청구권도 BfG에 양도되었다.

이처럼 동독은행들이 약 9억 마르크의 가격에 양도된 구채무청구권의 가치는 약 430억 마르크에 달했다는 것이 연방감사원의 조사결과이다.

2. 서독의 인수은행들은 구채무청구권에 대한 이자지불에서 이중, 삼중의 혜택을 받았다. 연방감사원은 서독은행들이 구채무청구권을 무상으로 취득했을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부채에 대해서는 보증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취득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독은행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상속부채상환기금(Erblastentilgungsfonds)에서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연방감사원은 서독은행들이 구채무청구권에 대하여 차액보전청구권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중으로, 한번은 신탁청으로부터, 다른 한번은 채권정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훗날의 상속부채상환기금)으로부터 이자를 지불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원채무자도 이자를 지불했다면 3중의 이자지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이익은 반환되지 않는다. 더욱이 연방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연방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은행들에게는 신탁청을 통해서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이자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아울러 연방감사원은 은행들이 신탁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가 어떤 구채무청구권에 대한 것인지 특정하지도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방감사원은 서독의 인수은행들이 상속부채상환기금에 대한 부당한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 받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저지한 경우도 있었다. 연방정부 또는 연방재무부 비호 하에 저질러진 이러한 ‘세금셀프서비스(Steuerselbstbedienung)’ 사례에서는 은행들에게 120억 마르크가 상속부채상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회계사가 저지할 수 있었다. 이 금액은 회계



사가 부당하다고 분류한 차액보전청구권(Ausgleichsforderungen)으로 이루어진 금액이다.

3. 서독의 인수은행들은 동독은행들에게 업무지원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갔으며 합작연구소 매매협상에서 협상상대에 압력을 가했다.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Deutsche Kreditbank AG: DKB)는 1990년 6월 20일 드레스덴은행주식회사와 공동신용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7월 1일부터 드레스덴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Dresdner Bank Kreditbank AG)라는 상호로 드레스덴은행의 영업지도를 받으면서 DKB 지점들에서 활동하기로 예정되었다. 도이치은행과도 도이치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Deutsche Bank Kreditbank AG)라는 상호로 합작연구소를 설립했다. DKB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구채무청구권은 신설된 신용연구소들에 이전되지 않고 업무지원계약에 의거하여 합작투자연구소에 의해서 정산되었다. 그에 따라 도이치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가 890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을, 드레스덴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가 약 360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을 맡았다. DKB는 이러한 업무지원에 대해 도이치은행에 2억 9,700만 마르크, 드레스덴은행에 1억 2,500만 마르크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연방감사원의 의견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너무 높았다. DKB는 1991년 11월 4일 이 업무지원계약을 해지했다.

DKB가 합작투자연구소에 가지고 있던 지분은 드레스덴은행(1991년 3월)에 3억 1,000만 마르크, 도이치은행(1990년 12월)에 1억 1,300만 마르크에 양도되었다. 그러나 DKB가 이들에게 구채무청구권의 관리 및 정산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를 이 매각가격에 합산하면 서독은행들은 DKB를 공짜로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연방감사원은 DKB, 도이치은행주식회사, 드레스덴은행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부정행위를 확인했다.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두 서독은행이 설립한 합작기업인 '도이치은행신용은행'과 '드레스덴은행신용은행'은 매매협상에서 협박까지 확인되었다. 가령 연

방재무부 메모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DKB 협상대표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4. 새로운 채권자들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청구권을 획득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폐통합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야 하는 청구권을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화폐통합에서 차액보전청구권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조약 제1부속서 4조 X항 6호에 의거하여 신탁청과 연방정부가 절반씩 차액보전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채권자들에게는 신탁청이 인수한 ‘구채무’의 상황이 이자를 붙여서 상속부채상환기금(Erbblastentilgungsfonds)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독 금융회사들의 청구권은 1995년을 기준으로 980억 마르크였는데, 이 중 267억 마르크가 이자였다. 그리하여 원금상환을 시작도 하기 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권은 이자 발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방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처리방식을 평가보고서에서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은 만약에 연방정부가 구채무청구권을 직접 인수해서 경상예산에서 상환했다라면 납세자 부담을 수십억 마르크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출금리에서 구해진 금액이다. 반면에 연방정부는 훨씬 저렴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속부채상환기금을 위해서 보충예산을 편성했으며, 그리하여 납세자에게 구신용청구권과 동독은행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비용, 신탁청의 적자를 실제 통일비용으로 제시했다.

5. 서독은행들은 동독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도 부당이익을 취했다. 가령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DKB 소유 토지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 즉 “최종 구매가격을 측정하기 위



한 데이터와 추가평가를 위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구매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었다. 신탁부동산회사의 확정된 절차는 토지매매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가격의 상승은 사후적인 추가평가를 통해 추가지불을 수반해야 한다.”

여기에서 왜 DKB를 매각할 때 구채무청구권이 구매은행인 바이에른주립은행(Bayerische Landesbank)에 이전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방재무부가 이를 통해 동독기업들을 보호하려 한 것 같은 인상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구채무청구권을 매입은행에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화폐통합 이후 DKB는 신탁청이 관리를 맡은 구동독기업들의 주채권자가 되었다. DKB도 신탁청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모기업인 신탁청이 자회사인 DKB의 주채무자가 되었다. 그래서 신탁청은 일단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의 채무를 DKB에 상환해야 했다. 그래서 신탁청은 서독은행들을 중간에 개입시켜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탁청은 구채무청구권을 이자부담을 초과해서, 즉 서독은행들이 부과하는 마진을 포함해서 상환해야 했던 것이다.

6. 동독 시절 부과되던 이자율은 시장경제적 의미의 이자율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동독정부의 예산에 의해 할인되거나 인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 후 시장경제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1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로써 ‘구채무(Altschulden)’ 수준이 1992년에만 최소한 100억 마르크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10%를 상회하던 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 해도 매입가격의 5배 가까이 되었다.

7. 연방정부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구동독은행의 구채무청구권을 서독 민간은행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되었다. 가령 DKB는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령 업무지원협약에 대

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리파이낸싱해야 했다. 그리하여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신탁청에는 더 이상 채무가 없는 기업과 관련된 구채무 청구권은 1991년 말에 구동독중앙은행에 재이전되었고 필요한 자본으로 정산되었다. 구동독중앙은행의 구채무청구권은 1994년에 연방정부 소유의 재건신용은행(KfW)으로 이전되었다. 이로써 신탁청이 수행하는 구채무청구권의 상황이 민간은행의 개입을 통해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구채무구제법(Altschuldenhilfegesetz)에 의해서 구채무청구권의 부분탕감과 상환에 의무가 있었고, 지자체들은 DKB를 매각하는 시점에 구채무청구권을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실질적인 채권으로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 청구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다. 그에 따라 DKB를 매각하기 이전에 구채권청구권을 분리한다는 결정은 연방정부가 서독은행의 중간 개입을 통한 상환이라는 비싼 길을 택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동독기업들에게는 이 길이 전적으로 강제되었다.

8. 연방감사원은 연방정부의 동독은행제도 정리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극히 비판적인 종합평가에 이르렀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르면 화폐동맹이 시작되면서부터 독일연방은행이 발권은행기능을 구동독지역에 대해서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다음에는 구신용청구권을 가능한 한 조속하게 연방자산으로 전환된 동독중앙은행에 다시 통합했어야 한다. 은행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구채무청구권의 규모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밖에 동독중앙은행에 통합했더라면 구채무청구권을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을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제도의 개혁과 구채무청구권을 시장경제적 은행제도로 전환한 결과 발생한 최종대출자 채무의 커다란 증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최종대출자의 재정적 부담은 신연방주



의 경제회복 과정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다.”

9.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왜 연방정부가 동독경제는 물론, 연방재정과 납세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그러한 행위들을 했느냐는 것이다. 연방 감사원의 보고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되자 야당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법학자인 볼프강 함스(Wolfgang Harms)는 연방정부가 것처럼 값비싼 행동을 한 동기를 동독재정의 실상에 대한 오관의 정도를 적시에 인정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탁청이나 그 후속기관들이 구동독 국영기업들의 ‘구채무청구권’을 청구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연방정부의 채무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유럽통화동맹을 위한 수렴기준에서 고려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간벌기를 하는 것이 연방정부에게는 이자를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수렴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속부채상환기금을 위한 부속예산을 편성했다. 연방정부가 부채를 경상예산에서 상환했다면 수렴기준은 충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구채무청구권을 구동독 국영기업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처럼 행동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화폐통합을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하여 동독유권자의 표를 얻으려 했다. 연방정부는 급속한 화폐통합의 결과와 구채무청구권이 실제 채무로 전환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조속한 화폐통합을 위해 서독은행들에게 구채무청구권을 ‘선물’로 주면서 이들의 협력을 구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르겐 슈타르크(Jürgen Stark) 연방재무차관은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통일 이전에 서독 금융회사들과 동독은행들 사이에 협상과 사전계약이 있었음을 인

정했다. 이 협상에는 연방정부, 서독은행들, 신탁청의 대표와 함께 동독지도부 대표도 참석했다. 협상 주제는 1990년 7월 1일로 예정된 화폐통합 준비였다. 나아가 동독은행을 청산할 때 모든 이익이 인수은행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슈타르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리는 7월 1일자로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전환하기 위해서 잘 돌아가는 은행시스템이 필요하다... 신연방주들에 진출한 은행들에게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은행들이 들어간 지점들은 투자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염가에 매각되었다. 결국 서독은행들에게는 구채무청구권의 이전과 상속부채상환기금의 설치를 통해서 수십억 마르크의 선물을 주면서 조속한 화폐통합을 위한 협조를 얻어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나타났다.

또한 서독 산업계와 은행들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동독 경쟁기업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야당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감사원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방의회 표결에서 패했다.

10. 독일경제연구소(DIW)는 구채무의 실제 채무로의 전환은 동독기업들과 경제에 이 전환이 없었더라면 피할 수도 있을 ‘도산과 실업’을 안겨줄 것으로 평가하면서 동독기업들에게 이 구채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회생 가능한 기업들도 과도한 채무부담 때문에 붕괴될 수 있다... 회생 가능한 기업들의 붕괴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나 사회적 관점에서 손실을 나타낸다.”(Pohl 1990) 막스-플랑크 경제체제연구소도 “계획경제의 재정지원을 시장경제의 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영화된 기업의 운신향을 제한했다.”(Mummert 1998)는 결론에 이르렀다.

11.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와 이에 기초해서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내용에 비추어볼 때 동독 은행시스템의 구채무청구권의 정의와 청산과정에서 취해진 연방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계획경제의 기업채무를 시장경제에서의 기업부채로 정의하고 기업들에게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둘째, 연방재무부가 구채무청구권을 서독은행들에게 이전하고 연방정부가 상속부채상환기금에 의한 배상을 보증한 것은 동독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서독은행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 법률전문가들이나 경제연구소들의 공통된 결론은 동독기업들의 소위 ‘구채무’는 실제로는 재정할당이며 시장경제적 의미의 신용과는 그것의 전제, 기능, 책임소재의 면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통일조약에서 구채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리하여 동독기업, 협동조합, 지자체에게 부과된 가공의 ‘구채무’를 상환의무가 있는 실제 채무로 자의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높은 이자부담을 지우는 한편, 구채무청구권을 서독은행들에게 이전함으로써 동독 기관들을 ‘극단적인 착취와 종속의 상태’(Wiesenjahn)로 몰아넣었다. 동독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정할당을 삭제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로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것이다. 이는 계획경제의 운용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강제납입’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을 둘 수 없었던 기업들은 자력으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필요한 이윤을 남길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현대적 장비를 갖춘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과도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민영화에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이미 1990년 봄에 경고했듯이 기업들이 채무부담으로 도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동독경제의 전면적인 파괴였다.

셋째, 신탁청은 이들 기업을 가치 있는 기업이 아니라 부실기업으로 매각했다. 수많은 기업이 ‘조각조각’ 매각되었고 1 마르크짜리 부동산으로 투매되었다. 그마저도 되지 않은 기업은 가동중단되었다. 서독기업이 경쟁을 피하

기 위해서 동독기업을 매입한 다음 폐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많은 일자리가 파괴되었다. 결국 신탁청이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떠안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나마 정작 혜택을 입은 것은 더 이상 동독기업들이 아니라 서독의 인수기업들이었다. 신탁청이 관리했던 기업의 94%가 서독기업에 매각되었고 6%만 동독 인수자들이 매입했다.

넷째, 구채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독기업과 동독기업을 차별대우했다는 의혹이 있다.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동독기업이 떠안았던 구채무의 거의 100%를 신탁청이 떠안았다. 신탁청이 떠안지 않은 ‘구채무’는 동독 매입자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있다.

회계통합 이후 신탁청이 관리하지 않고 동독인들의 소유로 남아 있던 농업생산협동조합들에게는 ‘구채무’가 전액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서독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두드러진다. 서독 매입자들에게는 구채무가 면제되었고 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 소유주들에게는 전혀 면제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은 불평등한 대우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서독기업들의 무분별한 행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독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채무’를 탕감하지 않는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동독인의 수중에 남아 있던 이 경제부문마저 현대적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EU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동독 주택경제는 파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수 여당인 기민당의 장관 출신 정치인 루퍼트 솔츠(Rupert Scholz)가 작성한 평가보고서 덕분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부문도 보유주택의 15%를 민영화하고 그 수익을 상속부채상환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민영화는 대부분 실수요자가 아니라 은행이나 부동산회사에게 이루어졌으며 호화정비를 통해 투기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입자들의 자율관리와 공동결정을 통해 임대료를 가능한 한 낮춘다는 협동조합의 이상은 파괴되었다.



다섯째, 연방정부에 의한 ‘구채무’의 자의적인 부과는 동독 지자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업이나 협동조합과는 반대로 동독 시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사후적으로 ‘구채무’가 부과되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서명하지도 않은 채무계약에 대해 원금상환과 이자납입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횡포였을뿐만 아니라 명백한 조약 위반이었다. 통일조약에는 계획경제에서 체결된 신용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화폐통합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은행들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할지라도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구채무청구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차액보전청구권마저 인정한 것은 보상이 과도하다는 것이 연방감사원의 지적이었다.

여섯째, 연방정부의 구채무정책은 서독은행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였을뿐만 아니라 통일 후 동서독 내부의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정책은 서독 납세자들에게 ‘구채무’와 신탁청의 채무를 통일에 따른 실제 채무로 주장했고 납세자들을 상속부채상환기금의 상환에 동원함으로써 사실상 ‘통일비용’을 부풀렸다. 반면에 동독주민은 동독 경쟁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무분별한 서독기업인들이 동독기업을 인수한 다음 바로 폐업하고, 그 몫으로써 일자리를 파괴하도록 유도한 신탁청의 민영화정책으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셈이 되었다. 동서독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일곱째,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연방정부의 구채무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은 여러 형태로 제안되었다. 일단의 경제연구소들은 동독의 구채무를 한 국가기관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청구권으로 평가하고 서로 상쇄하여 결과적으로 구채무를 사실상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는 법학자 함스(Harms)와 샤프트슈나이더(Schachtschneider)가 제안한 것처럼 ‘구채무’가 시장경제체제로 이전되지 않도록 통일조약의 본문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구채무’의 상환과 관련해서 신연방주에 지금

까지 유효했던 법이 적용되었더라면 동독기업, 협동조합, 지자체의 채무부담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동독 지자체들은 아무런 ‘구채무’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경제와 농업부문의 협동조합들은 이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원금만 매년 1%씩 상환하면 되었을 것이다. 제조업부문의 국영기업과 콤비나트는 채무의 상환과 이자납입 의무를 져야했겠지만 금리는 10%가 넘는 시장금리가 아니라 1.8%였을 것이다.

‘구채무’의 이전에 따른 피해는 ‘구채무청구권’을 민간은행에 양도하지 않고 연방이 소유하게 된 구동독중앙은행에게 이전했다더라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연방감사원이 선호했던 이 방안은 비록 ‘구채무’를 재정할당이 아니라 실제 채무로 해석하는 부당함은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은 안고 있지만 ‘구채무’의 정산을 조정하는 데에는 유리했을 것이다.

연방정부는 결코 ‘구채무’를 실제 채무로 전환해야 할 불가피성에 직면한 적이 없다. 앞서 설명한 대안들은 연방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자신과 은행, 서독 경제계에만 유리한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동독경제에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가해졌다. 어떤 정치적 결정이 당사자에게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화폐통합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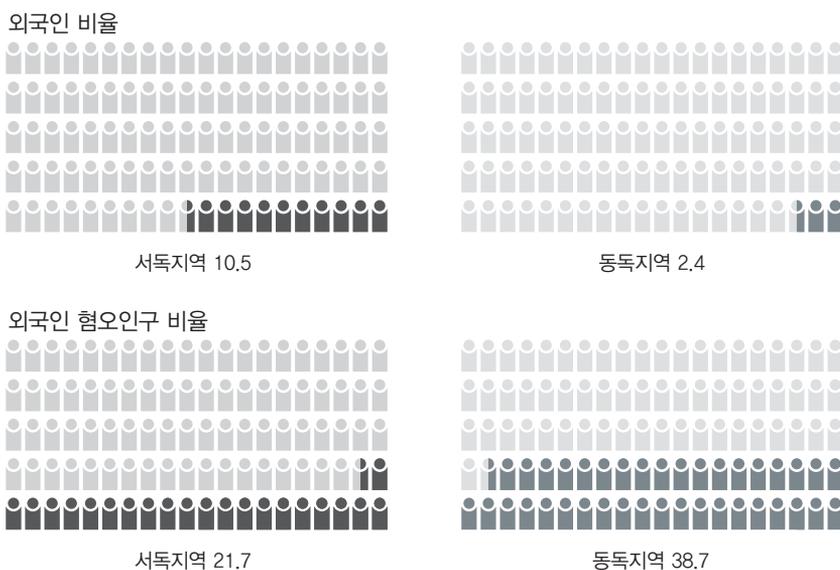
켈른에 소재하는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가 화폐통합 25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동독주민들에게는 화폐통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1:1이라는 교환비율 때문에 일단은 환호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동독경제, 동독기업에게는 화폐통합은 비용증가와 경쟁력 및 시장의 상실을 의미했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들이 밀려들었고 국영기업 구조는 시장경제에 부적합했다.

화폐통합에 걸었던 다양한 기대는 일시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독인들의 생활수준이 몇 년 사이에 서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안정적인 마르크화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동독인들은 소비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동독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폐통합 4반세기의 경제적 결산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다. 일단 동독지역은 이제 더 이상 주민이탈지역이 아니다. 1990년 이후 동독지역은 인구가 거의 200만 명이 줄었다. 지금은 유입과 유출의 수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성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다. 동독지역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할

레경제연구소 올리버 홀테밀러(Oliver Hotemöller) 교수는 동독경제의 활성화
 화를 위해서 이전지출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능한 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업중단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작센-안할
 트주만 하더라도 청소년의 1/8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독일 전역의 학교교육을 비교 테스트한 결과
 동독지역 학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이 활
 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촉진되어야 하고 외국
 인 학생을 유치하여 두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림 1-4>참조). 동독지역의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38.7%)이 서독지역(21.7%)
 보다 높은 것은 동독이 당초 반파쇼국가로 건설되었고 동독 스스로 나치 청
 산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자부했음을 고려한다면 기이한 현실이다.

그림 1-4) 동서독지역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2012년)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2015)

또한 동독경제는 화폐통합 후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서독으로부터의 막대
 한 재정지원 덕분에 ‘빈민가’는 아니다.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 비교해도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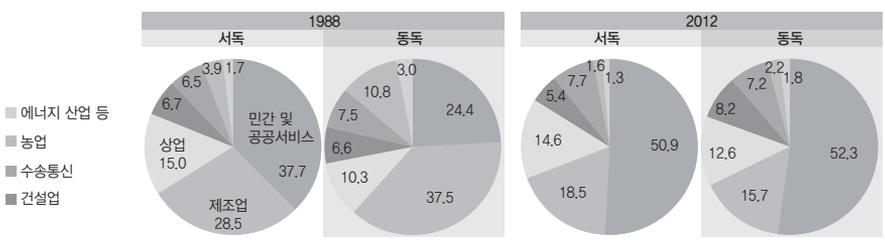


독지역은 중간 수준이다. 경제력은 체코나 폴란드의 두 배 가량이고 일부 지역은 서독 수준에 근접했다. 가령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독에서 가장 취약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도시 중에서는 포츠담, 드레스덴, 라이프치히가 서독의 도시들에 견줄만하다.

또한 화폐통합 후 25년 동안 동독경제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적지 않았다. 첫째, 출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동독은 구조전환에서 매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그림 1-5) 참조). 1988년 동독 취업인구의 부문 간 배분은 서독의 1965년과 비슷했다. 신탁청의 주도 하에 1992년부터 동독산업은 추격을 시작했다. 수십억 마르크를 투자해서 작센-안할트주의 화학공장이 현대화되었고, 칩공장이 드레스덴에, 자동차공장이 츠빅кау, 에르푸르트, 라이프치히에 입주했다. 그 밖에 중견기업들이 서부 작센주의 기계공업에서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그림 1-5) 구동독의 구조전환-산업부문별 취업인구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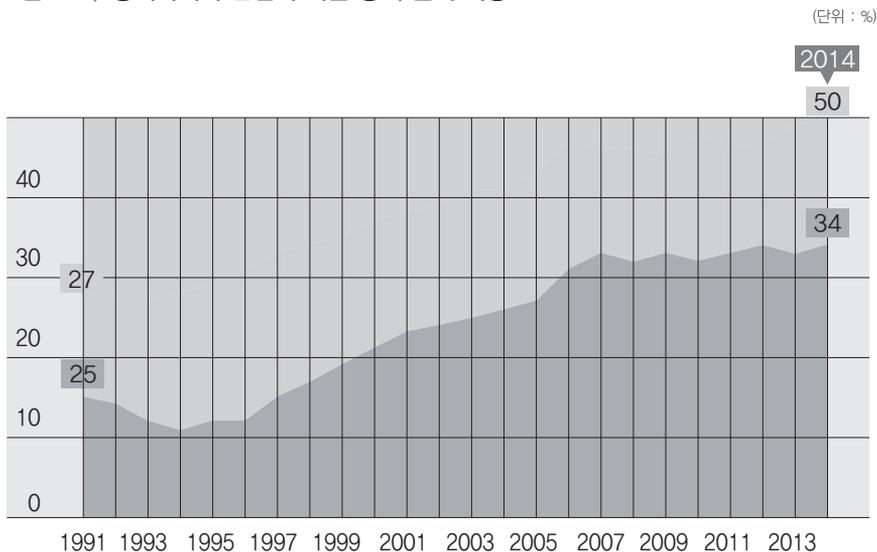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2015)

그 과정에서 제조업은 동독 총생산에서 18%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서독에 비해서는 5% 남짓 적은 비중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비중이다. 동독 제조업의 부활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6) 참조). 1994년부터 동독 제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1%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 1990년대 창업붐은 제조업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을 탄생시켰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했다. 아울러

창업률은 동독지역 총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7%로 급속히 상승해서 서독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림 1-6) 동서독지역 산업의 매출 중 수출의 비중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2015)

동독에서 각별하게 활발한 부문이 관광이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이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주민 1,000명당 관광객 숙박 수가 1992년 3,500명에서 2014년 17,000명으로 증가했다.

동독지역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교통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이다. 동독과 서독을 연결하는 거의 모든 대규모 철도와 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동독지역이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이 경험했던 경제기적이 1990년 이후 동독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동독경제는 너무 낙후되어 있었고, 서독경제는 추격하기에 너무 강했다. 할레경제연구소 올리버 홀테밀러(Oliver Hotemöller) 교수에 따르면 “너무나 높은 기대들이 많았다.” 그는 미국 남북전쟁 후 남부

가 북부에 근접하는데 100년이 소요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동독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독지역의 1인당 총생산은 서독지역의 79%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1-7). 다만 낮은 물가 덕분에 1인당 구매력은 서독지역의 84%에 이르고 있다.

그림 1-7) 정규직 근로자 월소득총액(2013년)



출처: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본사를 동독에 둔 콘체른이 적기 때문에 세수가 적어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주가지수(DAX)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본사는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에 있다. 그 밖에 기계공업이나 전자산업처럼 연구개발이 활발한 지식집약적인 부문은 동독지역에 현저하게 적다. 그러므로 동독의 모든 주들이 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독일연방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지역의 주들에 비해서 재정상태는 건전하다. 특히 작센주는 부채비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덕분에 지난 20여년 동안 공공투자가 서독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덕분에 인프라스트럭처, 학교 건물, 병원, 산업단지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서독 수

준에 근접했다. 2020년부터 새로운 재정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동북지역을 위한 특별지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화폐통합 후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동북기업은 많지 않았다. 동북기업의 생산성은 서북기업의 40%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투자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처음 3년 동안에 걸친 (특히 청년들의) 이주 물결에도 불구하고 동북지역의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았다.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이 동북보다 저렴하게 생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에서처럼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들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나마 창업이 활발했다. 서북과 외국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지점을 개설했고 많은 동북인들이 자영업자로 변신하면서 창업을 했다. 이들이 동북경제의 붕괴를 완화시킨 역동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창업이 성공하고 있는 데에는 높은 교육훈련 수준에 힘입은 바 크다. 서북 콘체른이 설립한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서북에 비해서도 높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작은 기적은 적응압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수많은 동북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총생산의 측면에서 처음 몇 년 동안 관찰되었던 추격과정은 이미 19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정체상태에 들어섰다. 이후 서북과의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으며 서북에의 접근이 다시 가시화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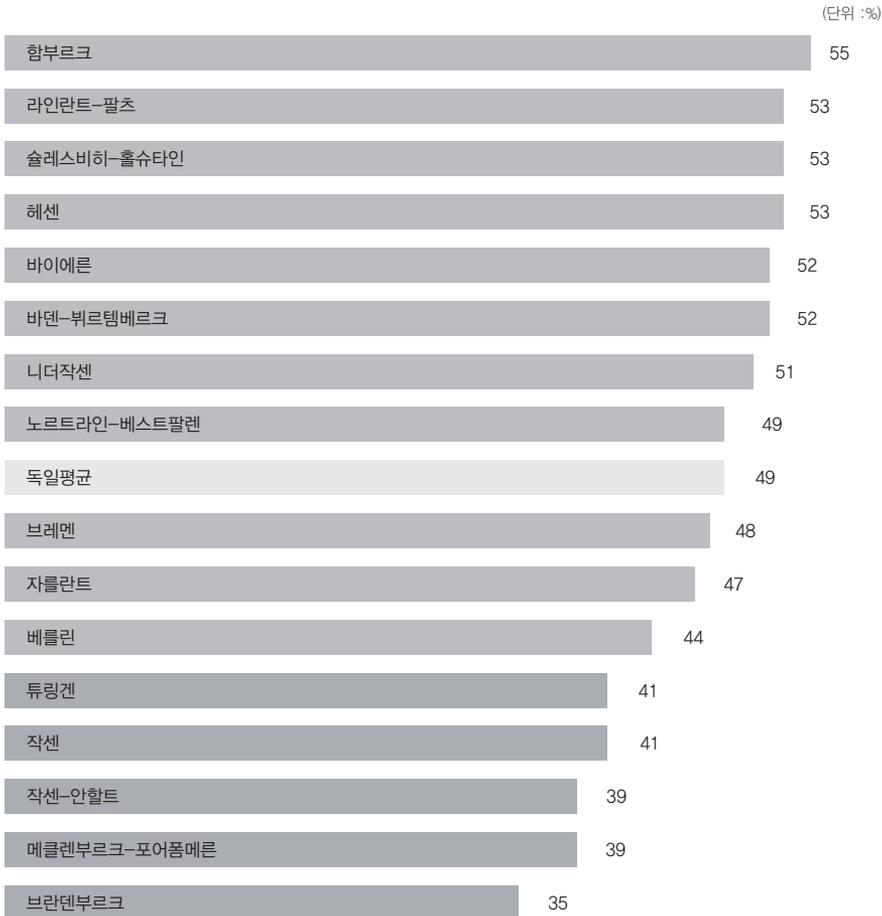
할레경제연구소 홀테밀러 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규모가 작은 것이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지역에 콘체른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도 평균매출이 10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북지역에서는 그 두 배이다. 규모의 차이는 연구개발역량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동북지역 기업은 대다수가 내수목적으로 생산한다. 생산의 1/3만 수출되고 있다. 서북지역에서는 수출 비율이 절반가량이다.

그 밖에 많은 동북지역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자본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동북지역은 장기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나



아가 그동안 서비스기업에서 생긴 일자리가 많았다. 제조업부문은 전체 생산의 15%에 지나지 않아 서독지역의 25%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생산성은 서독지역의 3/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동독지역 성장에는 베를린이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 베를린의 호황이 주변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관광객 수에서 바이에른주를 앞질렀다.

그림 1-8 > 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주민의 비율(2012년)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2015)

끝으로 동독지역 경제회복의 걸림돌은 1990년 이래 누적된 200만 명이 상의 인구감소이다. 그 이유는 출산률 감소와 서독 이주이다. 지금은 정체상

태에 있지만 동독인의 서독 이주는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잠재적 구직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업문제는 심각하다. 2005년까지 동독경제 붕괴에 따른 결과로 동독지역 실업률은 19%에 이르렀다. 그 이후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박해서 서독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행복지수에서도 동서독 사이의 격차는 아직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8). 구동독지역에 해당하는 5개 주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주민의 비중은 모두 독일 평균보다 낮을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따르는 격동의 시절이 동독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 부설 동독연구연합의 클라우스 슈뢰더(Klaus Schröder) 교수는 재정이전을 합산하면서 그 종합적인 성과를 요약했다. 경제개발지원금, 연대기금, 지방재정조정, EU지원금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이전지출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동독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결과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조 유로의 순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Greive 2014). 이 중 60-65%가 사회보장부문으로 흘러들어갔고, 그중 대부분이 연금으로 지출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이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 동독경제의 추격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Ifo경제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격차는 향후 25년 동안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동독에는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구감소가 경제적 역동성을 잠식하고 있다. 베를린인구발전연구소(Berlin-Instit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구 변동이든, 경제력이든, 자산이든, 유산이나 농업기업 규모든 어디에서나 상당히 정확하게 과거 경계가 그려지고 있다.” 소비습관이나, 교육 수준, 기대수명, 자녀 수 등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양상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의 결론은 상당히 냉정하다. “한동안 분단되었던 두 부분이 진정으로 결합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는 더 걸릴 것이다.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동서독 화폐통합은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지렛대였다. 그것이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유럽화폐동맹은 이미 1950년대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주제였는데 반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정치적 의제였다. 또한 유럽화폐통합은 동종의 경제체제를 가지는 나라들을 공동의 화폐로 결합하는 작업인데 반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 체제전환과 화폐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과업이었다. 더욱이 경제발전 또는 생산성의 격차가 큰 두 나라를 한 나라로 통합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새롭게 재건하는 문제였다. 게다가 정치권은 노동력의 대량이주를 단기간에 차단해야 하는 압력을 받았다. 인적 자원이 계속 유출된다면 동독지역의 경제적 재건이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서독지역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권고했던 단계적인 방안은 1990년 3월의 인민의회 선거를 통해 거부되었고 급속한 화폐통합이 선택되었다. 서독의 콜 정부는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확신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급속한 화폐통합을 부추겼다.

이처럼 독일의 화폐통합이 역사적 전례가 없었고 정치적인 '외적 강제'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기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통일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회피불가능 비용(Unavoidable Costs)과 회피가능 비용(Avoidable Costs)으로 구분할 때 적지 않은 회피가능 비용을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회피가능 비용은 주로 통일을 정치 프로젝트, 선거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그리고 독일 경제학자들이 평가하듯이 이 비용은 너무 컸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교환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당시 화폐통합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생산성에 부합되는 교환비율이 결정되어야 생산성에 맞는 소득이 결정되고 동독의 자력에 의한 경제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를 위한 중요한 중간단계가 바로 비용절감, 특히 임금인하이다. 임금이 하락하면 동독 주민의 이주는 계속되겠지만 그것은 화폐통합 후 어차피 그러했다. 말하자면 이주행렬은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5월과 6월에 잠시 주춤했을 뿐, 화폐통합이 발효되면서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불완전고용과 실업이 급증하자 이주는 7월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1991년 3만 명, 1992년 2만 명, 1993년부터는 1만 7,000명 수준에서 이주행렬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동독이주민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선택인 화폐통합이 이주민 행렬을 구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과도한 임금인상이 물론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고, 따라서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임금이었던더라면 동독기업의 회생가능성은 한결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임금은 급등했다. 근로자 대표에게 단체협상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통합 이전에 협상 상대였던 콤비나트 대표는 과거의 정치적인 경력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강하게 맞설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근로자였기 때문에 임금 인상



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 대신해서 사용자단체를 대표했던 협상 상대 또한 서독 경제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독지역에 강력한 경쟁자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자율적인 노사협상권은 기본권에 속했기 때문에 개입하기 불가능했다. 노사의 자발적인 자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서독 생활수준의 조속한 균등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동독인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했다.

결국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인해 발생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엄청난 재정부담은 사전에 저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보전해주는 사회정책과 결합했더라면 총액 면에서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살아남는 동독 기업이 있었다면 경제성장에도 유리했을 것이고 저임금 일자리나마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동독주민에게는 충분한 가치분소득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므로 생계비를 보전해 줄 수는 사회보장 급여가 제공된다면 동독인들은 나름대로 노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서독 화폐통합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명확하면서도 종합적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거론될 수 있다.

첫째, 북한주민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이 적어도 하락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통일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의 측면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독주민들처럼 북한주민들이 통일로부터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독 정치인들의 역할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가 아무리 낙후되었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회생시켜 통일 경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파괴 후 재건’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것은 비단 경제적

인 문제만은 아니며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 그들이 통일한국에서 단지 남한주민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동참하고 기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들이 통일로부터 기대했던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나마 메워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한국에서 남북한주민 사이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이전이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독일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독인의 물질적 욕구를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동독주민의 열망을 통일과정과 동독 재건과정에 동원할 수 있었더라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동독인의 자긍심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동독인들 스스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들의 의존의식 또한 줄었을 것이며 보다 당당하고 대등하게 통일독일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통일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남아 있는 동서독인들 사이의 ‘이쪽 저쪽’ 차별의식이 일찍 완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화폐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반드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은 동독주민의 소득보장, 기업의 경쟁력, 물가안정, 재정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달성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물가안정이 위협받지 않은 것이 성공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연방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그에 따른 동독기업의 줄도산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나머지 세 가지 목표에서는 모두 실패했다. 독일통일의 승자는 콜 총리와 그의 정부가 지원해준 독일은행 및 경제계라는 평가가 결코 야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화폐통합을 화폐통합으로서만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통일정책의 하나로서 설정하고 다른 정책, 특히 사회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평가절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주민의 소득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정책적 부조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화폐통합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종합적인 경제정책적 고려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국면에서는 이 목표에만 집착해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화폐통합에서도 이데올로기적인, 정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점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폐통합 국면에 거국적인 협의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독이 화폐통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독 국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보인 거부감은 이들 기업의 몰락을 부추김으로써 통일비용, 재정부담을 가중시켰을뿐만 아니라 동독인들이 자력으로 재기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통일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국가가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과감하게 담당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에서처럼 민간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덟째, 화폐통합이라는 과도기적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각종 편법이나 불법행위를 차단할뿐만 아니라 그에 의거한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환대상이 되는 화폐자산을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철복 후철계’.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한 한국은 동서독을 충실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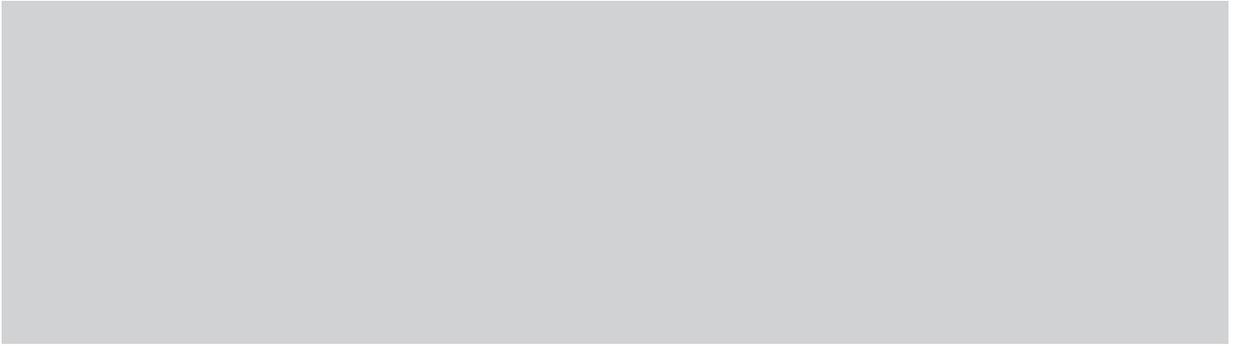
- Bofinger, P.(1991), "eld- und Kreditpolitik nach der Bildung der deutschen Währungsunion" In: Gröner, H., Kantzenbach, E., Mayer, G.(Hrsg.), *Wirtschaftspolitische Probleme der Integration der ehemaligen DDR in die Bundesrepublik*, Berlin.
- Brenke, Karl(2015), *Die deutsch-deutsche Währungsunion: ein kritischer Rückblick*, DIW, *Wochenbericht*, Nr. 27.
- Christ, Peter(1990), *Geschäfte mit Transferrubeln bescherten Gaunern Millionengewinne*, *Zeit Online*, 1990년 10월 26일.
-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년 6월 18일.
- Flassbeck, H., Hoffmann, L., Pohl, R.(1990), *Reform der Wirtschaftsordnung in der DDR und die Aufgaben der Bundesrepublik*, *Wochenbericht des DIW Nr. 6/1990*.
- Greive, Martin(2014), "Deutsche Einheit kostet 2,000,000,000,000 Euro", *Welt*, 2014년 5월 4일자
- Hübner, P.(1998), "Industrielle Manager in der SBZ/DDR. Sozial- und mentalitätsgeschichtliche Aspekte". *Geschichte und Gesellschaft*, Nr. 24.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2015), "Viel erreicht, noch viel zu tun", *iw-dienst*, 41. Jahrgang, Ausgabe 26, 2015년 6월 25일.
25. 6. 2015
- Ludewig, J.(2015), *Unternehmen Wiedervereinigung. Von Planern, Machern, Visionaren*, Hamburg.
- Mummert, Uwe(1998), *Ordnungswechsel und politisch-ökonomische Prozesse – Das Beispiel der monetären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Max-Planck-Institut zur Erforschung von Wirtschaftssystemen Jena (Hrsg.)*,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ORDO*, 49, 1998에 게재.
- Pohl, Reinhard(1990), "Alt-Schulden der DDR-Betriebe: "Streichung unumgänglich", in: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Wochenbericht*, 1990, H. 36.
-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1990), *Brief des Sachverständigenrates vom 9. Februar 1990 an den Bundeskanzler. Auf dem Wege zur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s. Jahresgutachten 1990/91*, Stuttgart.
- Schürer, G., Beil, G., Schalck, A., Höfner, E., Donda, A.(1989): *Analyse der ökonomischen Lage der DDR mit Schlussbetrachtungen. Vorlage für das Politbüro des Zentralkomitees der SED*, 27.10.1989.



Wiesenjahn, Ilona, "Die Übernahme des ostdeutschen Bankensystems – Ein Milliardengeschäft für westdeutsche Großbanken", ICARUS, Zeitschrift für soziale Theorie und Menschenrechte, Jg.4,1998/3.

Willgeroth, H.(1990), "Probleme der deutsch-deutschen Währungsunion",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Nr. 3)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과 독일통일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은 형식적인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3개월 전인 1990년 7월 1일에 이루어졌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라고 불리는 1990년 당시 수상청 경제국장이자 신연방주 특임관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¹ 실제로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월까지 4개월 동안에 무려 30만 명이 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할 수 있다. 헬무트 콜 수상의 서독 연방정부는 조기 화폐통합으로 이주의 물결을 멈추려고 한 것이다.

1989년 11월부터 화폐통합이 실현된 1990년 7월까지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문서들은 동독의 변혁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동서독정부와 전문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지금도 독일통일의 주역들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알프스의 암벽을 등반'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은 분명히 성공

.....
¹ Johannes Ludwig, Unternehmen Wiedervere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aer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적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화폐통합은 통일의 가장 첫 단계로 이루어졌다.

당시 독일의 정치인들과 실무자, 전문가들이 부딪쳤던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독일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1989년 이전의 동독의 경제구조를 검토하고 변혁기 동독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했었는지 그리고 동독의 변혁이 시작된 이후 화폐통합에 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점검해 볼 것이다. 화폐교환율과 화폐통합 과정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당시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독경제와 금융

1989년 이전의 동독경제는 오랫동안 비교적 안정되고 산업화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동구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동독의 경제상황이 분명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지도자들이 동독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것이 통계수치의 조작에 기반을 둔 정치적 선전일 뿐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서방에서 동유럽을 분석하던 사람들도 동독에 대해서는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서구에서 경제발전의 지표로 간주하는 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취업동향, 물가상승률, 정부예산의 운영과 결산 등에 대한 동독의 통계만 본다면 동독경제가 1970년대 초반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가을 이후 동독사회 내에서 대변혁이 진행되면서 동독경제가 급격하게 붕괴양상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동독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독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이유는 열악해지는 경제 상태를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다.

특히 1980년대 동독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70년대 초반

² 내독교역의 신용한도(문서번호 3).

발터 울브리히트가 실각하고 에리히 호네커가 사회주의통합당의 새로운 당 서기로 취임하면서 동독경제는 1960년대에 진행되었던 ‘신경제체제’ 실험을 포기하고 다시 중앙집권적 경제로 전환되었다. 그와 함께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동독 지도부는 국민생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소비제품 생산 활성화와 주택건설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호네커 정권의 경제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독일통일 이후 1991년에 독일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1980년대 중반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코메콘에 속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20% 정도 높았다. 1989년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환율을 1:1로 비교한다면 1989년 동독의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이 서독의 60%에 달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 소비재, 식료품, 건축물 등 동독의 생산품들의 대부분이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동독의 내수시장이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낮고 단순해도 동독 내에서는 충분히 판매될 수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동독의 대외경제상황이 악화되어 1980년 동독의 대외부채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1981년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서방은행에 대해 지불이행능력을 상실했을 때 동독의 대외신뢰도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동독 또한 더 이상의 신규 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1983년에 바이에른 주지사였던 요하네스 슈트라우스의 주선으로 약 20억 서독 마르크의 차관이 제공되어서 이때 동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동독의 경제위기가 결과적으로 1989년에 동독사회에 변혁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본다.

이 장의 목적은 동독경제의 위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통합 이후 발생한 제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동독 경제구조와 금융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위기에 관한 분석은 독일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Andreas Busch, Die deutsch-deutsche Waehrungsunion: Politisches Votum trotz oekonomischer Bedenken, in: Ulrike Liber/ Wolfgang Merkel(편)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Strategien-Kontroversen, pp.185-207에서 발췌.

동독경제는 1976-1980년 5개년 계획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동독의 대외 경제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수출 수익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석유 수입비로 소련에 지불해야 했으며, 1976-1980년 5년 간의 대서방 부채 감축문제가 제1과제로 제시되었다.

1981년에 있었던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지불이행능력 상실은 동독에 대한 신뢰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 일례로 동독은 더 이상의 신규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서방 수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화 지불 수입품에 대해 감축정책을 펼쳐야만 했다. 그 결과로 국내물자 조달 사정이 악화되고, 성장저하현상이 초래되었는데, 동독 지도부는 독립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했다. 처음부터 동독은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동독은 한편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해나가긴 했지만 그 밖에는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자립경제적 독립성을 표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동독은 금속가공산업의 부품 중 5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였다. 반면 서

독의 부품 자체생산 비율은 17%이며 나머지는 수입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국제분업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 동독은 자급자족 방안을 에너지 경제정책에도 적용하였다. 석유를 국산 갈탄으로 대체하여 갈탄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절약조치에 따라 국내 석유소비를 1978년 1,800만 톤에서 1980년대 들어서는 1,100만 톤으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전체 석유 수입량은 계속해서 연간 2,300만 톤의 규모를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동독정부가 석유제품과 원유를 석유가격이 높아질 때 서방에 다시 수출하여 무역적자를 상쇄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독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석유제품의 비중이 1971-1975년에 3.4%였던 것이 1976-1980년 5개년 계획기간에는 9.0%, 그리고 1982년에는 28.7%로 증가하였다. (...)

동독은 이처럼 어렵게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국민소득 성장의 대부분이 경상수지 개선에 투입되었다. 1981-1985년 평균 국민생산소득은 4.3%의 성장을 보인 반면, 국민소득의 지출률은 0.2%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같이 제한된 여건 하에서도 동독정부는 가급적이면 국민소비에 대한 타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소비는 2.2%, 사회소비는 0.9% 증가를 보일 수 있었다. 동독정부는 가격보조정책을 통해 개인소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경제발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86년 정부예산 중 19.4%가 가격보조정책방안에 사용되었다. 이 같은 국민복지정책은 그 대신



다른 부문, 즉 투자부문에서 절약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투자부문 예산은 연평균 5.3% 감소를 보였다. (...)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1970년 이후로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총생산자본의 노화현상을 초래하였다. 그것이 바로 동독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1 DM 어치의 수입을 위해 4.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이 동독의 생산성이 얼마나 저해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에만 해도 1 DM에 대해 2.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하면 됐었다. 그로써 동독 정치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작이었던 것이 증명되었다.

Jahn Priewe/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a.M. 1991에서 발췌

동독은 국제수준의 기술발전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적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쇠퇴한 산업국가였다. 동독의 경제구조는 정도상의 차이만 있었지 경직된 상태였으면 산업 분야와 용역사업 분야를 발전시킬 구조개혁의 여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이같이 동독의 경제개발 상태가 서독보다 훨씬 뒤쳐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

실사 동독경제의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았으나, 동독의 출발조건이 서독보다 훨씬 열악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의 직접 전쟁피해는 서독에 비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으나, 소련 주둔세력에 의한 시설철거는 극심하였다. 산업 분야에

서의 공장해체율은 26% 정도로 추정되었다. 1945년 5-6월에만 460여 개의 베를린 회사들의 시설들이 분해되어 소련으로 이전되었다. 게다가 아테나우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동독과 서방의 주요 납품업자들과의 사업관계가 단절되었다. 반면 서독은 서독 연방정부의 서방연대정책과 마샬 플랜, 그리고 막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의 도움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세계 최고인 미국의 기술수준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었다.

반면 동독은 지리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련세력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동독의 수뇌부들도 기꺼이 소련의 지시에 따랐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별 차이가 없었던 1인당 GNP는 1950년에 이미 서독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었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약 10%인 190만 명이 1950년대에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고급 전문인력이었다. 반면 1950년대 서독의 주민 수는 약 5백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것도 대부분 고급 노동력이 증가하였다.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경제력의 차이는 그 후 계속 이어졌다. 그 외에 GNP 대비 군비지출은 서독의 2배에 달했다. (...)

동독경제가 충분한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의 부재와 자율적인 공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이니셔티브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제품업자와 사업자들은 국내의 다른 경쟁상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으며,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대외무역 독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코메콘 국가들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일반 대외교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된 제품을 처리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

동독경제의 역동성 미비의 두 번째 원인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의 분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동독은 소규모국가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제품을 자체생산하였다. 상당한 분야에서 평균 기업규모는 최적 규모 이상이었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의 수는 서독의 배에 달했다. 개별 업종에서는 잉여제품들이 수출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는 동독 자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또는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수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방대한 생산품목은 제품의 규격화와 다양성의 미비, 모델의 단조로움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투자제품 산업에 점점 더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와 함께 생산성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

동독경제의 세 번째 문제는 거대한 중앙행정주의였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와 경제를 중앙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이상에서 언급한 동독경제 몰락의 3대 원인들은 경제제도상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그 체제 자체 내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였다. 집을 새로 단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을 새로 지어야 했다. 따라서 동독경제는 개혁 불가능한 것이었다. (...)

이러한 모든 제도상의 잘못과 체제 자체의 결함들을 1989-1990년 당시 서독 위성자들이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이들은 이러한 결함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놓쳐 버렸다. 따라서 이전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었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독일의 현존 사회주의의 멸망을 현존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은 동독경제의 결함은 강조하면서도 1,000만 동독 종사자들로 구현되는 거대한 경제개발 잠재력을 동독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였다.

동독 계획경제의 특징은 모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들이 그런 것처럼 국가경제가 단일한 계획의 틀에서 계획·관리되었다는 것이다. 히켈교수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9년 당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하는 문제였다.³

동독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금융제도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해 구축된 금융제도를 급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추어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두 체제의 금융구조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동독의 금융제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동독지역이 소련군의 점령지역이 되면서 그 틀이 잡혔다. 당시 소련군은 동독지역에 있던 모든 금융기관을 일단 해체하였다. 1948년에 화폐개혁을 추진하면서 동독의 15개 지역에 독점은행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정책은 물론 사회주의체제의 국가경제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 동독중앙은행이 관리한다고 말한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⁴ 그러나 동독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것처럼 독점은행 하나만 설립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 내에는 동독중앙은행(Staatsbank) 외에 적어도 몇 개의 은행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인 은행을 모두 동독중앙은행의 통제·관리 하에 두면서 실질적으로는 일원적인 은행체제를 구축하였다. 동독 국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모든 회계처리를 동독중앙은행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독의 금융구조는 서독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되었다. 동독의 금융제도에서 신용대출과 이자율은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독중앙

.....

³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문서번호 4).

⁴ Mann, Gerald H., Die Transformation des Bankensystems in Ostdeutschland. LDV-liliana Djekovic Verlag, München 1996. p.8 인용.



은행, 즉 국가계획수립을 위한 내각위원회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동독 금융구조의 특징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일부이다.
- 모든 금융기관은 계획의 실행을 책임질뿐만 아니라 동독중앙은행의 연장선에서 국가계획기구의 경제계획에 포함되었다.
- 금융기관 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동독의 은행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에 따라 동독중앙은행이 중앙에서 조직과 통제 그리고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발권은행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외의 금융기관으로는 저축금고와 조합금고 또는 상업협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모두 동독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동독중앙은행은 정부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실천에 옮기는 수행기관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동독경제에서 은행이 담당하는 역할은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 명기되어 있다.

1974년에 개정된 동독중앙은행법에 따르면 동독중앙은행은 사업장, 콤비나트, 주택공사, 국내 유통거래와 우편, 전신 등 모든 경제부문과 국가 기구의 재정을 담당하며 동시에 관리·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은 국가의 경제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동시에 국가재정에 부합하도록 대출을 계획하고 그것을 계획위원회와 합의하여 재무부와 내각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은 내각위원회가 결정한 화폐량과 대출의 규모에 맞추어 ‘대출’의 총액을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대출과 이자 그리고 원금상환의 단어가 등장하는 동독중앙은행법의 조항들을 자본주의체제의 금융시장의 논리로 읽으면 동독의 금융구조를 오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5조 1항의 문장은 ‘동독중앙은행은 국가계획의 목표에 따라’ 계약의 틀에

서 재생산과정의 재정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며 생산자들이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통제한다고 명시되었다. 대출받은 생산자는 그것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만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담보에 관한 언급은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대출’이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대출과 달리 담보를 요구하는 신용대출이 아니라, 일종의 예산배정이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영기업, 주택공사와 모든 협동조합의 회계가 동독중앙은행을 통해 처리되었다.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는 이러한 회계가 대출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은행 대차대조표의 항목명칭만을 근거로 동독에서의 ‘대출’을 서구 자본주의 금융제도에서와 동일하게 대출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오히려 국가보조금 또는 예산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왜냐하면 동독의 개별 사업장에서 대출을 원해서 부채를 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재원이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은행을 통해 개별 사업장과 행정단위에 지급된 대출이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대출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서구의 학계에도 잘 알려진 것이었다. 그러나 1989-1990년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 국영기업과 지방행정기관의 부채가 처리된 방식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집단적으로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2005년 7월 1일자 Tagesspiegel은 ‘Schulden ohne Suehne(빌린 적 없는 부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크게 비판하였다.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 언급된 대출의 개념을 서구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분명히 동독의 모든 사업체와 국가기관은 은행에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다. 화폐통합과 통일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이다. 실제 1990년 7월의 연방은행보고서를 보면 당시 서독의 금융전문가들이 동독 금융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⁵ 그보다는 자본주의체제의 논리에 따라 동독 금융체계의 구조개혁 작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독의 일원적 금융체계가 서독의 이원화된 금융체계에 맞추어 구조개혁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뒤에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⁵ 부록 1 참조.

변혁기-통합으로의 길, 통일을 위한 구상

베를린 장벽의 붕괴 직후인 1989년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의 새로운 수반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만 해도 동독정부는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17일 한스 모드로우의 성명서를 보면 새로운 정부가 개혁을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⁶ 그 당시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약속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독일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통일 25주년을 기념하는 기민당의 당내 행사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1989년 12월 19일에 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날은 헬무트 콜 서독 수상이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 회담이 있었던 날이다.

쇼이블레의 회고록을 보면 쇼이블레 자신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이날 모임에서 한스 모드로우 정부에게 즉각적인 화폐경제공동체를 제안하라고 말

.....

⁶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 ‘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공동체’(문서번호 5).



했다고 한다. 그것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이주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동원하더라도 대량이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동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명을 독일통일의 길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고 쇼이블레는 적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비록 사회주의통합당 지배체제의 후계자였고, 이들이 그런 정책의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았다고 쓰고 있다. 자유선거가 치러지면 이들이 지배세력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그는 모드로우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동독의 상황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오히려 구지배세력을 포함한 모든 동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고 믿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로우 정부에 대한 서독정부의 제안도 그런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⁷

헬무트 콜 수상이 갖고 있던 이런 기본적인 시각은 11월 28일에 그가 서독 연방의회에서 열린 예산회의에서 발표한 ‘독일과 유럽 분단의 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수상 모드로우가 11월 17일에 발표한 정부성명에 응답하였다. 이날 콜 수상은 대동독 지원책과 그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보다 동독체제 내에서 먼저 인간적인 고통을 경감하고 정치적인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만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독 정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실현이 확실해진다면

.....
⁷ 위의 책 p.21.

우리 쪽에서도 원조와 협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⁸ 나아가 모드로우 수상이 제안한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양국의 다양한 기관과 사회단체들 또한 계약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기를 촉구하였다.⁹

동독의 변혁과정을 서독이 조정·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지도부가 스스로 선택·결정하도록, 적어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는 헬무트 콜 수상의 관점에 관한 객관적 평가는 독일역사학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1989년 말, 1990년 초의 동독의 변혁상황을 보면 실제로 동독 지도부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동독 내에서 전개되는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1990년 1월 17일에 동독정부가 ‘동서독 선진우호협력협약(Vertrag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을 체결하여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의 구성을 제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독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보면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양쪽에서 동일한 인원이 참여하는 정치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양국의 수상이 위원회의 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정부와 의회에 정책을 제안, 추천하도록 하며, 동서독이 동시에 군비를 축소하고, 1990년 연내에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및 화폐연합을 실현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만 계약공동체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동독이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독이 지원해 주기

.....

⁸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문서번호 6).

⁹ 계약공동체는 일종의 국가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문서번호 6 참고).

¹⁰ 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티스(Seiters) 연방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문서번호 7).



를 요구하기도 하였다.¹¹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의 발표를 받고 난 서독정부는 하루 후인 1990년 1월 18일에 ‘동서독 선진우호협력협약’에 관한 서독정부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도 서독정부는 하루 전에 동독정부가 발표한 초안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가 존재함을 밝히고, 계약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제도, 노동 및 복지 분야에 공동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는 양국 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서독 간에 이미 존재하는 검문위원회, 교통위원회, 국경위원회와 같은 공동위원회들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하였다.¹²

1990년 초 동독주민, 특히 많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서독이주로 인해 동독 지도부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정부가 동독정부를 향한 방식은 인상적이다. 실제로 1990년 1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소련이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한스 모드로우가 1990년 2월 1일에 ‘하나된 조국, 독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독일통일 계획안을 사통당 상임위원회 의장단에 제출하였을 때에만 해도 그는 동독의 변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안은 1957-1958년에 동독에서 만들어진 (중립적) 독일 연방을 위한 계획에 기반을 둔 것으로, 동서독이 모두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제1단계에 양국이 경제연합, 화폐연합, 교통연합과 함께 연방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선린계약공동체를 구성하고, 제2단계에는 양국 공동의 의회, 행정부를 포함한 공동 조직과 기관을 갖는 국가연합을 구성한 후 제3단계에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된

¹¹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협약-동독정부 초안(문서번호 14).

¹²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서독정부 초안(문서번호 15).

독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었다.¹³

이때에도 한스 모드로우의 동독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전히 동독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었다. 1992년 여름 그는 “동독이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달해 있었고 따라서 통일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지 않았는가?”라는 자유대 정치학과 교수들의 질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동독은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 당신도 쿠바나 북한의 존속에서 보지 않는가?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배반하고 팔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동독은 건재했을 것이다”¹⁴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본다면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배반해서 동독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동독주민들이 더욱 더 빠르고 본질적인 변혁을 원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당시 동서독의 장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지만 동독사회에서 전개되는 급격한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는 단계적인 통합을 염두에 둔 이러한 모든 논의들이 동독사회가 거의 통제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동서독 간의 빈부격차가 분명히 드러나자, 많은 수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서독에서도 노동시장과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동독의 전문인력이 대거 이주하면서 동독경제와 사회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주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벽이 무너지고 여행이 자유화된 상태에서 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동독을 취업과 수입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구축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뿐이었다.

.....

¹³ 모드로우의 계획-‘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문서번호 16).

¹⁴ 베를린 자유대학 오토-주어 연구소 1992년 여름 세미나에서 헬무트 바그너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러나 양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독일통일의 주역들과 실무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는 시간의 부족이었다. 이러한 시간적 압력 하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대두한 것이 화폐통합이었다.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와 결정

독일통일연표를 보면 독일에서 화폐통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의는 이미 1989년 말에 있었다. 사민당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급변하는 동독의 상황에 대처하고 무엇보다 거대한 이주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는 화폐통합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폐통합 방안을 먼저 구체적으로 이슈화한 쪽은 서독의 사민당 원내 재무대변인이었던 마테우스 마이어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1990년 1월 19일에 오토 에브네트와 동일한 시각에서 신속한 화폐통합만이 대량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기본입장이 조속한 화폐통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방재무부가 제시한 ‘동독경제의 회생을 위한 10개 방안’의 기본적인 골자도 조속한 화폐통합은 아니었다.¹⁵ 그리고 1990년 2월 8일까지도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경제 및 화폐통합에 관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었다.¹⁶

그런데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이 3단계 통합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990년 2월 7일에 연방정부는 내각회의에서 화폐통합을 조기에 실시하

.....
¹⁵ 10개항 프로그램(문서번호 13).

¹⁶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문서번호 25).



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2월 8일에는 헬무트 콜 수상과 연방정부의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공동으로 화폐통합을 조기에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하면서 사유재산의 경우 1:1, 그리고 나머지는 2:1의 비율로 교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제장관과 재무장관이 같은 날 서로 다른 방안의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연방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가 통일과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지 잘 보여준다. 경제·화폐통합 과정에서는 경제부가 아니라 연방재무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이유에 관해서 당시 수상청의 경제국장으로 독일통일 과정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연방경제부가 재무부만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회상한다. 1990년 1월 초까지만 해도 경제부와 재무부 어느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재무부가 신속하게 정책안을 제시한 반면에 경제부는 그 때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부가 통일과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⁷

실제 헬무트 콜 수상이 수상청의 실무진과 연방재무부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는 절대 동독 및 서독 간 어떠한 협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 미국, 유럽연합, 소비에트연방과의 외교정책에 관한 방안을 모색할 때에만 연방재무부의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만큼 테오 바이겔 장관이 이끄는 연방재무부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테오 바이겔은 서독정부를 구성한 연립내각에서 기민당과 자매당인 바이에른주의 기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그가 갖는 개인적인 비중도 중요하였다. 그것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콜 수상의 황태자로 불렸던 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¹⁷ 루데비히 자서전 Johannes Ludwig, Unternehmen Wiedervere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äre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p.43.

연방재무부 내에서는 호스트 쾰러¹⁸ 연방재무차관이 킬로 자라친 국장에게 1:1 교환율을 바탕으로 동독지역에 서독의 화폐를 도입하는 구상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¹⁹ 이 시기에는 이미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들도 함께 화폐통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폐교환비율에 관해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을 때이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도이치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도이치마르크에게 간다”라고 외치는 동독주민들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초 서독의 경제전문가들은 화폐공동체의 도입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은행 총재와 독일의 경제 5현으로 불리는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경우 1990년에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²⁰ 그들은 화폐통합은 동독이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를 통해 연방정부가 원하는 대량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제 5현은 나아가 1990년 2월 9일에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²¹:

“저희들은 조속한 화폐통합을 통해서 동독인들의 대거 이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수준이 곧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동독주민들에게 불어 넣어 그리하여 이들을 고향 땅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측이 이를 겨냥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즉각적인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

¹⁸ 호스트 쾰러는 2000년에 IMF 총재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¹⁹ 10개항 프로그램(문서번호 13).

²⁰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문서번호 19).

²¹ Brief des Sachverstaendigenrates vom 9. Februar 1990 an den Bundeskanzler: Zur Frage einer Waehrung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in>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472, pp.306-308.



를 쌓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이미 특별평가서에서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화폐통합과 경제개혁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연방정부의 성명서는 무리없는 화폐통합에의 길을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순서로 이 전환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절대 화폐통합부터 먼저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수십년 간의 부실경제로 말미암아 동독은 통화초과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필요 이상으로 높은 동독 마르크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그것이 화폐통합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독 경제체제의 유산을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활용가능 자본을 새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출한 특별평가서에서 우리는 초과통화의 해소방안으로 우선 동독의 국유재산을 예금자들에게 매각하여 이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서독 마르크의 도입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화폐통합과 더불어 생활수준 역시 서독과 균등해질 것이라는 그릇된 착각을 갖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단지 희망사항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소득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임금 및 연금 또한 대폭 인상될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실질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선결조건이 사전에 충족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화폐통합을 통해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단일통화는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동독주민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정부가 이를 쉽사리 거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명목임금은 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동독에서 산업입지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어렵게 되고, 서독으로부터 자본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 화폐통합이 동독에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동독통화의 안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급격한 투자증대란 실제 경제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동독의 가격구조체제가 왜곡되어 있으며 투자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화폐통합을 실시할 경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독의 입지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화폐통합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냉정한 현실이 도처에서 기세를 떨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주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경제 5현들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서독의 경제전문가들은 서독경제 제도를 동독에 도입하여 동독경제를 구조개혁하기 위해 단계적인 방안을 선호하였다. ‘경제 및 화폐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경제개혁이 완전히 실시되고 난 뒤, 동독 마르크가 국제시장에서 태환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통화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성급하게 화폐통합을 시행하면 서독의 안정된 통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었다.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이 구상한 3단계 경제 및 화폐통합 방안을 보면 경제부의 관료들도 경제전문가들과 시각을 공유한 것을 볼 수 있다.²² 하우스만을 비롯하여 단계적 통합 모델을 구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1992년 말까지 동독의 경제구조가 전환되고 국제시장으로 개방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때까지 동독이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서독 마르크에 대한 동독 마르크의 환율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하이너 플라스벡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독 경제학자 그룹 또한 화폐통합이 아닌 단계적인 경제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²³ 그 방안은 사회정책상 측면지원 하에서 가격형성의 자율화와 임금정책의 자율화 그리고 장기 투자시설 구입 시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방안의 특색은 갑작스런 화폐통합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구조전환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요소를 도입하여 동서 간의 생산성 격차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논지이다. 화폐통합을 먼저 추진하지 않고 동독정부의 통화주권을 유지해 주면 환율정책을 통해 국제경쟁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질경제의 발전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 도달하였을 때에 비로소 화폐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물론 이론적으로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난 동독정부가 단계적으로 주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한스 모드로우의 동독정부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92년에도 그는 고르바초프

²²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문서번호 25).

²³ Heiner Flassbeck u.a. Reform der Wirtschaftsordnung in der DDR und die Aufgaben der Bundesrepublik, in: DIW-Wirtschaftsbericht 1990년 6호.

가 배신했기 때문에 동독이 붕괴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과연 당장 서독 마르크를 갖게 해달라고 외치는 동독주민들의 요구를 어떤 정치가가 무시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단계적으로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통일 당시 화폐통합 논쟁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브레멘대학교 경제학자 루돌프 힉켈 교수는 199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단계적인 경제발전과 화폐통합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실시하였을 경우 통화정책상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동독 자체의 통화체제는 설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이미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동독 통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 동독 마르크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교환시킬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서독 간에 어느 정도 안정된 환율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결국 동독 마르크를 지닌 사람들이 안정성 높은 서독 마르크를 갖기 위해 대거 환전하는 사태를 가져왔을 것이다. 동독에서 벌어들인 동독 마르크는 즉시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서독의 연방은행은 동독 마르크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서독 마르크를 매각하여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서독 마르크의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서독의 안정도 위협받았을 것이다.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한 통화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단계방안의 일환으로서 동독 마르크는 서독 마르크에 비해 현저한 가치하락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가치하락은 취약한 동



독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독으로 수입되는 서방제품의 가격이 높아져서 당시 동독경제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던 투자제품 수입도 어려웠을 것이다. 주민들이 선망하던 서독의 소비제품은 저임금을 받는 동독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었을 것이다. 서독의 노동시장이 바로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임금 또한 계속 상승하였을 것이고 기업의 투자능력은 더욱 약화되었을 것이다. 막대한 잠재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계속 겪었을 것이다. 결국 단계적 통합방안은 오스트리아 모델이 아니라 급격한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폴란드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²⁴

히켈과 프리베는 나아가 단계적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독경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높은 은폐된 실업률을 감축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동반해야만 하며, 단계적으로 가격보조제도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조치를 과연 민주적으로 선출된 새로운 동독정부가 관철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본다. 오히려 이 개혁방안 자체가 과거지향적인 무리들의 거부와 반감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 독일정부가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채택하였다면 오히려 체제전환 과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만 했던 구조조정 및 적응과정이 지연되면서 구조보전대책으로 전락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 있게 평가한다.

실제로 헬무트 콜 수상은 1990년 2월 7일에 동독정부에 화폐공동체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고²⁵, 2월 9일에 경제 및 화폐 통합

²⁴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문서번호 20).

²⁵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문서번호 17).

설치를 위한 제안사항을 동독정부에 전달하였다. 콜 수상은 이때 사유재산,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독일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을 1:1, 모든 기타 자산에 대한 교환비율을 1:2로 약속하였다.

경제·화폐통합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단계적으로 구조를 변형시켰을 경우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전격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히켈은 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1990년 당시 독일정부가 선택한 신속한 화폐통합 외에 다른 무리 없는 대안은 없었냐는 질문에 당시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본다 고 답한다.

그러나 히켈교수가 전적으로 헬무트 콜의 화폐통합정책을 무조건 지지한 것은 아니다. 1990년 2월 초, 즉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는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콜 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다.²⁶ 그 이유는 콜 정부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독과의 화폐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실험의 장에 들어서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91년에 그는 콜 정부가 화폐통합의 결과를 무책임할 정도로 간과하였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정부가 장기적인 전략도 없이 임시미봉책 업무활동만 실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콜 정부가 화폐통합의 결정과 더불어 미리 예견했어야만 했던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헬무트 콜 정부가 실시한 전격적인 화폐통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재정의 민간자본으로의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규모의 이전지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이전지출의 규모를

.....

²⁶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문서번호 20).



절대적으로 과소평가했다고 그는 비판한다. 화폐통합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완전히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비용문제와 이와 관련된 재정분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의 파급효과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오히려 조기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을 독일통일을 망치는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시민당의 수상 후보 오스카 라퐁텐이 그중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다.

1990년 전반기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되면서 서독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통일을 경제적인 이득관계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1990년 초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에 경제전문가로 참가하였던 칼 쉴러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잘 대변된다.

“통일은 두 개의 대기업을 통합하여 결국에는 환상적인 이윤을 내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독일통일을 마르크와 페니히로만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독일통일의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물어야만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의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 않는다.”²⁷

.....

²⁷ Waigel, Theo/Schell, Manfred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Vom Mauerfall bis zum Kaukasus. Die deutsche Währungsunion. München 1994, p.10.

화폐교환비율

1990년 2월 9일 콜 수상이 화폐통합에 관한 서독 연방정부의 제안을 동독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조기 화폐통합이 가시화되었다. 그렇지만 동서독의 화폐를 어떤 비율로 통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9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적절한 화폐교환율에 대한 논의가 고조에 달했었다.

연방정부 내에서는 1990년 1월 말에 재무부의 차관 호스트 쾰러의 주도로 틸로 자라친 국장이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화폐통합 비율을 1:1로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선호되었다. 당시 연방수상청의 분위기를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1월 말, 2월 초로 돌아가 보자. 자라친이 제출한 문서를 통해 동독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동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하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동독의 임금과 생산성 모두가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하면 그 정도가 적절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다. ... 1월 30일에 열린 연방재무부의 회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동독의 경제와 재정문제에 관한 자라친의 분석을 근거로 이제부터는 동독과의 화폐통합에 관해 논의해야만 한다는 시각이 주도하게 되었다. 수상청의 경제담당인 나는 그것이 적



절한 시각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상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나의 보고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가 어느 순간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 2월 5일에 연방재무장관과 수상은 다음 날 동독에게 경제 및 화폐공동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헬무트 콜 수상이 이 시기에 사유재산,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독일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교환 비율을 1:1, 모든 기타 자산에 대한 교환비율을 1:2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힌 이유가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990년 3월 18일에 동독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자유총선거가 실시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독 내에서 사민당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59%), 사회주의통합당의 후신인 사회주의민주당이 12%, 그리고 기민당이 11%, Neues Forum이 4%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물론 한번의 여론조사만으로 유권자 전체의 동향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위성정당이었던 기민당보다는 새로이 구성된 사민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콜 수상은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의 시작을 발표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동독체제 내에서 위성정당의 역할을 했던 동독의 기독교민주당, 즉 기민당(CDU)을 선호하지 않았던 동독주민들의 분위기를 일거에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월 18일의 선거에서 기민당이 승리하고 기민당 당수였던 로타 드 메지에르가 총리로 선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과는 관계없이 199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독일의

.....

²⁸ 루데비히 자서전 Johannes Ludwig, Unternehmen Wiedervere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äre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p.44.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절한 화폐교환율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²⁹ 논의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면 화폐교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과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 그리고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이천지출문제 등이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교환비율을 콜 수상이 선호하는 것처럼 1:1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방은행과 다른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2 또는 1:4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1:1의 교환율로 동서독의 화폐를 통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였다. 1989년 11월 암시장에서의 동서독 화폐교환비율은 1:16이었고, 1990년 1월에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인들이 서독 마르크를 무제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율은 1:3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의 3년 간 동서독 간의 평균 환율은 서독의 환전시장에서 1:8, 동독의 외환거래소에서 1:6.7 정도였다.

동독의 외환시장

1990년 6월 30일까지 동독 내에서 유통되던 동독 마르크는 내국통화로서, 외국으로의 대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외화로 교환될 수도 없었다. 동독정부는 특히 여행자들에 대해 동독 마르크의 반입, 반출을 금하였다. 그러나 동독 밖에서는 서베를린과 서독에서 일찍부터 동독 마르크의 환전거래가 이루어졌다. 국경 개방 이후에 생긴 거리의 시장에서 특히 동독 마르크의 거래가 성행하였는데, 액수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었다.

.....

²⁹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문서번호 21).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문서번호 26).



동독 마르크 환전시장은 항상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장은 국경개방 전까지 동서독 여행자들이 가져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동독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이 시장에서 형성된 동서독 마르크의 교환율은 100 동독 마르크에 12.50 서독 마르크였다.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환전한 서독 마르크로 서독 또는 동독 내에서 특별허가를 받고 운영되던 상점 또는 암시장에서 서구제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하였다. 동독 마르크의 수요자는 주로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이었다. 이들은 동독정부가 규정한 강제 환전금액 이상의 동독 마르크를 유리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동독법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행위였다. 1987년에서 1989년까지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된 마르크화는 15 서독 마르크 대 100 동독 마르크의 비율로 거래되었다. 반면 동독정부는 최소 환전의무금액에 대해서는 1:1의 교환비율을 적용하도록 강요하였다.

1989년 11월 9일 장벽 개방과 더불어 동독 마르크의 거래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동독 내 예금구좌를 청산하고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과 서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려는 동독주민들로 인해 동독 마르크의 공급량이 급증해서 1989년 11월 중순까지 동독 마르크화는 100 동독 마르크 대 7 서독 마르크라는 덤핑시세를 보이기도 했다. 1990년 1월부터 불기 시작한 수요증대 현상은 동독 마르크 시세를 한동안 대폭 올려놓았다. 이때 동독 마르크의 매입자는 특정 동독 물품 또는 동독정부의 가격지원을 받는 물품들을 유리하게 구입하려는 서독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화폐통합설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투기성 매입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도입된 화폐통합 오용방지 규정은 이러한 투기성 동독 마르크 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들에게 1990년 1월부터 1:3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를 무제한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비공식 환전시장에도 암암리에 하한선이 형성되게 되었다.

환전시장에서의 환율이 화폐통합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정한 자유시장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일종의 암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전시장이라하면 대규모 외환시장의 일부에 속하고 이곳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유통 및 고정자산의 거래와 가격 및 금리추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동독 마르크는 외환시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동독의 국제교역은 주로 상호 간의 협정 및 청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독과의 물물교역은 청산단위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동독정부의 조치로 인해 현물 및 금융 자유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환율시세를 책정할 수 있는 기초토대가 없었다. 동독법이 허용하지 않는 현금 반입과 그로 인한 위험부담 그리고 동독의 물품생산과 용역사업 등의 부진으로 인하여 동독 마르크화의 외환가치는 실제 내수 구매력에 비행 장기간 과소평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ä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동독과 서독의 물가를 고려하여 화폐의 구매력을 근거로 환율을 산출한 연구결과들은 100 동독 마르크의 가치를 88 서독 마르크에서 132 서독 마르크 정도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의 문제는 동독과 서독의



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동독에서 시행된 가격보조금제도 때문에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화폐통합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발권은행인 연방은행이었다. 그런데 연방은행의 중앙은행위원회는 1990년 4월 2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³⁰.

“서독 마르크를 새 통화로 도입하자는 동독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제안과 관련하여, 연방은행은 서독정부로부터 국가조약의 일환으로서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화폐교환법 초안을 제시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독일 연방은행의 중앙은행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0년 3월 29일에 가진 회의에서 화폐교환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 이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였다. ...

연방은행 중앙은행자문위원회는 정부를 위한 추천방안을 작성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특히 유념하였다. 서독 마르크가 새 통화로 동독에 도입됨으로 해서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서독 마르크가 새로운 통화로 동독에 도입될 경우, 동독은 완전태환이 가능한 통화를 구비하게 되는데, 이로써 동독경제는 모든 산업국가들과 경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화폐교환 시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현 상황은 현실적인 환율시세에 입각한 교환율 책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동독 마르크 대비 서독 마르크의 공식 환율은 4.4:1 내지는 3:1 또는 2.4:1 등으로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1:1의 교환율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1:1 교환비율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될 경우 이것이 동독경제에

³⁰ 문서 중앙은행위원회 결정 참조. Vorschlaege des 독일 경제 1990년-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Zentralbankrats zu einem Umstellungsgesetz, in: Pressenotiz der Deutschen Bundesbank, 1990년 4월 2일.

안겨줄 부채와 비용의 과중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것이다. 동독 스스로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기업부채에 대한 교환비율은 2:1 내지는 2.5:1로 조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1:1로 교환비율이 책정될 경우 동독정부는 주택사업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도 결코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동독 금융기관들의 자산항목에 대해서는 2:1, 부채항목, 즉 예치금과 유통현금에 대해서는 1:1의 비율을 적용시킬 것 같으면, 국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500-1,000억 서독 마르크 상당규모의 차액보전청구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1:1 비율로 교환된 부채항목에 대한 이자를 현실 금리시세에 맞게끔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되게 된다. 동독정부의 부채 상태는 지금도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연방은행은 현금과 예치금에 대한 2:1 교환비율을 부담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1 동독 마르크의 현재 가치가 결코 1 서독 마르크가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금에 대해 2:1의 교환비율을 적용시킬 때 절약해서 모은 예금의 실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동독의 예금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방은행은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동독주민 1인당 최고 2,000 동독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4인 가족은 최고 8,000 마르크까지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동독주민들의 예금이 대부분 1:1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은행은 이런 예외규정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는 통화정책을 통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교환된 서독 마



르크에 대한 처분은 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연방은행은 동독의 금융기관들이 서독의 금융기관들처럼 동독주민들을 위한 장기 고금리 투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아가 동독정부가 국유재산을 주식화하여 일반예금자들에게 공개할 것도 제안하였다.

임금 및 연금 등에 대한 교환비율은 동독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가격 및 비용구조가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약 500억 동독 마르크 규모의 소비재에 대한 가격보조로 인해 발생한 기형적인 가격체제를 화폐교환 실시 전에 폐지시키고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상, 조절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 제안을 따를 경우 임금과 연금도 동시에 인상되어야만 한다. 만일 이렇게 인상된 임금을 1:1의 비율로 교환하도록 해 줄 경우,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동독의 경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임금 및 연금에 대해서도 2:1의 교환비율을 책정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그로 인해 현재의 임금이 절반으로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서독의 마르크가 도입되면 오히려 실질임금이 종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화폐교환 실시 이후의 임금에 관한 계약은 각 기업 및 지방단체들이 근로자 측과 직접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1:1로 책정되고, 왜곡된 가격구조가 정상화될 경우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가격인상과 임금인상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위험도 높다. 서독 마르크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은행으로서 이와 같은 악순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연방은행 중앙은행자문위원회의 결의사항

본 위원회는 동서독 국가의 정치적 통합의지에 따라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 마르크 통화권 확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1, 3, 6항들은 필수사항으로, 그리고 제2항은 추천사항으로서 국가통합규정으로 받드시 반영시키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제1항: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할 때 부채에 대해서는 2:1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2,000 서독 마르크까지 1:1로 교환하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한다. 교환된 서독 마르크에 대한 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제2항: 2,000 마르크 이상의 예금소지자에 대해서는 양측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들에게 신탁청재산과 사유화재산에 대한 지분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항: 국가조약은 동독 통화권 내에서 연방은행법 및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한다. 또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자문위원회 결정사항들이 동독에서 관철되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

제4항: 연방은행이 위의 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베를린에 1개의 한시적 행정기구와 동독 전 지역에 약 15개의 지점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5항: 동독에 금융기관법을 도입하여 서독 및 외국 신용기관들의 지점 설치를 보장하도록 한다. 의무금리규정 및 외환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한다.

제6항: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연방은행 소속 중앙은행자문위원회의 제안서에서도 서독 마르크의 안정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일과 같이 중요



한 민족적 과제에 부딪힌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정책, 특히 화폐 및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화폐의 안정성부터 생각하는 것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일 역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2013년의 인터뷰에서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독일인들에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발생하였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몽이 일종의 민족적 집단 기억으로 아직까지 강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³¹ 1920년대의 역사적 경험이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1990년 통일을 앞둔 독일에서 진행된 화폐통합에 대한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90년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1:1의 비율로 동서독의 화폐를 교환할 경우 연방은행 중앙은행자문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서독 마르크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었다.

그러나 연방은행과 경제전문가들이 선호한 2:1의 교환비율은 동독국민의 분노와 반대시위를 불러일으켰다. 동베를린 그리고 다수의 동독 도시에서 발생했던 시위의 구호는 “일대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다”였다. 동독국민들은 2:1의 교환율이 적용되면 무엇보다 자신의 실제임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였었다. 1988년 당시 동독의 평균적인 실제임금은 854 동독 마르크였고,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실제로 서독 근로자의 5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은 1:1 교환율을 마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으로 간주하고, 연방은행의 방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방은행이 2:1 비율로 화폐교환을 실시하기 전에 임금조정과 사회보장보험금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분노한 동독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1:1의 교환율을 요구하는

.....

³¹ 독일통일총서 4권 인터뷰 참조.

슬로건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총파업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동독 내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서독 연방정부의 노동부장관 노르베르트 블림(Norbert Blüm)은 3월 27일에 콜 총리에게 서신을 통해 ‘화폐교환 비율이 1:1 이하로 놓이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거부반응과 불안정한 정치적 연쇄반응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³² 그리고 1990년 3월 18일의 선거에서 승리한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동독 기민당이 보수연합의 제1정당이 되고 드 메지에르가 동독 2기 과도정부의 수상이 된 후에 화폐통합을 위한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드 메지에르 수상을 비롯한 동독정부는 시종일관 1:1 교환비율 요구 입장을 고수하였다.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 동독 사민당(SPD) 당수는 이러한 1:1 교환비율을 사민당 정치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1990년 4월 19일 정부성명에서 밝힌 1:1 화폐교환비율을 기본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약 1,900억 마르크에 달하는 개인 예금 총액을 1:1 비율로 교환하게 될 것을 감안해 볼 때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연방은행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통화과잉을 우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1 교환비율을 바탕으로 기업부채를 평가할 경우 채무원리금 상환 시 일반적 자본시장 금리를 예상해야 하는 수많은 기업의 재정적 파산을 두려워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급했던 것은 서독 내에서 연방정부와 연방은행 간에 내부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었다. 조기 화폐통합 논의 자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를 표명하고 그것이 매우 허황된 것이라고 비난하던 연방은행 총재 칼 오토 뵐은 콜 수상이 화폐통합을 결정하고 난 후 연방정부의 조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화폐통합 결정 그 자체는 연방정부

.....

³²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문서번호 26).



의 정치적 결정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방정부가 져야한다”고³³ 비난하였다.

1990년 5월 2일에 동독 및 서독 정부수반 간 협상을 통해 동서독이 체결할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도입에 관한 조약, 즉 제1차 국가조약의 최종안이 합의되었다.

.....
³³ Auszuege aus Presseartikel 12/9, p.1. 사실 서독의 연방법 13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통화정책상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연방은행장이 항상 참여해야 하지만, 환시세의 책정과 통화권 확장에 대한 결정은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화폐통합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독자권을 침해받았다고 비난할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문제는 오히려 화폐통합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은행에서 제안한 2:1의 화폐교환율도 관철시키지 못한 연방은행이 통일 이후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연방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국가적인 과제의 해결을 지원할지 아니면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화 긴축정책을 통해 타협 없는 물가안정을 추구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연방은행은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면서 독일통일 초기의 호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받았다.



성하면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의 마르크가 동독지역에 법정통화로 도입된다고 명시하였다. 동독주민의 임금과 봉급, 보조금 및 연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액 등 모든 flow를 1:1의 비율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독 마르크로 된 채권, 채무, 즉 모든 stock의 교환율은 원칙적으로 2:1로 책정하였다. 다만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예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 14세 이하 어린이는 1인당 2,000 마르크, 59세 이하는 4,000 마르크, 59세 초과 중장년의 경우 6,000 마르크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동독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의 예금은 2:1, 그 이후의 예금은 3:1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모든 화폐교환은 동독 내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서독의 마르크가 단일통화로 동독지역에 적용되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독일 연방은행 이사회가 내리기로 합의하였다.³⁵ 동독의 재무장관은 연방은행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독정부가 통화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며 동시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동독정부는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 연방은행과 사전협의해야만 하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 연방은행 총재가 함께 결정하게 되었다.

연방은행은 동독의 정부와 행정기관,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연방은행 이사회 직속 임시관리국을 설치하고 동독 내에 15개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이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은 동독정부가 제공하였고, 동독 내에서 연방은행은 준외교기관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았다.

동시에 동독정부는 연방은행의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독의 일원적 은행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여, 서독과 같은 이원적 은행구조

.....
³⁵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 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문서번호 49).

를 도입하고, 자유로운 금융자본시장을 형성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 도입에 관한 국가조약

제I장 기초(제1-9항): 1990년 7월 1일부터 독일 마르크(DM)는 공동화폐,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이 된다. 이전의 모든 동독 마르크(DDR-Mark) 관련 의무 및 요구사항들은 독일 마르크로 변경된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회시장경제가 도입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 이와 관련된 동독 헌법의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은 동독에서도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관청은 상호간 업무를 지원한다. 동독에는 자유, 사법상의 중재판정법이 도입된다. 노동재판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등한 재판소에서 결정권을 위임한다. 서독과 동독정부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제II장 화폐통합에 대한 규정(제10항): 연방은행은 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연방은행법 제12조). 동독 금융시장은 민간 경제 신용은행체제, 자유로운 금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엄격히 규제된 이자율체제를 도입한다. 봉급, 임금, 장학금, 연금, 임대료, 임차료 및 기타 지급수단은 1:1로 전환한다. 다른 모든 의무사항과 관련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2:1로 전환한다. 이는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계좌를 둔 사람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제III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제11-16항): 동독은 고정가격, 높은 고용률, 현대적인 작업장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1951년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했던 무역거래는 철폐되고 내독 규제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제거된다. 동독은 국제경제를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경제원조평의회 국가들과의 관계는 확대된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동독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IV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제17-25항):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은 국가 감독 하에 있는 자치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사업자와 고용인에 의해 반반씩 부담된다. 1991년 1월 1일까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형성된다. 보험의무 및 의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 등은 서독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때 특히 여성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고려된다. 동독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은 서독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병고 시의 보상지급 등 포함). 이전까지 획득한 연금 청구권 및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은 동독의 임금과 봉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제V장 국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규정(제26-34항) 제26항(재정정책): 동독의 국가 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동독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회 분야, 경제기업, 운수업, 독일 제국철도와 도이치포스트의 운영. 동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삭감: 예산 보조금의 철폐, 인건비의 삭감, 모든 지출내용의 검토 및 감사, 교육제도의 구조개선. 국유 재산의 구조개선 및 국가 예산상의 개선. 제27항(신용거래 및 채무):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차입한도는 1990년에 100억 DM에서 1991년에 140억 DM으로 제한된다.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1990년에 70억 DM과 1991년에 100억 DM의 차입한도가 적용된다. 제28항(서독의 재정 지급): 서독은 동독 국가 예산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20억 DM 그리고 1991년에 350억

DM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또한 동독 연금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7억 5,000만 DM 그리고 동독 실업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0억 DM, 1991년에는 30억 DM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1971년에 도입된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및 통관을 위해 지불하는 일괄 사용료는 더 이상 서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서독은 또한 여행자 외화기금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제29항(공공 서비스): 동독은 서독의 연방 공무원 및 사무직 직원에 관한 법(Bundspersonalvertretungsgesetz)을 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30항(관세 및 소비세): 동독은 단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조세법을 적용한다. 소비세의 제한규정은 철폐된다(담배 제외). 제31항(재산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세금제한선 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주권은 간섭받지 않는다. 사전 세금 공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매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일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자만 과세를 한다. 쌍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생활의 중심 정도 및 영업소의 위치에 따라 과세를 한다.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 상대방의 국내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제32항(정보교환): 서독과 동독은 세법과 독점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33항(이중과세): 재산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는 서독과 동독 재정장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제34항(재무행정의 구조): 동독은 서독 재무행정의 법에 상응하는 3단계 재무 행정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및 관세 행정청을 설립한다.

화폐통합의 후속조치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분명해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등장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다. 동독 최고인민회의와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도입하여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려고 하였다.³⁶ 동시에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하였던 동독헌법 12조가 폐지되고, 1990년 3월 1일에 설립된 신탁관리청 결의안을 대신하여 1990년 6월 17일에 신탁관리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화폐교환의 실시와 함께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주민을 위해 지급되었던 여행환기금제도가 폐지되었다.³⁷

동독인을 위한 여행환기금

동독주민들은 1989년 11월 9일 장벽의 개방과 함께 자유롭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여행비는 대부분 동독에서 1년에 한 번씩 1:1로 교환이 허용된 15 DM과 서독의 연방정부와

³⁶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문서번호 41).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문서번호 42).

³⁷ 동독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8).

지방단체가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인들에게 지불하는 환영비가 전 부였다. 환영비는 1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방문일 경우, 1인당 100 DM을 지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추가로 지원하였다. 연방정부는 12월 초 동독정부와 합의하여 서독을 방문하려는 동독주민들을 위한 여행환기금을 서독에 설치하였다.

1990년 1월 1일부터 여행환기금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서독을 방문하는 모든 동독인들에게 지급되던 환영비는 폐지되었다. 동시에 동독은 1989년 성탄절부터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에게 강제로 부과되었던 최소환전의무규정을 폐지하였다. 1990년 1월 2일부터는 서독인들이 1:1의 비율이 아니라 1:3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공식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환기금은 29억 서독 마르크를 넘어설 수 없도록 책정되었다. 그중 15억 서독 마르크는 서독 연방정부와 동독정부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고, 연방예산에서 1990년도 환영비로 책정되었던 14억 서독 마르크가 추가로 지급되었다. 여행환기금을 통해 동독주민들은 최고 200 서독 마르크까지 동서독의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었다. 이때 100 서독 마르크까지는 1:1의 비율로 나머지는 1:5의 비율로 교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차등교환비율의 산술적 평균치는 1:3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는 동독 마르크는 차후 동독 내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에 지출하기로 동서독 정부는 합의하였다.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이 실시되면서 여행환기금은 폐지되었다. 화폐통합 전까지 기금을 통해서 환전된 금액은 총 21억 7,000만 서독 마르크였다. 이 중 연방정부가 16억 1,000만 서독 마르크



크를, 동독정부가 5억 6,000만 서독 마르크를 부담하였다.

여행비 환전은 주로 1990년 1월과 2월 두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1:5 교환비율이 동독인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조정될 조짐이 보이자 100 마르크를 초과한 교환금액에 적용되던 1:5의 교환비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총 50억 3,000만 동독 마르크가 여행환기금으로 서독에 유입되었다. 이 중 42억 동독 마르크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동독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이 액수는 화폐경제사회공동체가 실현되기 이전에 완전히 지출되었다. 나머지는 서독 마르크로 교환하여 1990년 후반 기 동독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ä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나아가 서독의 연방은행은 1차 국가조약 10조 7항에 따라 동베를린에 임시관리소를 개설하고 동독중앙은행의 건물에 15개소의 지점을 설치하며 7월 1일에 실시될 화폐통합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하였다.

국가조약에 따라 1990년 7월 1일에 동독지역에 서독 마르크화가 단일통화화폐로 도입되는 절차는 실제로 연방은행에 의해 주도되었다. 화폐통합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연방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행은 화폐통합의 기술적인 처리문제와 금융정책상 최적의 선결조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수리학적으로 볼 때 엄청난 대작을 완성시켰다. 당시 연방은행은 화폐통합을 위해 소요될 250억 서독 마르크를 인쇄하기 위해 모든 지폐인쇄기와 주화제조기를 완전가동하였고, 비밀노선을 통해 동독지역의 15개 지점과 100여 개의 현금출납소로 운송되었다. 당시

1990년 6월 30일 밤에 현금운송을 담당하였던 연방은행의 한 간부는 인터뷰에서 현금을 운송하는 차량이 동서독의 국경을 넘었을 때부터 동독의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금운송차량이 국경에 도착하였을 때 동독경찰의 책임자가 텅 빈 고속도로를 가리키며 이 길이 모두 당신 것이니 달릴 수 있는 만큼 빨리 달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실제로 새로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³⁸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사실은 이 과정이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독의 인민군 해체 작업이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만큼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에 수반되었어야 할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많은 문제로 인해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화폐통합 가치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

³⁸ 헬무트 리트겐, 전 은행 현금통화국 국장. 2015년 7월 6일 인터뷰.

금융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방감사원의 평가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을 기념하는 2015년에도 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자주 언급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은행제도의 전환과정에서 서독 은행들의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역할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1995년 9월 27일에 연방감사원이 ‘구동독의 구채무청산과 동독-금융기관의 업무인수에 관한 보고서’(Bericht über die Abwicklung von Altkrediten der ehemali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ger DDR-Kreditinstitute)를 발표한 이후 이 문제는 학계와 언론 그리고 연방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여전히 기밀문건으로 처리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방의회의 논의와 이 문서를 인용한 다른 문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방감사원이 가장 비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동독의 금융제도를 개편한 후 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구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취한 정책이 국고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³⁹

금융제도의 개편과 구채무에 관련된 문제는 화폐통합과 신탁청 그리고

³⁹ 연방감사원이 작성한 이 문서는 시중은행의 사업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동독의 구채무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면서 이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문서번호 70).

통일비용 모두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화폐통합과 직접 관련될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조약에 이미 동독 금융제도의 개편과 연방은행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화폐통합의 일부로 다루기로 하였다.

앞에서 동독의 경제구조를 설명하면서 동독의 금융구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환이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금융구조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동독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자’ 또는 ‘청구권’과 같이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체제를 전환하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에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화폐통합 이후 금융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990년 7월 서독의 연방은행이 발표한 월레보고서는 부록으로 동독의 은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 1990년 4월에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가 추진한 은행구조의 개편작업 과정에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와 청구권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을 자본주의 금융체제에서의 부채와 청구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출의 제공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제공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제공되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동독의 금융구조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서독의 금융인들이 어떤 자세로 동독의 금융제도 개편에 임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의 은행제도

동독의 은행제도는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를 반영하였다.
1990년 3월 말까지 동독의 금융체제는 동독중앙은행과 그 지점 그



리고 소수의 특수금융기관으로 구성되었는데, 무역은행, 상업은행, 식품농업은행 등의 모든 금융기관 또한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이외에 저축금고, 농민상업금고를 포함하는 조합금고와 국민은행 등이 있었다. 이들 은행들은 동독중앙은행에 귀속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독중앙은행의 행정규제를 받았다.

국가통제 경제의 재정문제는 동독중앙은행에서 담당하였다. 1990년 4월 초에는 새로 신설된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이 이 분야의 사업을 동독중앙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 즉 동독기업 및 주택사업에 대한 대출과 기업 및 보험업체의 예치금은 동독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분리되었다. 따라서 독일신용은행의 자산란에는 종전의 콤비나트와 국영업체 그리고 국영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청구권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부채란에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소규모 예치금과 동독중앙은행에 대한 은행 간 예치금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의 재편과정에서 동독중앙은행에 의한 리파이낸스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독일신용은행이 인수받은 대출이 이양된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저축금고는 조합금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민들의 저축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다시 동독중앙은행으로 이전시키는 업무를 맡았다. 저축금고 분야에서도 자율적인 업무활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 대출을 제공한 것은 금융사업상 수익성이나 대부희망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수단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소규모의 대출이 제공되었으며, 특정인물에 대해서는 사적 건축융자금이 지불될 수도 있었다.

예치금 다음으로 중요한 동독중앙은행의 자금원은 특수금융 기관의 의무예치였다. 이들 기관은 서방국가들 또는 코메콘 회원국들과의 재정문제 청산을 주로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무역은행, 독일상업은행 그리고 대외무역업체들이 그런 기관들이다.

외국과의 지불 및 청산업무는 이들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기관을 통해 소요외화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밖의 다른 특수기관으로 식품 및 농업은행이 있었다. 이 은행은 농업생산조합 및 식품산업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농민 상업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였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ä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연방은행의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동독정부는 이미 1990년 초부터 금융구조의 개편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동독중앙은행을 개편하는 작업이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절한 법을 도입해야만 했다.⁴⁰ 특히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가 1990년 4월 추진한 금융제도개편은 화폐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 개편을 통해 동독에도 서독

.....

⁴⁰ Harry Möbis, Bekanntmachung über die Aufhebung von Rechts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Bankenwesens und der Versicherung, 1990.03.08). Bundesarchiv, DC 20/9849, Bd. 5.

⁴¹ 동독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문서번호 10).
동독중앙은행 개정법(문서번호 22).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문서번호 24).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문서번호 47).



과 같은 이원화된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독중앙은행은 명칭을 베를린중앙은행(Staatsbank Berlin)으로 바꾸고 서독의 연방은행과 같이 발권은행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⁴² 그리고 동독중앙은행에서 분리된 베를린국립은행(Berlin Staatsbank)과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이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간의 중개 업무를 맡게 되었다.⁴³ 나아가 식품농업은행의 후신으로 베를린협동조합은행이 공익법인으로 새로이 설립되었다. 그 외에 다른 은행들은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화폐통합이 실시되었을 때 이들 금융기관들이 대차대조표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은 2:1의 비율로 전환되어 이들 금융기관들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었다.⁴⁴ 그 결과 화폐통합 이후 동독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총 구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총 1,775억 마르크가 되었다. 이것은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표 2-1) 동독 금융기관들의 구채무 청구권

(단위: 십억 마르크)

금융기관	구채무 청구권 Altkreditforderungen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AG)	약 1,245억 마르크
독일대외무역은행(Deutsche Außenhandelsbank)	약 70억 마르크
베를린 협동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 Berlin)	약 175억 마르크
베를린시립은행(Berliner Staatsbank AG)	약 115억 마르크
독일상업은행(Deutsche Handelsbank AG)	약 65억 마르크
저축금고와 국민은행(Sparkassen und Volksbanken)	약 105억 마르크

출처_ 연방감사원 1990년 9월 27일 보고서

⁴² 베를린국립은행법(문서번호 43).

⁴³ 그와 함께 대차대조표상 동독중앙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독일신용은행과 베를린국립은행으로 넘겨졌다. 동독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항목은 일반신용기관들의 적립금이었다. 이 적립금은 일반신용기관들의 자산으로, 이들 기관이 동독중앙은행을 통해 기업에 제공한 대출을 의미한다.

⁴⁴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산에 관한법(DM-대차대조법)(문서번호 50).

화폐통합 과정에서 대출의 교환율은 2:1이었던 반면에 저축예치금의 일부가 연령에 따라 1:1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은행이 적어도 계산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상이한 교환율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화폐통합조약의 차액보전지출규정(Regelung von Ausgleichszahlungen)을 통해 보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⁴⁵ 1990년 7월 1일 이후 동독의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는 차액보전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차액보전청구권은 정부가 은행에 진 부채라고 할 수 있었다. 차액보전청구금액의 규모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화폐통합 당시 총 규모가 약 570억 마르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독정부는 1990년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에 5%의 이자율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의미에서의 이자와 달리 국가예산에 의해 지불되거나 또는 완전히 탕감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폐통합 이후 이 구채무 청구권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의미에서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1990년대 초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은 약 10%였다. 하루아침에 이처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구채무의 총액이 1992년에 100억 마르크 증가된 것이다.

동독중앙은행과 저축금고 그리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동독의 은행들은 모두 화폐통합 이후 서독의 은행에 매각되었다. 베를린중앙은행(Staatsbank Berlin)으로 개칭된 동독중앙은행(Staatsbank)의 자산은 1994년 10월 1일에 신용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 인계되었다.⁴⁶ 저축금고의 전환은 연방정부와 신탁관리청의 관여 없이 진행되었다.

저축금고는 18세기부터 독일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일반 시민을 위한 금

.....

⁴⁵ 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51).

⁴⁶ 1990년 6월 29일에 도입된 베를린국립은행법에는 기본자산의 규모가 2억 5,000만 DM이라고 쓰여 있다. 이 은행의 업무는 차액보전기금의 관리와 화폐통합 과정에서 동독중앙은행과 일반시중은행 간의 예치금과 리파이낸스의 관리 그리고 외국과의 여신관리로 규정되었다. 베를린 국립은행법(문서번호 43).



용제도였다. 그런 전통은 분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동서독의 지역 마을 단위에 저축금고가 세워졌었다. 그러나 동서독에서 상이한 저축금고 관리운영체계가 자리를 잡았었다. 서독의 저축금고들은 연방주를 단위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고, 동독의 저축금고는 국가계획경제의 한 단위로 동독중앙은행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화폐통합이 결정되었을 때 동독의 저축금고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서독의 저축금고 모델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0년 6월 29일에 동독 법률관보를 통해 서독 저축금고의 모델을 따라 동독 저축금고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관을 발표하였다.⁴⁷ 동독지역 저축금고의 조직과 관리를 위해 서독에서와 유사한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를 구성하면서 동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방주 단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 전역을 아우르는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를 구성하였다.⁴⁸

그 외 다른 동독의 은행들은 도이치뱅크, 드레스덴은행, 베를린은행, 바이에른주립은행, 독일협동조합은행, 서부독일주립은행(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BfG은행(Bank fuer Gemeinwirtschaft) 등 8개의 일부 신탁청에 의해 관리되다가 서독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 매각절차를 통해 서독의 금융기관들은 동독의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구채무’, 즉 대출금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구채무’ 대출의 가치가 매각대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독의 금융기관들이 동독기업들에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⁴⁷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문서번호 47).

⁴⁸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문서번호 24).

표 2-2) 서독은행에 의한 동독 금융기관 인수

동독체제 하의 은행	1990년 동독정부의 은행구조개편	서독은행	
독일중앙은행 (Staatsbank)	베를린중앙은행 (Staatsbank Berlin)	신용재건은행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독일신용은행 (Deutsche Kreditbank AG)	도이치뱅크 드레스덴은행	바이에른주립은행
	베를린시립은행 (Berliner Stadtbank AG)	베를린은행 (Berliner Bank)	
독일대외무역은행 (Deutsche Außenhandelsbank)		서부독일주립은행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농업식품경제은행 (Bank für Landwirtschaft und Nahrungs güterwirtschaft)	베를린협동조합은행 (Genossenschaftsbank Berlin)	독일협동조합은행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in Frankfurt a.M.)	
독일상업은행 (Deutsche Handelsbank AG)		BfG은행	
저축금고와 국민은행 (Sparkassen und Volksbanken)			

출처_ 연방감사원 1990년 9월 27일 보고서

그러나 실제로 서독의 금융기관들은 동독의 은행을 인수하면서 그 어떤 위험부담도 갖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상이한 화폐교환율로 인해 발생할 차액은 차액보전기금을 통해 보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독기업의 관리를 맡게 된 신탁관리청이 구채무의 상환도 보장하였을뿐만 아니라 구동독채무보상기금(Erblastentilgungsfond)을 통해 이자도 보장되었다. 서독 금융기관의 원리금은 1995년 한 해에만도 980억 마르크에 달했다. 그중에서 267억 마르크가 이자였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원금상환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출해야만 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연방감사원은 1995년의 보고서에서 바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은 만일 연방정부가 구채무 대출에 대한 청구권을 직접 인수해서 연방예산을 통해 상환했다라면 납세자들이 수십억 마르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채무에 의한 대출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은행들이 대출금에 시장금리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만 절약해도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만일 연방정부가 구채무를 직접 인수하였다면 시장금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구채무와 관련된 지출 비용을 더욱 감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감사관들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 대신에 구채무청산기금을 도입하여 연방예산법에 의해 통제받지 않은 그림자예산을 만들었고 납세자들에게는 구채무청구권과 동독은행 제도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신탁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적자를 모두 통일비용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연방감사원은 화폐통합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동독의 발권은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정해진 순간부터 동독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구채무 청구권을 전부 동독중앙은행으로 규합했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물론 화폐통합 이전에 이미 동독에 진출해 있던 서독의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였겠지만, 그것이 가능했다면 구채무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채무 청산을 아주 수월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방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동독은행구조의 재편과정에서 구채무를 시장경제적 은행체제로 전환하면서 최종수요자가 부담할 대출 비용의 폭발적 인상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화폐통합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구동독지역의 기업과 지방단체들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실제로 구동독지역을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부채문제를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비용으로 인한 국가예산에 주는 부담도 훨씬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감사원은 연방재무부와 신탁관리청이 동독의 은행을 서독 금융기관에 매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수십, 수백억 마르크의 세금을 낭비하였다고 비난한다. 연방감사원

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중앙은행의 후속기관을 제외한 동독의 일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독의 금융기관이 지불한 매각대금은 총 9억 마르크였다. 반면에 이들이 인수한 구채무 청구권은 총 430억 마르크에 달했다. 1990년 당시에는 시장이자율이 10%를 넘을 때였다. 결국 구채무 청구권을 통해서 받는 연간 이자만 해도 매각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연방감사원은 지적하였다. 나아가 서독의 도이치뱅크와 드레스덴은행이 독일신용은행과 합작회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위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방감사원은 보고하였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에는 서독의 금융기관에 의한 동독은행의 인수와 관련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그 몇 가지 매각사례를 정리해 보자.

베를린시립은행(Berliner Stadtbank AG)은 베를린은행(Berliner Bank AG)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은행은 4,900만 마르크를 매각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은행은 베를린시립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115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도 함께 인수하였다. 베를린은행은 인수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억 1,100만 마르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미리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기관이 베를린시립은행의 매각협상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막아 놓았다. 연방감사원은 이렇게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 자체를 비판하였다.

베를린협동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 Berlin-GBB)은 동독 농업식품경제은행의 후신으로 1990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협동조합은행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때 독일협동조합은행은 매각대금 1억 2,000만 마르크를 지불하고 구채무 청구권 175억 마르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연방감사원은 이 매각대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독일협동조합은행이 베를린협동조합은행을 인수하면서 구채무 청구권까지 함께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구채무 청구권



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각대금의 몇 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구채무 청구권의 인수가 매각대금에 반영되었어야만 했다”고 비판하였다. 인수자가 이 방식으로 어떤 위험부담도 갖지 않은 채 채무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았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도 얻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사항이 동독은행의 인수과정에서는 간과된 것이다.

독일대외무역은행(Deutsche Außenhandelsbank AG-DABA)은 1990년 5월에 서독의 서부독일주립은행(Westdeutschen Landesbank Girozentrale)과 합작으로 ‘독일산업상업은행’(Deutsche Industrie und Handelsbank)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1년 1월 9일에 연방재무부와 독일대외무역은행 그리고 서부독일주립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부독일주립은행이 ‘구채무’를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업무협약에는 서부독일주립은행에게 1993년에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부독일주립은행은 1994년에 4억 3,000만 마르크의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독일대외무역은행을 인수하였다. 그와 동시에 70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독일상업은행(Deutsche Handelsbank)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매각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은행의 지분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동독중앙은행이 이 은행의 지분을 64% 보유하고, 30%는 5개의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6%는 독일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었다. 5개의 국영기업이 1990년에 신탁관리청의 관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지분도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중 독일중앙은행의 지분이 가장 먼저 BfG은행에 매각되었다. 이를 위해 BfG은행은 2억 2,500만 2,800 DM의 매각대금을 지불하였다. 그 대신에 65억의 구채무 대출금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그리고 신탁관리청과 독일보험공단의 지분도 BfG은행에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불된 매각금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AG)은 1990년 6월 26일에 서독의 드레스덴은행과 그리고 1990년 7월 2일에는 서독의 도이치뱅크와 각각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은 합작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구채무 청구권을 관리하게 하고, 드레스덴신용은행회사(Dresdner Bank Kreditbank AG)에 360억 마르크 그리고 도이치뱅크신용은행회사(Deutsche Bank Kreditbank AG)에 890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그리고 관리비용으로 도이치뱅크에 2억 9,700만 마르크, 드레스덴은행에 1억 2,500만 마르크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연방감사원은 이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은 1991년 11월에 협력계약을 해지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합작회사의 주식은 1991년 3월에 드레스덴은행에 3억 1,000만 마르크 그리고 1990년 12월에 도이치뱅크에 1억 1,300만 마르크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독일신용은행은 구채무 청구권의 관리비용으로 이들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로 이미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드레스덴은행과 도이치뱅크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드레스덴은행과 도이치뱅크는 독일신용은행과 인수협상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연방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연방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서독의 금융기관들이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구채무 청구권을 인수했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구채무의 청산은 연방정부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독의 은행들은 구채무상환기금(Erblastentilgungsfond)을 통해 이자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구채무 청산권이 차액보장의 형태로 전환



된 후에 신탁관리청과 채무청산기금을 통해서 이중으로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동일한 청구권에 대해서 세 번씩 이자를 지급받는 기관도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신탁관리청을 통해 구채무 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마르크가 이중으로 지불되었다고 연방감사원은 지적하였다.⁴⁹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은행의 내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밀문서로 처리되었지만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되었고 슈피겔지가 그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문서 자체는 기밀이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방의회의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연방의회의 사민당에서 제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연방재무부는 동독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만 했다. 사민당 질의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전체 납세자에게 막중한 부담을 전가한 서독 금융기관에 의한 동독은행의 인수과정의 문제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⁵⁰

이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1990년 당시 연방정부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화폐통합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지역에 신속하게 서독의 마르크를 도입하여 동독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동독주민 중에서 서독 마르크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전

⁴⁹ 서독의 은행들이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채무청산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묻는 사민당 오토 쉴리 의원의 질문에 유르겐 슈타르크 연방재무차관은 총 120억 마르크라고 답하였다. 연방의회 속기록 Deutscher Bundestag, 13. Wahlperiode, Stenographisches Protokoll der 7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29.11.1995, p.6396.

⁵⁰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문서번호 70).

혀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동독의 구채무가 실질적인 부채로 전환되는 과정에 분명히 일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는 가능하면 서독의 금융기관이 화폐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채무 청구권이라는 선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차관 유르겐 슈타르크의 답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에서 슈타르크 차관은 통일 이전에 이미 서독 금융기관과 동독은행 간에 협상이 있었고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 협상에 연방정부, 서독은행 그리고 동독 지도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1990년 7월 1일에 있을 화폐통합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동독의 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독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사민당의원 페터 콘라디의 질문에 그는 7월 1일에 제대로 작동하는 은행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독은행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하였다. 그는 서독의 은행들이 신연방지역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 슈타르크 차관의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의 금융기관들은 헐값에 인수한 동독은행들의 건물에 자신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그것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역지였다. 더욱이 그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았다. 슈타르크 차관의 답변을 들은 사민당의 프리트헬름 울리우스 보이허 의원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차관님, 그러면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의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동독은행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약정신에 입각한 예산정책의 기본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⁵¹

.....

⁵¹ Deutscher Bundestag, 13. Wahlperiode, Stenographisches Protokoll der 7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S.6394.

화폐통합 분석이 주는 시사점

동독과 서독이 형식적으로 통일되기 이전에 화폐통합이 진행되면서 큰 사고 없이 화폐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독일의 화폐통합이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위대한 성공작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은 신속하게 치밀한 로지스틱의 성과였고, 통일과정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된 인민군 해체와 연방군으로의 통합과정에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은 단순한 화폐교환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화폐교환이 실질적으로 은행구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지 현금과 현금을 바꾸는 교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양의 현금수송차량이 동독 전역으로 돈을 운반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 과정에서 화폐통합에 관한 대부분의 분석들이 화폐교환율의 결정과 그것이 준 경제적 영향에 관해 포커스가 집중되었었다.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연방정부와 서독은행들 간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995년 연방감사원의 분석을 소개한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연방정부, 특히 수상청의 반응이다. 구동독 재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총괄하였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2013년의 인터뷰

에서 서독의 기업들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에 두고도 자기 회사의 이윤만 챙기느라 동독지역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었다. 그런데 화폐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은행들이 보여준 것은 투자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천박한 자본가들과 같은 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테비히는 2015년에 발표한 자서전에서는 서독의 은행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 비난한 것만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은행들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통일비용을 지불하는 공공재정이 더욱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귄터 펠이 1992년에 분석한 것처럼 경제 및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서는 생산성, 실질임금, 총생산 그리고 투자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동시에 실업률은 1982년 이래 최저로 떨어져서 실업자의 수가 2백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 한편 동독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 생산량과 근로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제품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생산공장이 줄지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었다.⁵²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독일통일 총서 중 신탁청편에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실은 화폐통합으로 인해 동독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던 부채는 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고 그것 또한 동독경제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교환율 또는 화폐통합의 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를 보면 그 어느 쪽도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조기 화폐통합을 주장하는 의견도 그리고 단계적 통합을 주장한 의견도 모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

.....

⁵² 독일경제 1990-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문서번호 52).



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환비율의 경우에도 1:1로 하거나 1:4로 하거나 모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통합과 같이 경제·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영역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결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가 1990년 7월 1일에 화폐통합을 실현하고자 한 배경에 선거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서독은행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 문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경로의존성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 총선거를 염두에 두어야만 했던 콜 수상이 화폐통합 과정에서 서독은행들의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연방감사원이 1995년에 제시했던 대안, 즉 동독의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던 채무 청구권을 동독중앙은행으로 모아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후에는 연방정부, 즉 국가가 모든 채무를 상환했다라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이념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주도적인 이념으로 작동하던 1990년대 초 독일에서는 연방감사원이 제안한 것이 대안이 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경우 정치적인 이념과 관계없이 연방감사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통일과정에서 국가적인 과제를 전체의 과제로 모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표 2-3) 동서독 화폐통합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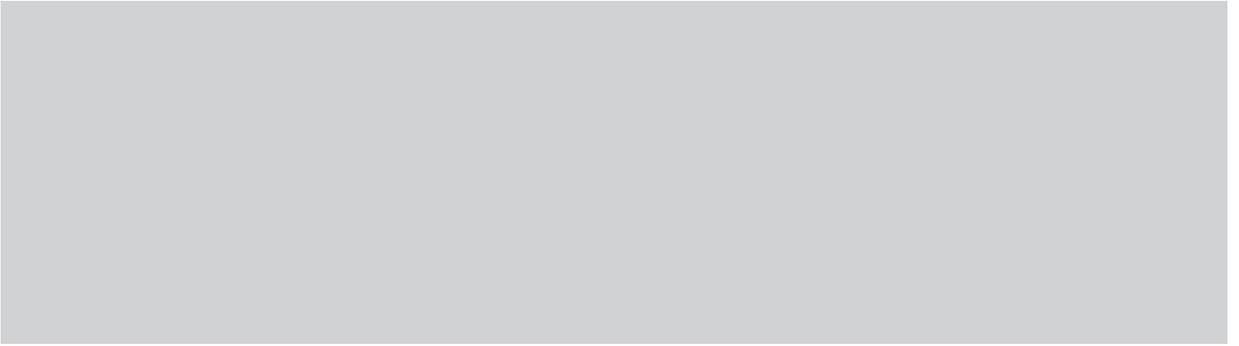
1989년 11월 9일	동독 여행자유화 발표와 동시에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11월 13일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내각 구성 위임
1989년 11월 17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동서독의 계약 공동체 성립의향을 표명하는 정 부성명서 발표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 수상이 연방의회에서 동독의 변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로운 유럽공동체의 틀 내에서 독일인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통일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는 ‘10개 조항 프로그램’ 발표
1989년 12월 17일	동독 정부사절단이 연방재무부에 최초로 자금지원을 의뢰
1990년 1월 초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 잉그리트 마테우스-마이어, 1989년 12월 15일 에 오토 에브네트가 사민당 내부회의에서 제시한 신속한 화폐 및 경제통 합 계획을 바탕으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5:1로 교환 제안
1990년 1월 15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은 즉각적인 화폐통합에 반대하며 ‘동독경제 의 회생을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통화개혁은 동독의 혼돈만 불러일 으키므로 우선 동서독 공동통화지역을 먼저 구축한 다음 단일통화의 도입 필요, 이를 위해서는 동독의 물가보조금 폐지와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1990년 1월 19일	잉그리트 마테우스 마이어 사민당 의원 ‘디 짜이트지’에 화폐통합 이외에 동독국민들의 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글 기고
1990년 1월 19일	바이겔 장관 ‘인위적으로 접목’된 동독과의 화폐통합은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간주, 조속한 화폐통합 반대-‘우리의 통화가 약해지면 동 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유럽의 화폐통합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할 것’
1990년 1월 24일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 자체개혁방안 제시. 동서독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 는 가운데 1992년까지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 가능하도록 하 며, 가격자율화의 단계적 실시 제안
1990년 1월 24일	한스 디트마이어 차기 연방은행장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성급한 양독 화폐 통합 경고 “문제는 동독 자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가려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태환화폐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유동적인 환율가를 조성할 수 있느냐이다. 바로 이러한 전제조 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1월 26일	연방재무부차관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는 담당 서기였던 티로 자라친 (Thilo Sarrazin)에게 경제 및 화폐통합의 콘셉트를 구상할 것을 지시했다.
1990년 1월 30일	장관, 차관 및 국장급이 참석한 연방재무부 비공개 회의
1990년 1월 30일	연방재무부에서 동독 경제통합 및 화폐통합의 제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 담당
1990년 2월 2일	헬무트 콜(Helmut Kohl, CDU) 서독 총리와 모드로우(Modrow) 동독 총리 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회담했다. 모드로우 총리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올해 중반까지만 버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콜 총리는 100-150억 동독 마르크를 지원해달라는 모드로우 총리의 요청을 거절
1990년 2월 5일	콜 수상과 바이겔 재무장관 동독정부에 경제 및 화폐공동체 성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로 결정
1990년 2월 6일	콜 수상 화폐공동체의 성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동독정부에 전달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



1990년 2월 7일	연방정부에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발족을 결정. 연방재무부에 화폐통합 분야의 의사결정권을 위임
1990년 2월 7일	연방재무부에서 통일 관련 지출을 위해 69억 독일 마르크(DM)의 추가 예산을 산정
1990년 2월 7일	독일연방은행 총재 칼 오토 뢰hl(Karl Pöhl)은 1:4 교환비율의 화폐통합을 제안
1990년 2월 8일	콜 총리와 테오 바이겔(Theo Waigel) 연방재무부장관은 자라친과 쾰러 차관이 제시한 사유재산의 경우 1:1,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경우 1:2 교환 비율 선호 의사표시
1990년 2월 9일	아직 분단된 동독과 서독의 공동 경제 및 화폐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제안서를 동독정부에 전달
1990년 2월 9일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조사·평가하는 경제 5현, 즉 경제전문자문위원회에서 수상에게 조속한 화폐통합의 도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
1990년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에서 소련이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 전달
1990년 2월 11일	연초부터 총 74,421명의 이주민이 발생. 매일 약 2,000명이 추가
1990년 2월 13일	동독 총리 150억 독일 마르크(DM)의 긴급 원조를 요청
1990년 2월 15일	연방재무부 지도하에 동독의 현재 경제상황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잠재적인 통일비용을 책정하기 위한 작업 기초로 신뢰할 수 있는 동독 재정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1990년 2월 15일	콜 수상은 경제 및 화폐통합을 정부 성명을 통해 발표
1990년 3월 9일	연방재무부의 참여 하에 ‘2+4’ 대화가 도입
1990년 3월 13일	콜 수상과 모드라우 총리에 의해 발족된 장관급 전문위원회에서 서독과 동독의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
1990년 3월 13일	연방재무부에서 소련군 철수를 위한 자금조달 비용을 산출하라는 지시
1990년 3월 14일	연방재무부 산하 전문가 그룹에서 최초의 ‘사회통합에 근거한 화폐통합 및 경제 공동체’ 도입에 관한 중간보고를 통과
1990년 3월 26일	독일연방은행 티트마이어(Tietmeyer) 총재는 총리로부터 화폐통합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음
1990년 3월 27일	블림(Blüm) 노동부장관은 전문위원회와 연방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 교환비율을 촉구
1990년 3월 28일	콜 수상은 연방재무부 실무팀에 화폐통합 실천을 위한 초안을 5월 6일 지방선거 때까지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1990년 3월 29일	1945-1949년 사이의 사유재산 문제에 관한 규명은 독일통일 달성을 위한 협상에서 일단 제외되었다.
1990년 3월 30일	중앙은행위원회는 2:1 교환비율에 찬성했다.
1990년 3월 30일	3월 18일 인민의회선거 후 기민당(CDU)과 사민당(SPD) 정당 간의 연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 4월 7일	콜 총리는 1990년 7월 1일까지 독일 마르크의 도입을 약속했다. 교환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990년 4월 10일	새로 선출된 동독 최고인민회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될 정당들이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의 연방가입이라는 공동목표로 ‘독일을 위한 연맹’ 연정협정 체결

1990년 4월 12일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위한 연맹’이 1:1 교환비율을 요구했다.
1990년 4월 14일	연방은행은 동독정부의 1:1 교환비율의 도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제안
1990년 4월 30일	콜 수상의 압력에 의해 전반적으로 1:1의 교환비율에 합의했다.
1990년 5월 15일	연방내각에서 1990년 연 내에 전독일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 연방내무부에서 연방재무부의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지도권을 위임받는다. 연방내독부는 배제
1990년 5월16일	1,150억 서독 마르크(DM)의 독일통일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1990년 7월 1일	경제화폐사회공동체조약 발효
1990년 7월 6일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내무부장관의 지도하에 통일조약을 위한 최초 협상이 진행되었다.
1990년 8월 22일	동독 국민회의 집회가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한 동독의 연방가입에 관한 의사일정으로 소집되었다. 8월 23일 새벽 2시 47분에 363명의 참석 의원들이 294개 찬성표로 동독의 연방가입을 결의했다. 반대 62표, 기권 7표, 불참 37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년 6월 24일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초대 서독 연방회의장)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1948, Nr. 12, S. 59 f.
2	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베를린협정)	1951년 9월 26일	독일은행, 동독정부 내무고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3	내무고역의 신용한도	1975년 2월 20일	연방정부 내무성 바이히트 국장	Bundesarchiv B 288/426
4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년 11월 6일	Dr. Wilms, 연방내무관계부 장관(BMB) Dr. Priesnitz, 연방내무관계부 대표(BMB)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f)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Dr. Bertele, 상인대표국 대표(Stäv) Dr. Duisberg(고위 당직자)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뒤스부르크 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1월 6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ch,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5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공동체’	1989년 11월 17일	동독 각료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 (Hans Modrow)	1989년 11월 18/19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6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 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 (Bundeskanzler)	한스 위르겐 쿤스투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통 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 일 발채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	루데비히(Ludewig) 교장이 자이티스(Seiters) 연방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2월 13일	연방수상청	한스 위르겐 퀴스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체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8	동독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중앙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bet ag 29.12.1989
9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bet ag 29.12.1989
10	동독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물가관리부	DDR-Gesetzblatt 1989 I/26, 276
11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년	연방재무부	연방재무부, 1990년(BMF, 1990)
12	동독의 화폐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년 1월 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티스, 경제부차관 폰 뷰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사회부차관 테트 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듀이스부르크 국 장, 연방은행 부총재 솔레징거, 드레스덴은행 이사회 대변인 쾰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외 다수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13	10개항 프로그램	1990년 1월 12일	틸로 자라친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 지, p.174-183
14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협약- 동독정부 초안	1990년 1월 17일	동독정부, 서독정부	한스 위르겐 퀴스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체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16	모드로우의 계획-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우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17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연방수상청/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연방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 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ums)
18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35014 Ge 33 Band 1
19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	1990년 2월 14일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위원장 한스 슈나이더, 연방수상 헬무트 콜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20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 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1990년 2월 17일	브레멘대학 교수 루돌프 히켈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21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연방수상청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	동독중앙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동독 국가평의회	DDR-Gesetzblatt 1990 I/16, 125
23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년 3월 9일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 - H 1360/8 - 1/90
24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Horst Kaminsky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NN, S. 233-236, Ausgabebeg 25.04.1990
25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	1990년 3월 21일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수상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26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화폐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연방 노동복지부장관 노베르트 블림(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한스 위르겐 퀴스투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취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27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년 4월 3일	연방수상실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28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년 4월 20일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구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차관 오브 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29	경제회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 터스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0	동서독 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의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표명-동독정부에게 제시	1990년 4월 28일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31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연맹 (Europäische Gemeinschaft)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쪽, 제9항, 1998년 6월 9일에 제정된 법 (BGBl.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 (BGBl. I S. 1242))
32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표명 제안	1990년 5월 23일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Vorsitzende Bergmann-Pohl, Ausschuss Deutsche Einheit der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 der DDR, Drucksache 24 a
33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부록: 동독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 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DM 개시 대처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리우제 창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Bundesarchiv, Barch/DA 1/17490
34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금 회담	1990년 5월 28일	연방수상청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35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입장	1990년 6월 16일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퀴비츠프스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6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켈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7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38	소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조치	1990년 6월 27일	연방재무부	Bundesarchiv, BArch/BK, 01 (212)-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3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betag 09.07.1990
40	대외무역과 자본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Ministera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Gesetzblatt der DDR, 41/60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1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betag 04.07.1990
42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betag 04.07.1990
43	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동독인민회의	DDR-Gesetzblatt 38, 504
44	서방국기와 서독의 피트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동독 내각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betag 20.07.1990
45	독일통일 실현 조약(동일 조약)에 관한 제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Günther Krause) 정부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 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 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무부, 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장부 시장실(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바이에른(Bayern)주, 함부르크(Hamburg)시,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베를린(Berlin)시, 유럽 공동체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월 발체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6	독일통일 실험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합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권터 크라우제 정무차 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 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 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더스 연방 총리실 비서 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 부, 내국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 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템베르크주, 니더작 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위원회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체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 1331.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48	어음에 대한 이종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49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 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평권을 연방금융감독 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년 9월 4일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연방은행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산에 관한 법 (DM-대처대조법)	1990년 9월 23일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51	화폐통화 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년 10월 29일	연방신용관리국, 독일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켈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52	독일경제 1990-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1991년 1월 1일	Günter Pehl(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brary.fes.de/gmh/main/pdf-files/gmh/1991/1991-01-a-026.pdf
53	화폐경제사회공체체의 도입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	1991년 1월 2일	연방회의,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켈	Bundesrat, Drucksache 3/91
54	마르크 도입과 관련한 대처대조법의 개정 발표	1991년 4월 18일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켈, 신탁청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5	재산법 개정안	1991년 4월 18일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경제장관 헬무트 하우스만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betag 26.04.1991
56	동독기업의 인수-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년 4월 30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57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민은행의 인수	1992년 1월 6일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iegel/pdf/13679257
58	헤센-튀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3월 10일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HessGVBl. I S. 190, ThürGVBl.S. 291
59	1991년도 연방은행 사업보고서	1992년 4월 2일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
60	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12월 17일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61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연방의회, 연방내무부차관 비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62	사회시설의 구매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년 6월 3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Linke Liste)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3	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년 6월 23일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betag 26.06.1993 (Ar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 Gesetz zur Umset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64	동서독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규정	1993년 8월 24일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betag 04.09.1993
65	화폐 전환 이후 독일의 화폐와 통화	1994년	라인하르트 폴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PDS)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66	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년 1월 20일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7	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년 3월 28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68	협동조합의 매각	1995년 10월 13일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hä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SPD)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69	신연방주의 구채무 청산에 관한 연방감사원의 입장에 관하여	1995년 11월 10일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hä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Wieland Sorge(SPD); Bundesrechnungshof; Deutscher Bundesta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70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	1995년 11월 29일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Deutscher Bundestag-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71	통일의 경제적 비용	1996년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189-200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71)

문서
번호 1

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초대 서독 연방의회의장)

내용_

이 문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에서 미국점령지역과 영국점령지역에 설치된 공동경제위원회가 1948년에 도입한 기본지침법이다. 이 법의 도입을 통해 미국과 영국은 이후 서독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구축할 기본틀을 만들었다. 이 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위원회의 행정책임자는 루드비히 에어하르트였다. 에어하르트는 나중에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장관 그리고 수상을 역임한 사람이다. 1948년에 도입된 법은 1년 간 유효하였고 1949년에 새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새 법 또한 1년 간 유효하였다. 이 법을 통해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가격규제가 해제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 스스로 가격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고 전후 독일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유통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주식과 주요 자원은 가격규제 해제에서 제외되었다. 독점과 같은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었다.

출처_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1948, Nr. 12, S. 59 f.



문서
번호 2

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베를린협정)
1951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은행, 동독정부 내독교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협정으로 불리는 동독과 서독 간의 물자교류에 관한 협약문이다. 이 협정을 통해 서방연합군이 점령했던 지역과 소련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건입된 서독과 동독 간의 교역이 시간적 제한없이 허용되었다.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의 문안은 독일연방주의 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사용되는 지역과 독일조폐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통용되는 지역으로 명칭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서로 교역할 물자, 서비스와 그 가치와 그것을 정산하는 단위(서독과 동독의 화폐를 1:1의 비율로 교환), 그리고 정산하는 방법(각 지역의 은행에 설치된 계좌에 지불) 등이 규정되었다. 이 계좌는 이자가 지불되지 않았고 서로 합의된 규모 내에서 적자를 내는 것도 허용되었다(신용한도, 독일통일 총서 문서번호 3 참조). 1951년 베를린협정이 체결될 당시 적자 허용한도는 삼천만 마르크였다. 서독이 동독으로 수출한 물자는 주로 철강제품과 기계, 비료 그리고 생선이었고 동독은 주로 설탕과 사료와 같은 농산품, 석탄과 정유제품을 수출하였다.

출처_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독성, 바이히트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내독성의 바이히트 국장이 연방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내독교역과 관련하여 신용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독교역에서 대금이 미지불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1949년에 이미 무이자로 신용대출할 수 있는 신용한도 규정들이 도입하였다. 이 규정이 1951년에 베를린협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문서번호 2 참조). 1951년에 신용한도는 3,000만 마르크였다. 이 신용한도는 실질적으로 동독만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용한도의 규모 또한 동독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내독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서독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독은 신용한도의 확대 요청을 항상 받아주었다. 1974년 12월 6일에는 신용한도를 1981년 12월 31일까지 8억 5,000만 마르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독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1960년에 도입된 부채 정산조항은 한번만 적용되었다. 그 결과 동독은 신용한도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이자 장기융자처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동독은 증액된 신용한도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1949년에 동독이 사용한 신용한도액이 1,600만 마르크였지만 1958년에 이미 1억 5,000만 마르크, 1975년에는 7억 9,000만 마르크에 달했다.

출처_ Bundesarchiv B 288/426

문서
번호 4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년 11월 6일

담당자 / 기관

- Dr. Wilms, 연방내독관계부 장관(BMB)
- Dr. Priesnitz, 연방내독관계부 대표(BMB)
-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i)
-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 Dr. Bertele, 상임대표국 대표(Stäv)
- Dr. Duisberg (고위 당직자)

내용

이 문서는 1989년 11월 6일 18시에 열린 독일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차관보 회의에 관한 기록이다. 논의된 문제는 동독정부로부터 서독정부에 전달된 경제개혁계획이었다. 동독정부는 경제부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지만 정치체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사회주의 통합당의 독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서독에 전달하였다. 서독에게는 동독의 경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치체제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차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서독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동독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동독의 정치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였다. 서독이 동독에 제공할 재정지원은 특히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뉘스부르크 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1월 6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eh,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담당자 / 기관_ 동독 각료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내용_

1989년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동독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위임 받았다. 동독의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한 모드로우는 정당들에게-독일사회주의통일당(이하 SED), 독일기독교민주당(이하 CDU), 독일민주노동당(이하 DBD), 독일자유민주당(이하 LDPD), 독일국민민주당(이하 NDPD)-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치 연합을 토대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스 모드로우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이 정부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회주의체제는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를 위해 경제적 성과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독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동독경제에 안정과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개혁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혁은 다양한 분야, 사실 동독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개혁; 경제적 주체 개개인의 자기 책임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 교육 개혁; 지금까지보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운 에너지 계획; 국가 서비스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행정 개혁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독의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동독은 개혁 이후에도 바르샤바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며 유럽안보보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비사회주의 경제권과는 상호 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이 구성된 정부는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평화유지, 군비축소, 경제, 과학기술, 환경보호, 교통, 우편, 통신, 문화, 관광 및 포괄적인 인도적 분야 등 사회, 정치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새로운 정부는 유엔과 그 산하 조직과의 건설적인 협력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출처_ 1989년 11월 18/19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문서
번호 6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Bundeskanzler)

내용_

1. 서독은 동독의 과도기에 외환기금(Devisenfonds)에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동독 쪽에서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동독여행 규정을 간소화하며 외환기금에 일정한 정도까지 자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2. 환경, 인프라, 통신 분야를 비롯한 동서독의 협력 지속 및 집중화
3. 서독은 동독의 정치, 경제적 변화라는 객관적인 전제 하에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4. 모드로우 총리가 발의한 계약공동체에 관한 제도 확립 확대
5. 서독은 동독 자유선거 이후 연방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지속적이고 공정한 유럽의 평화 질서를 고려해 내독관계를 전 유럽적 프로세스에 포함시킨다.
7.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경제가 유럽 공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무역협력조약의 체결을 지지한다.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의 맥락 속에서 고려될 것이다. 유럽 공동체는 민주주의적 동독과 기타 중-, 남동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 개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9. 군축과 군비 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0. 통일은 연방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쿠틀러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 경제국장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1989년 12월 12일에 열린 차관회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한 보고이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이후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예측하였다.

- 연방재무부의 대략적 산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동독의 재정지원 조치에 투입될 예산은 38억 도이치마르크에 달한다. 이 중 1990년에 투입될 예산은 17억 7,700만 마르크이다.
- 그 밖에 다음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독 무역 공급을 위한 보증금을 현 45억 도이치마르크에서 15억 도이치마르크를 늘린 60억 도이치마르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위해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과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의 신용 기금 20억 도이치마르크를 연방예산을 통해 추가로 늘린다; 동독에 대한 재정 신용 보증금 10~20억 도이치마르크를 인수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 헬무트 하우스만(Helmut Haussmann) 연방경제부 장관은 상기 재정 지원 조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동독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최종 결정은 1989년 12월 15일 차관급 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문서
번호 8

동독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중앙은행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동독 주민의 사적 외국여행을 위해 필요한 외환에 관해 내린 조치이다. 이 조치는 동독에 거주하는 동독주민뿐만 아니라 업무상 외국에 거주하는 동독국민 그리고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상호경제협력조약을 체결한 코메콘 회원국들의 화폐는 헝가리만 제외하고 모두 무제한으로 구입가능하다. 그를 위한 수수료는 구입액의 2%이며 동독중앙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환전할 수 있는 외화는 200 서독 마르크까지이다. 100서독 마르크까지는 동독 마르크와 1:1의 비율로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은 400% 즉 1:5의 비율로 계산해서 서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다. 14세 이하의 아동은 50 서독 마르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는 동독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이 위임한 기관, 그리고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위한 외환구입 사실은 동독주민은 신분증, 외국인은 체류허가 또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어린이 예방접종증명서에 기록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tag 29.12.1989

문서
번호 9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외국에 영주하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동독의 관청에 관한 규정이다. 그들은 3:1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교환할 수 있다(동독 마르크 3: 서독 마르크 1). 이들이 구입한 금액은 은행의 확인서를 발부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위의 기관에서 은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환전하거나 예치해 둘 수 있다. 동독을 떠나면서 사용하지 않은 동독의 화폐를 다시 동독으로 가지고 들어올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한다. 동독 마르크의 판매와 구입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문서 번호 10 동독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물가관리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중앙은행에 외환구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외환구좌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관, 사업체 모두 외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구좌는 도이치마르크로 운영된다. 이 구좌에서는 다른 외환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구좌 예치금에 대한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좌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구좌가 양도된다.

출처_ DDR-Gesetzblatt 1989 I/26, 276

문서 번호 11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년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내용_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 및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에 포함된 소유지(토지)의 평가 및 즉각적인 DM 개시 대차대조표의 재산평가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재무부에서 임시적인 평가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출처_ 연방재무부, 1990년(BMF, 1990)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터스, 경제부차관 폰 뷰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사회부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듀이스부르크 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징거, 드레스덴은행 이사회 대변인 뮐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외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와 경제 관련 부처 차관들이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관해 평가하기 위해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참가자들이 먼저 동독에서 시장경제적 개혁이 얼마나 진행되었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당시 개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고 덜 광범위하고 철저하지 못하게’ 그리고 “본질적이지 못하게 예외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0년 당시 연방정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는(그는 재무차관에서 물러난 후 세계은행 총재직을 역임하고 연방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런 원인은 동독 지도부가 ‘가능하면 적은 규모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서독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나아가 동독의 반체제그룹 중에서 경제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방식의 태도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보았다.

동독의 개혁 중에서도 특히 투자보호협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난받았다. 이 협정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지를 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투자한도가 전체 자본규모의 49%이며, 조인트벤처 사업의 경우 민간 파트너를 갖는 것이 금지된 것과 같은 점들이 그 예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동독 재무체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시장경제적 개혁 이후 기초식량에 대한 가격통제가 해제되면 재무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동독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문서
번호 1310개항 프로그램
1990년 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티로 자라친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당시 서독 연방정부 재무부의 국장으로 내독관계와 화폐경제통합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티로 자라친이 작성한 것으로 1994년에 연방재무장관이었던 테오 바이겔이 발표한 독일통일에 대한 회고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12일 동독 재무부 및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 해당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서독 연방재무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화폐, 재정 및 세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 내용이 동독 방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동독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세무법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동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독과 같은 세금 체제로 올바르게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지속적 개혁 과정에 대한 연관성 있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방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화폐통합 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 화폐통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0가지 항목의 단계적인 화폐통합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 가격 및 시장 개혁
2. 재정 및 세금 개혁
3. 대외무역교류 자유화 및 국가의 독점적 무역활동 폐지
4. 외환의 인위적 제한 폐지 및 화폐 태환성 확보
5. 현실적인 환율 규정의 도입
6.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의 개혁
7. 화폐 공급의 엄격한 관리
8. 자본 형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9. 동독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
10. 화폐통합

출처_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p.174-183

담당자 / 기관_ 동독정부, 서독정부

내용_

- 동독과 서독은 1972년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 협약과 헬싱키조약을 근거로 유럽 평화 질서 강화를 위한 계약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 상호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 자문위원회(Politische Konsultivkommission)를 설립한다. 위원회 대표는 동독 각료회의 의장과 서독 연방정부의 총리로 한다. 위원회는 양국의 의회와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결정한다.
- 동독과 서독의 부처 및 기타 기관들은 동서독의 정치 자문위원회와 정부를 자문해 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상호 침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양측은 군비축소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 경제 및 통화 연합을 구성하고, 인프라 확대를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한 합의는 1990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 서독은 동독의 유럽 공동체(EG) 회원국 가입신청을 지원한다.
- 본 협약은 (서)베를린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4대 강국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문서
번호 15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서독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내용_

서독정부와 동독정부는 상호 관계에 대한 8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경제적 차원(Ebene) 및 분야(Bereiche) 간 긴밀한 협력, 공동 기관의 설립
-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제도, 노동 및 복지제도 분야는 계약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 공동위원회의 설립: 경제관계강화위원회; 재정, 화폐, 세금위원회; 교통, 상호 우편 및 통신교환개선위원회, 환경보호위원회; 법제도위원회; 노동복지위원회; 문화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건축, 도시 건설, 주택사업위원회; 식품, 농업, 산림위원회; 언론위원회
-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위원회 구성
- 기존 위원회 유지: 검문위원회, 교통위원회, 국경위원회
- 공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내 양측 대표단의 지도부 혹은 대표자 선정
- 대표단의 대표들은 반 년 주기로 회동한다.
- (서)베를린 지역으로의 협약 확대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담당자 / 기관_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우

내용_

- 동독은 과거에도 이미 국가 간의 연방제에 근거한 통일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의 동독사회의 변혁은 그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좋은 기회로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 독일통일은 유럽연합과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서독은 모두 군사적, 정치적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 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고, 독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모드로우는 독일 문제를 세 단계에 걸쳐 해결하고자 한다. 제1단계: 국가연방제의 요소를 지닌 선린 계약 공동체와 경제, 화폐, 교통 부문의 통합. 제2단계: 공동 조직과 기관들(의회 위원회, 주정부 상원(Länderkammer), 공동 집행기구들)이 설치된 양 독일 국가의 연방체 구성. 제3단계: 단일화된 독일 국가는 공동 의회와 공동 정부+VII를 둔 연방(Föderation) 혹은 연합(Bund)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출처_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문서 번호 17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공동경제화폐구역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서독 연방정부는 동서독 공동의 화폐통합을 위한 제안이 독일통일로 향하는 명확한 신호로서 그것은 기본법(헌법)에 명시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협상에 나서는 서독정부의 입장이 11개 조항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_ 연방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ums)

문서 번호 18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차관 호스트 쾰러가 수상청과 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의 도입을 위한 제안’의 초안이다. 이 초안은 동독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화폐와 경제통합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동독의 마르크는 서독의 마르크에 의해 대체된다. 그 때까지는 동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그것은 동독에 2단계의 은행체계(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영업의 자유, 임금과 가격에 대한 규제의 해제, 실업보험의 도입과 다른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35014 Ge 33 Band 1

담당자 / 기관_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위원장 한스 슈나이더,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이다. 경제전문자위원회는 독일 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신뢰받는 기구 중의 하나이다. 1990년 2월 화폐통합의 조속한 실현이 논의되던 시기에 경제전문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여러 관점에서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정부의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는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화폐통합이 동독주민이 대량으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독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서 자기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동독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폐통합이 경제개혁작업의 선두에 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동독에 도이치마르크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주민들에게 화폐통합을 통해 서독주민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항상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인데, 현재 동독의 생산성이 서독의 생산성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화폐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생산성이 곧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폐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이 실현된다면 눈에 보이는 소득격차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곧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연방정부는 재정균형배분제도를 통해 이런 격차를 좁혀야만 한다. 그것은 결국 공공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이 재정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아가 동독의 가격구조 또한 왜곡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 대해 동독이 갖고 있는 생산입지로서의 경쟁력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독주민들이 화폐통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면 동독을 떠나는 사람의 물결이 다시 거대해질 것이다. 나아가 화폐통합의 결과 서독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동독기업은 갑작스럽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화폐통합이 동서독의 경제적 통합의 마지막 단계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현재 동독의 정부가 아직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폐통합을 서둘러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독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독정부가 동독 이주자의 수용절차



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문서
번호 20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1990년 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브레멘대학 교수 루돌프 히켈

내용_

이 문서는 브레멘대학교 경제학과의 루돌프 히켈교수가 1990년 2월에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강연한 원고이다. 당시 그는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판적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학자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독과의 화폐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실험의 장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서독연방공화국이 출범했던 상황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이 동독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독경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화폐공동체를 도입한다는 결정은 경제적 이성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동독에 안정적인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동독은 자국의 화폐뿐만 아니라 재정, 경제정책의 자주성까지도 상실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한다는 것은 나아가 총통화량이 약 1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도이치마르크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동독 국유재산의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은 동독중앙은행에 보관하여 국민경제의 순환서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독에 질이 좋은 소비재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도이치마르크를 지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주민들이 도이치마르크로 보유하게 된 자금을 서독으로 이주하기 위한 밑천으로 사용하게 될 위험도 있다.

현재 월 1,300 도이치마르크에 달하는 동서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서독이 일방적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동독 중소기업과 주요산업 분야의 확대를 위해 임금보조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독에 실업보험체계를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약 250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시장요소의 도입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조치, 서독의 체제와 유사한 새로운 은행체계의 도입, 친환경기술의 도입, 인프라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실시될 경우 약 5년에서 10년 후에 서독과 유사한 발전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지금 서독의 화폐정책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기 화폐교환율을 1:3으로 잡으면 적어도 동독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이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1:1의 교환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동독에서 자금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독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일종의 '선투자'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예로 1,000억 마르크의 10년 상환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방은행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 서독정부의 국방비 예산을 약 100억 마르크 감축하는 방안, 기업의 재산에 대한 세금, 계획된 기업의 세금 인상분 중에 약 300억 마르크를 포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과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동독의 정치범을 도와주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주하고 있다.

출처_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문서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번호 21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의 달성, 재정문제” 정책그룹-정책그룹의 팀장인 서독 연방재무부의 슈타르크 국장이 당시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호스트 쾰러는 그 후에 세계은행 총재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과 화폐문제를 담당할 실무그룹과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2차례 전문가회의가 열렸고 동독측에서 이 회의에 아주 협조적이었다. 전문가그룹과 실무그룹의 업무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비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문서
번호 22

동독중앙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평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도입한 동독의 중앙은행법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74년 12월 19일에 제정되었던 중앙은행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따라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의 국가기준은행으로 국채와 국가경제의 회계기구가 된다. 국가의 중앙은행은 화폐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시중은행과 저축금고에 대한 은행감사 또한 중앙은행의 업무에 속한다. 동독 내에 다른 국가의 은행이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도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장은 통화, 화폐정책 및 대출정책의 실현에 관한 법안을 제안할 권리도 갖는다.

출처_ DDR-Gesetzblatt 1990 I/16, 125

문서
번호 23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동독을 대신하여 서독이 의무이행을 보장한다는 합의의 사본이다. 이 합의를 통해 채무보증절차, 연방감사국에 의한 검토와 행정적 검토 등이 합의되었다.

출처_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H 1360/8-1/90



문서
번호 24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Horst Kaminsky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가 동독의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을 승인하기 위해 내린 지침이다. 이 지침의 부록에서는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이 포함되어 있다. 회칙은 저축금고협회의 법적 지위와 협회의 소재지, 업무와 권한, 조직, 이사회, 총회와 자문위원회, 협회 지도부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NN, S. 233-236, Ausgabetag 25.04.1990

1990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하우스만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사회적시장 경제가 성공적으로 동독에 도입되고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수 있기 위해서 동독에 도입되어야 할 기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사법과 행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지침으로는 다른 여러 사항 중에서도 생산, 물자제공, 투자 그리고 인력투입 등과 같은 기업가적 결정과 가격문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획지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동독경제의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를 위해 환경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경제화폐공동체가 출범할 때까지 개정되어야만 하는 동독의 법률: 개인소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대지에 대한 법조항의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동법, 기업법, 공동결정권 그리고 노동쟁의권이 서독 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맞추어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늦어도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때에는 효력을 발휘해야 할 새로운 법: 가능한 한 인민소유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전환, 민간상업은행과 보험의 허용, 타지역의 점포 허용, 가격규제의 해제와 가격감시제의 도입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번호 26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노동복지부장관 노베르트 블림(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내용_

- 동독은 그곳에서도 시장경제의 사회적 요소가 뿌리를 내린 뒤에야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서독정부에 대한 신뢰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된다.
- 2:1 화폐교환비율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회보조금제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화폐교환비율은 서독 연방주들에서도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문서
번호 27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년 4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실

내용_

독일 양국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목표와 이와 관련된 독일 마르크 화폐영역의 동독지역으로의 확대에 대해서 중앙은행위원회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다음 규정을 동독과의 국가조약을 통해 명시한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문서
번호 28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연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1990년 4월에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의 중에 소련 대표단과 서독 연방정부의 대표들이 만나서 동독과 소련 간의 경제관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 대표단은 소련이 서독과 화폐경제사회연합을 구성하더라도 동독이 필요하다면 서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련에 대한 지불의무를 계속 이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그에 대해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서독 또한 소련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먼저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동독을 제외하고 소련과 서독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문서
번호 29

경제화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베를린 시장실장 디터 슈뢰더가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보낸 것으로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사회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서베를린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서베를린 시정부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통일된 베를린에도 기존의 연방국가와 법칙국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소위 말하는 동독식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독 지도부의 엘리트들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지자체와 기초단체들, 그 외의 행정단위들 간의 협력과 관련된 조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동독정부에 의한 통제를 폐지해야 한다.
- 베를린시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베를린 시정부와 협의한다.
- 통일된 베를린의 행정주체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을 강화한다.
- 동베를린에 소재한 문화기구의 조직과 재정은 국가가 관리한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정부 간에 진행되던 화폐경제사회통합에 대해서 소련측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90년 4월에 소련 외무성은 서독정부가 본에 있는 소련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실현 조약에 관해 동독 대표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안’을 전달받았고 그에 관해서 소련의 입장과 질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서를 동독의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안을 보면 독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승전연합국이 독일문제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동서독정부는 국제조약의 대상국이 유럽공동체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모든 조약의 규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2. 화폐경제공동체조약의 초안을 보면 2+4회의에서 먼저 협의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초안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통일된 국가를 건국’한다는 조항이 그런 문제가 있다.
3. 이 조약이 4대 승전연합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조치와 결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4. 연방정부의 부처나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의 관청이 동독영토에서 활동을 할 경우 동독의 법질서와 동독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5.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은 소련과 다른 국가의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6. 소련은 조약 초안 중에서 상호경제원조와 관련하여 동독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2조 12항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7. 동독영토에 주둔한 소련군의 잔류여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8. 이 조약이 비스무트 독소합작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이 합작회사는 동독의 튜링겐과 작센지역의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하던 회사로 소련의 핵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9. 이 조약으로 인해 동독과 소련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10.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모두 2+4협상의 외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 문제들이 불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다른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연맹(Europäische Gemeinschaft)

내용_

- 제I장 기초(제1-9항) : 1990년 7월 1일부터 독일 마르크(DM)는 공동 화폐,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이 된다. 이전의 모든 동독 마르크(DDR-Mark) 관련 의무 및 요구사항들은 독일 마르크로 변경된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회시장경제가 도입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 동독의 헌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은 동독에서도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관청은 상호 간 업무를 지원한다. 동독에는 자유, 사법상의 중재 판정법이 도입된다. 노동재판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등한 재판소에서 결정권을 위임한다. 서독과 동독정부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II장 화폐통합에 대한 규정(제10항) : 연방은행은 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연방은행법 제12조). 동독 금융시장은 민간 경제 신용은행 체제, 자유로운 금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엄격히 규제된 이자율 체제를 도입한다. 봉급, 임금, 장학금, 연금, 임대료, 임차료 및 기타 지급수단은 1:1로 전환한다. 다른 모든 의무사항과 관련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2:1로 전환한다. 이는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계좌를 둔 사람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 제III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제11-16항) : 동독은 고정가격, 높은 고용률, 현대적인 작업장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1951년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했던 무역거래는 철폐되고 내국 규제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제거된다. 동독은 국제 경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경제원조평의회 국가들과의 관계는 확대된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동독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 제IV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제17-25항) :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은 국가 감독 하에 있는 자치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사업자와 고용인에 의해 반반씩 부담된다. 1991년 1월 1일까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형성된다. 보험의무 및 의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 등은 서독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때 특히 여성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고려된다. 동독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은 서독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병고 시의 보상지급 등 포함). 이전

까지 획득한 연금 청구권 및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은 동독의 임금과 봉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제V장 국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규정(제26-34항) 제26항(재정정책): 동독의 국가 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동독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회 분야, 경제기업, 운수업, 독일 제국철도와 도이치포스트의 운영. 동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삭감: 예산 보조금의 철폐, 인건비의 삭감, 모든 지출내용의 검사, 교육제도의 구조개선 및 연방 구조의 도입(연구 분야 포함). 국유재산은 검토하여 구조개선 및 동독 국가 예산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제27항(신용거래 및 채무):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용 권한은 1990년에 100억 DM에서 1991년에 140억 DM으로 제한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1990년에 70억 DM과 1991년에 100억 DM의 신용 권한 제한이 적용된다. 제28항(서독의 재정 지급): 서독은 동독 국가 예산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20억 DM 그리고 1991년에 350억 DM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또한 동독 연금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7억 5,000 DM 그리고 동독 실업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0억 DM, 1991년에는 30억 DM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1971년에 도입된 서독과 베를린(서)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및 통관을 위해 통과국이 지불하는 일괄 사용료는 더 이상 서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서독은 또한 여행자 외화기금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제29항(공공서비스): 동독은 연방인원대표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을 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30항(관세 및 소비세): 동독은 단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조세법을 적용한다. 소비세의 제한규정은 철폐된다(담배 제외). 제31항(재산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세금제한선 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주권은 간접 받지 않는다. 사전 세금 공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계약 상대방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매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일방향 계약 상대방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방만 과세를 한다. 쌍방향 계약 상대방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생활의 중심 정도 및 영업소의 위치에 따라 과세를 한다. 다른 계약 상대방의 경우, 상대방의 국내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제32항(정보교환): 서독과 동독은 세법과 독점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33항(이중과세): 재산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는 서독과 동독 재정장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제34항(재무행정의 구조): 동독은 서독 재무행정의 법에 상응하는 3단계 재무행정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및 관세 행정청을 설립한다.

지도 원칙에 관한 공동 프로토콜:

- 일반 지도 원칙 : 동독은 유럽공동체법(EG-Recht)을 토대로 한다. 민간경제와 자유경쟁은 우선시된다. 계획규정은 철폐된다.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토지와 땅과 기타 경제 활동을 위한 제품수단의 취득, 권한 및 이용은 자유롭다. 국영기업체는 경제적,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민영화한다. 서독의 우체국법(Poststrukturgesetz, 우편신고제도



및 통신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단체 및 조합은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국가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 개별법 분야의 지도 원칙: 법원과 의회는 분리되고 재판관의 보고의무는 철폐된다. 토지 저장권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다. 보험 독점체제와 국제무역 독점체제는 폐지된다. 동독의 통계는 서독의 통계에 따라 조정된다. 동독은 서독의 건축법전(Baugesetzbuch)과 공간이용법(Raumordnungsgesetz)에 부합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서독사람들은 동독에서 임시적으로 서독법에 따라 고용될 수 있다. 동독의 노동보호법은 서독의 노동보호법에 맞게 조정된다.

부록

- 명시된 서독법과 법규정에 관한 수정사항 및 독일연방은행, 연방은행감독청 및 연방보험감독청의 규정에 관한 수정 사항은 앞으로 동독에서도 적용되며
- 샤로텐부르크 지방법원(서베를린)은 신용제도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게 된다.
- 1973년 12월 19일에 제정된 동독의 통화법(Devisengesetz)(GBI. 1 Nr. 58 S.574)은 폐지되고 동독 국립은행은 해체된다.
-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공장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또한 서독과의 합의 하에 외국과의 화물, 서비스, 자본 및 지불 유통에 관한 법안과 규정, 가격형성과 가격감독에 관한 법안, 동독과 서독의 주민등록 관청 간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독의 세무상담과 회계감사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1991년 1월 1일까지)
- 그 외에도 고용장려법, 장애인법, 병고 시의 보상지급법, 사회보험법, 연금조정법, 노동법상 중재위원회에 관한 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제정된다.

출처_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쪽, 제9항, 1998년 6월 9일에 제정된 법(BGBl.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BGBl. I S. 1242))



문서 번호 33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부록: 동독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 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DM 개시 대차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라우제 청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의 4차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1990년 5월까지 진행된 신탁청의 업무와 개별기업의 수익성 검토 그리고 신탁청이 본 재산평가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크라우제 신탁청 청장이 기업의 민영화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이어서 차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나아가 신탁청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5월 22일까지 이미 273개의 인민소유 기업이 유한회사로 전환되었고, 588개의 기업을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마르크가 도입되고 난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토 대상이었던 2,200개의 인민소유 기업 중에서 31%만이 도이치마르크의 도입 이후에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고, 42%는 일단은 적자를 보겠지만 회생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27%는 파산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이치마르크로 전환 시 기업의 수익성 평가와 재정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서독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는 나아가-소유권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한-동독기업의 재산평가에 관한 정보와 3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평가기준을 볼 수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1/17490

문서
번호 34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재무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독일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가 통일문제에 관해 동독의 각 부처 담당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부처의 대표들이 서독정부가 그때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재정적 건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문서
번호 35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대한 폴란드정부의 입장
1990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 스키

내용_

이 문서는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스키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과 관련하여 동독 외무장관 메켈에게 전달한 폴란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문건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문제에 관한 폴란드의 입장 또한 전달되었다.

이 문서에서 폴란드정부는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과 나아가 독일통일이 가져올 수 결과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폴란드정부는 독일통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독일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폴란드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도의 문서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된 독일의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36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 소유권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소유권을 몰수당했거나 국유재산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조에는 국유재산에 대해 원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소유자는 해당 토지, 건물 또는 사업체를 관장하는 기관에 해지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토지, 건물과 사업체의 반환은 법률적으로 공증되어야만 한다.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사용방법과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1) 그 대상물이 공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거나, (2) 이미 공공목적에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3) 주택건설 또는 주거지 건설에 통합된 경우, (4) 또는 그 대상이 한 사업체에 흡수되어서 그 소유권을 반환할 경우 사업체에 경제적인 해가 될 경우 그것은 소유권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Einigungsvertragsgesetz-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37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유 건물과 부동산은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소유자가 반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은 공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소유자는 해지금을 지불해야하며, 그 이후 모든 권리는 새로운/원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Einigungsvertragsgesetz-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38 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조치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소련에게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 입장에서 소련에게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이유는 소련이 자체적인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독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소련이 당시 안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부족문제도 언급된다. 소련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굳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서독 연방정부는 소련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독일이 독일통일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이 소련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소련이 개혁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방의 국가들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소련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독일의 나토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군축과 군사무기감시 그리고 유럽안보협력체제 CSCE의 제도화 등도 포함되었다. 소련은 독일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독일의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련에 차관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서독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담보가 보장되고 차관을 상환하면 서방의 은행과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됨으로 소련의 요청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나아가 소련의 개혁정책이 지속될 때에는 서방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01 (212)-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문서
번호 3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내용_

이 법안은 화폐통합 과정에서 자본과 금융거래를 규정하는 것으로 총 네 파트로 구성되었다: 1. 법률 규정과 실천, 2. 보충조항, 3. 형사처벌과 감독에 관한 규정, 4. 결론과 과도기 규정. 제1부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물자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그리고 금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거래제한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은 나아가 거래제한과 거래허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범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문서
번호 40

대외무역과 자본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Ministerra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내용_

이 문서는 대외무역거래법의 시행령이다. 10장, 7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외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41/600



문서 번호 41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경제화폐통합 직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경제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정부 재무부에 한시적으로 '화폐전환 감사국'을 설치한다. 이 기구는 화폐전환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누가 10만 마르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개인구좌에 보유하고 있는지 1990년 7월 6일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사국은 나아가 동독의 법인체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개설한 구좌 중에 보유금액이 25만 마르크를 초과한 구좌를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정보를 검토, 정리하는 작업을 서비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감사국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는 경우 해당 형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출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동독의 법인체 중에서 1990년 6월 30일 현재 보유금액이 25만 동독 마르크 이상이며,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보유금액이 20만 동독 마르크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필히 감사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동독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화폐전환신청을 제출한 경우 1990년 6월 30일에 보유금액이 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고,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3만 동독 마르크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감사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감사업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동독정부 재무부에서 보상해 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담당자 / 기관_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_

이 문서는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폐전환의 실시에 있어서 신고된 보유예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가 화폐전환을 위해 신고된 보유예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의심을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1990년 7월 8일까지 그와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 1990년 10월 1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내에 항의서를 제출하여 결정사항의 실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항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2주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위원회에서 그 항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이 2주 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문서
번호 43

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중앙은행의 후속기관으로 설립된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법이다. 이 은행의 지주는 동독 국가이다. 동독 국가는 이 은행의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이 은행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이 법을 통해 은행 대출의 인수자와 인수시기가 규정되었다. 이 은행은 특히 화폐경제공동체의 도입 이후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안정 문제, 신탁청을 포함한 법인체와 공공기관의 은행거래문제, 공공사업의 재정과 동독의 경제 인프라, 주택환경 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사업의 재정 조달 그리고 국제무역과 금융거래, 국제금융기구 참여, 은행 간의 거래 등을 관할한다. 베를린 국가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폐 대출시장을 통해 리파이낸스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고 용자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사업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은행 업무의 주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이다. 은행의 기구로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동독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회칙의 변경은 총리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한다. 연간 수입을 통해 조성되는 예비금에 대해서는 동독정부의 재무장관이 결정한다. 재무장관은 나아가 은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도 수행한다. 통일 이후에는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에게 넘겨진다.

출처_ DDR-Gesetzblatt 38, 504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

내용_

이 문서는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실현 이후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이 외국 또는 서독의 계약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무 또는 채권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의 채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동독 경제부에 정리특임관실을 설치한다. 대외무역업체들이 자본회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본회사가 대외무역업체의 후계자가 된다. 자본회사의 창설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업체가 보유한 채권과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난 후에 남은 만큼의 재산을 자본금으로 넘겨 받을 수 있다. 재산의 가치는 1990년 7월 1일자로 회계정산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결정된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회계정산을 마치고 그때까지 남은 채무와 채권관계는 신탁청에 의해 설립될 자본회사에 위임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산작업은 1991년 3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한다.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이 더 많아서 얻게 되는 재원은 신탁청으로 이전한다. 대외무역업체의 은행구좌는 독일대외무역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한다(이 은행은 동독에서 국가 간의 차관제공, 재정거래 그리고 채권과 채무관계를 처리하던 특수은행이다). 대외무역업체의 정리특임관실에 의해서 작성된 인력계획서는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달 소요되는 재정 또한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리특임관은 1990년부터 매월 정리현황에 관하여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한다. 이미 자본회사로 전환된 대외무역업체 또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문서
번호 45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 조약)에 관한 제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정무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바이에른(Bayern)주, 함부르크(Hamburg)시,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베를린(Berlin)시, 유럽공동체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1차 협상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정부는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에 찬성하며 1990년 12월에 독일 전역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1대 전 독일 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는 조약을 제2차 국가조약이 아니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으로 칭하도록 한다. 동독정부의 입장은 전 독일 총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 동독지역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동독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정부는 '통일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독 기본법 제23조는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가입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통일조약의 초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조약의 협상과 관련하여 동독정부가 협상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조약은 양측의 입법 기관으로부터 2/3 찬성을 받아 비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를 조약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서독정부는 전 독일 선거가 편입 전이나 후에 실시되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서독정부는 전 독일 의회에 독일연방 수도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기를 원하였다. 반면 동독측은 통일독일의 수도 문제를 '통일조약'을 통해 규정하기를 원하였고, 베를린을 수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동독정부는 그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명칭과 기존의 '국가(Deutschlandlied)'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동독측은 통일된 독일의 국호를 '연방독일공화국(Deutsche Bundesrepublik)'으로 하고 국가도 가사 내용상 기존의 도이칠란트리트의 멜로디와 잘 어울리는 동독 국가를 1절로, 서독 국가의 3절을 새로운 '국가'의 2절로 구성하여 새로운 독일 '국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 동독정부는 신탁관리청(Treuhandstelle)의 업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오로지 동독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독지역에 새로이 만들어질 연방주의 재건을 담당할 ‘재건부(Aufbauministerium)’ 혹은 동독의 주정부 총리들로 구성된 특별 회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동독측은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Staatszielbestimmung)에 관한 조항과 사회적 보장권에 관한 조항은 개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 회담 참석자들은 기타 절차와 차후 일정에 합의하였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문서
번호 46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동독지역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후 가입과 관련하여 동서독정부가 논의하여야 할 주제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다. 통일조약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통일조약의 기본적 구조; 조약의 전문과 대상; 동독지역에 신설될 5개 주의 서독 연방 가입; 기본법상 요구되는 개정; 법 통합 및 행정 통합의 제반 원칙;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처리 문제
- 신설 주를 위한 재건부 설치
- 베를린: 독일의 수도에 관한 기본 결정
- 재정 문제: 동독의 예산 시스템을 서독의 예산 시스템으로 재편
- 신탁관리청
- 유럽공동체 법 도입과 신설 5개 주에 대한 과도기 규정의 강제성
- 코메콘(이하 RGW)과 소련, 그리고 기타 코메콘 회원 국가들과 동독이 체결한 경제 조약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규정
- 국제법상의 조약: 서독과 동독이 각각 국제법상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필요에 따라 조정
- 안보 정책상의 문제점(2+4 협상의 결과들)
- 대학, 학교, 교육, 문화: 주정부 헌법과 주정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과도기 규정을 적용
- 동독지역의 소수 민족 권리 보호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문서
번호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지침은 저축금고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크레딧차입, 저축금고 자산의 투자(예를 들어 신용기관 또는 부동산), 서비스와 기타 업무(주식거래, 외환거래, 금고의 대여) 등을 규정한다. 이 지침의 부록에는 저축금고 회칙의 견본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문서
번호 48

어음에 대한 이중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지침은 어음거래에 대한 세금규정이다. 동독에서도 199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음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문서
번호 49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연방은행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용자기관에 대한 감시를 연방관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은 연방중앙은행에 자문을 구하고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 28조 1항의 조치에 따라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문서
번호 5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산에 관한 법(DM-대차대조법)

1990년 9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규정에 따라 동독의 기업과 콤비나트를 전환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1990년 7월 1일에 동독에 거주하였던 모든 상인이 1990년 7월 1일 까지 도이치마르크로의 전환에서 소유하게 될 재산시설 목록과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51

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신용 관리국, 독일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젤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 과정에서 금융과 대외무역을 담당하였던 기관의 재정결산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먼저 두 개의 개념을 정의한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동독에서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기업은 금융기관이라 부르고 1990년 7월 이전에 동독정부의 지시로 동독 외부에서 다른 국가 또는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거나 대외무역을 담당했던 기업은 대외무역업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대외무역업체의 사업 전체 또는 정리를 목적으로 기업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는 연방금융감독원과 도이치뱅크에 1991년 3월 15일까지 화폐통합 이후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연방금융감독원에서 화폐전환 과정에서 대차대조법에 의거하여 이들 금융기관과 기업의 보유재산의 가치와 채무가 정확하게 전환되었는지 검토하고 결산서를 확인해 준다. 이 절차는 회계사에 의한 검토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의 자산가치와 채무는 1990년 7월 1일자 재정결산을 근거로 산정된다. 연방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화폐전환과 관련한 모든 업무자료를 비롯하여 자산과 채무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담당자 / 기관_ Günter Pehl(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내용_

이 문서는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화폐통합문제를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의 핵심적인 질문은 신속한 화폐통합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독의 경제위기가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구동독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지는 반면 서독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서독경제의 호황은 1990년 하반기 이후 심지어 더 촉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독이 누리던 호황은 1980년대에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다. 1990년 들어 서독경제는 생산과 고용 모든 부분에서 확장세를 보였고, 생산시설은 생산력의 90%까지 가동하고 있다. 서독경제가 이렇게 팽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특히 1990년 하반기에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격하게 팽창하였기 때문이었다. 화폐통합으로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동독의 민간수요의 대부분이 서독기업에 의해 충족되게 되었다. 만일 동독으로부터의 수요가 없었더라면 서독경제의 총생산량이 5.5%가 아니라 약 4% 정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서독 국민총생산은 1990년에 2조 4,400억 DM이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2,435억 DM으로 서독에 비해 약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체제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기업의 생산품의 판로가 급격하게 사라졌고 그로 인해 생산활동 자체를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동유럽 기업들과의 거래도 점점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동독산업의 생산 자체가 반으로 줄었다. 많은 기업들이 신탁관리청으로부터 받는 차입금으로 유지되었다.

경제전문자문위원회와 연방은행장과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동독경제를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독 마르크의 도입, 즉 화폐통합은 이런 체제전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1990년 2월 7일에 동독정부에게 신속한 화폐통합을 제안하였다. 사민당 내에서도 신속한 화폐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경우 신속한 시장경제적 개혁을 원하지 않았지만 로타 드 메지에르는 신속한 화폐통합을 선호하였다.

문제는 화폐통합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헬무트 콜 수상은 도이치마르크와 시장경제 그리고 서독의 사회법의 도입을 통해 동독에서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자민당이 요구한 대로 동독에서 기업세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다. 연방정부는 독일통일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적 부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로 인해 서독 재정과 서독주민들이 재정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출처_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brary.fes.de/gmh/main/pdf-files/gmh/1991/1991-01-a-026.pdf>

문서
번호 53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도입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

1991년 1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젤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연방회의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농림산업부장관이 신청한 5,000만 마르크의 추가예산을 집행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동쪽지역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발전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투자금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3/91



문서 번호 54 **마르크 도입과 관련한 대차대조법의 개정 발표**
 1991년 4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젤, 신탁청

내용

이 문서는 1991년에 연방정부 법무장관의 명의로 발표된 개정안으로 기업의 자본금과 재정 결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7월 1일에 동독에 본사를 두었고 상업법에 따라 회계의무를 갖는 기업은 1990년 7월 1일 화폐교환 당시 DM-대차대조표와 시설 장비목록 그리고 정산방식과 평가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조치는 국영 콤비나트와 기업, 독립적인 시설 그리고 기타 경제단위로 등록된 모든 단체, 인민소유 재산과 동독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동독 국영기업의 지사, 주식회사로 전환과정에 있는 기업 외에 지자체의 모든 경제 관련 단체에 해당한다. 1991년 6월 30일까지 현재 창립 또는 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은 1990년 7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기업은 나아가 상법 240조에 따라 1990년 7월 1일자로 시설장비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990년 7월 30일 이후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이전받은 기업은 이전받은 재산도 목록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해 제약조건이 존재할 경우 그것 또한 명시하도록 한다. 국가와 신탁청에 대한 채권, 채무는 별도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채무의 경우 용자조건을 설명하도록 한다. 화폐교환 시의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해 재산과 채무를 다시 평가하도록 한다.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동독의 경제부가 추천하였던 가치평가기준에 따라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로 결정된 채권은 2:1의 교환비율로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한다. 임대료와 임차료 등과 같이 1990년 6월 30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1의 비율로 전환한다. 1990년 7월 1일 이전부터 있었던 정부 지출 금액 또한 2:1로 교환한다. 그 외의 임금, 급여와 장학금, 연금 등은 1:1의 교환율이 적용된다.

각 기업과 경제기관이 제출한 재정대차대조표와 그 부록에 대한 감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감사규정에 따라 공인된 회계사와 회계회사에서 진행한다. 연방법무부장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회의의 동의와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경제장관의 동의 하에 기업의 자본금 자료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켈, 연방경제장관 헬 무트 하우스만

내용_

이 문서는 통일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유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해결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해결재산에 관한 규정법은 동독정부 하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상없이 또는 아주 낮은 보상만 받고 인민소유재산으로 몰수되었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건물이 세워진 대지와 관리비용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인해 높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인민소유로 전환되었던 건물에도 해당된다. 이 법은 나아가 국가가 관리해 오던 동독을 탈출하였거나 불법으로 떠난 동독주민의 재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나아가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사이 나치체제에서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박해받고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몰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상실한 시민과 단체의 재산권에도 적용된다.

개인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재단이 합법적으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재산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의 이용방식이 이미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공동주택 또는 주택단지의 건축에 이용되었을 경우 그리고 건물의 반환으로 인해 기존 기업의 생산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 또한 재산권이 반환되지 않는다. 몰수된 기업에 대한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몰수되었던 시점 이후의 경제발전,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업의 조건이 유사할 때에는 그것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원소유자에게 재산을 반환해 주지 못하거나 원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기업이 인민소유로 몰수되었을 당시의 가치에 따라 도 이치마르크로 보상해 준다. 당시 동독에서 매도한 가격 또는 포기하면서 받은 금액은 보상액에서 제하도록 한다. 이때 계산기준은 동독 마르크와 서독 도이치마르크 간의 2:1 비율이다.

여러 사람이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기업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또는 사업장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기업의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 의해 해당 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평의회에 분할문제에 관해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관할할 관청이 연방주 차원에서 설치될 때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관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 나아가 연방주 정부는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해결재산문제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는 청급의 연방관청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를 담당할 연방관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tag 26.04.1991



문서 번호 56 동독기업의 인수-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사민당의 의원이 도이치뱅크에 의한 독일신용은행 인수사례에 관해 질의한 것에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 의원들은 도이치뱅크와 독일신용은행 간의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었는지에 관해서 밝히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이 도이치뱅크에 의해 인수될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연방정부는 인수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문서 번호 57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
1992년 1월 6일

담당자 / 기관_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내용_

서베를린의 베를린은행이 1991년 6월 27일자로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동독의 마지막 신용기관인 베를린시은행을 4,900만 DM에 인수하였다. 베를린시은행이 보유한 자기자산은 4억 9,570만 DM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과정에서 신탁청이 인수의사를 가진 다른 기관과 진지하게 협상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베를린은행은 베를린시은행의 직원 1,090명의 계속 고용을 보장할 의무도 없었다. 베를린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수 있는 경우에만 750명 정도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인원마저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처_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iegel/pdf/13679257>

담당자 / 기관_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튀링겐주와 서독의 헤센주가 공동으로 저축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협약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헤센주와 튀링겐주는 두 연방주의 주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축금고(Sparkasse)의 지역 금고협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헤센-튀링겐주 공동의 저축금고협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구의 목적은 튀링겐주의 저축금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두 연방주의 개발기회를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저축금고, 지로구좌협회, 공동의 주립은행, 주택은행과 보험을 포괄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두 연방주는 헤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가 튀링겐지역의 저축금고와 그 협회를 받아들여서 헤센-튀링겐 공동의 기구로 존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협회의 명칭은 헤센-튀링겐 저축금고 및 지로구좌협회이다. 이 협회는 비영리목적의 단체이다. 이 협회는 저축금고를 통제하기 위해 운영부서 외에 감사부서를 둔다. 이 기구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은 헤센과 튀링겐 주정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저축금고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 또한 양쪽 주정부가 갖고 있다.

헤센 주립은행은 헤센-튀링겐-지로구좌센터로 개칭된다. 이 은행의 지주는 헤센과 튀링겐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이다.

헤센과 튀링겐주는 각 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동일한 저축금고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과는 별도로 두 연방주의 감독원이 각 지역의 저축금고를 관리감독한다. 그리고 두 기관은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출처_ HessGVBl. I S. 190, ThürGVBl.S. 291

문서
번호 591991년도 연방은행 사업보고서
1992년 4월 2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은행의 1991년 사업보고서이다. 1991년 독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이 보고서에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동시에 구동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그리고 민간경제에서 대규모 투자가 없이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서독에서 진행하려던 사업들 중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어둘 필요도 있다. 더욱이 통일된 독일은 그 크기나 국민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서부유럽의 통합에서 핵심적인 국가의 하나이며 유럽 전체의 변화과정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형성되는 유럽대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주변국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독일은 이제 40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동서독 두 지역의 주민들이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첫걸음을 디뎠다. 무엇보다 안정된 구조와 강력한 경제성장은 서독경제로 하여금 높은 공적인 이전지출을 통해 구동독지역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신연방지역에서 형성된 구매력은 서독지역의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성장동력을 가져왔고 구동독지역에서도 1991년에는 서독으로부터 제공되는 막대한 이전지출에 힘입어 서서히 경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성과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동독지역 주민의 삶의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무거운 유산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_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담당자 / 기관_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내용_

이 문서는 1992년 12월 17일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등 4개의 신연방주가 체결한 저축금고협회에 관한 조약문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축금고 동부협회의 회원은 이 협약을 체결한 신연방주의 저축금고와 지역금고들이다. 본 협의회는 공법에 따른 법인체로 협의회 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단이 있다.

협의회는 저축금고를 지원하고 저축금고 및 감독기구를 자문해주며, 저축금고 조직을 관찰하는 기구를 도와주고 회원조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 협의회는 각 연방주에 개별적으로 자문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제안권도 갖는다. 협의회는 개별적인 연방주에 직접 연관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그에 관해 미리 해당 연방주에 통보하여야만 한다. 협의회는 나아가 감독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그리고 협의회는 각 연방주의 감독을 받는다. 각 연방주의 감사원은 공동으로 협의회 예산과 회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조약을 체결한 연방주들은 통일된 저축금고법을 도입,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 합의문은 모든 주들이 승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며 그 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_ 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



문서 번호 61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내무부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사민당 소속 슈미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 내무차관인 바펜슈미트가 답한 것이다.

서독은 1959년 이후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주민들에게 환영금을 지불해 왔다. 이를 위한 비용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나아가 1964년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환영금 외에도 각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로 환영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는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1984년에서 1989년까지 연방정부는 약 20억 마르크를 환영금으로 지출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문서
번호 62

사회시설의 구채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Linke Liste)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바라라 휠 민사당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이 답변에서 연방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조약 21조 21항에 따라 동독의 사회시설의 소유권은 대부분 구동독의 지자체로 양도
되었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의 지자체가 동독체제 하에서 사회시설이 책임져야 했던 채무
도 지자체가 책임지게 되었다. 독일신용은행이 사회시설에 제공한 크레디트는 1990년 7월 1
일 현재 약 50억 DM이었다. 구동독 지자체의 사회시설이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신탁청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 구동독의 주택회사가 안고 있는 구채무는 법적으로 구속
력이 있는 부채이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관계는 새로
운 관계에 맞게 조절한다는 특별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독의 법을
따라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조약 22조 4항은 동독 주택회사의 주택이 안고 있는 부
채는 신연방주의 지자체로 양도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연방주 지자체의 현재
재정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것만은 아니어서 사회시설의 구채무를 자체적인 예산으로 상환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문서 번호 63 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채무상환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이 기금을 통해 1995년에 신탁청과 채무청산기금 그리고 지자체 주택회사의 구채무 일부가 연방정부의 특수자산으로 통합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 이 기금이 설립되었을 당시 부채는 총 3,360억 마르크(약 1,717억 9,000 유로)였다. 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은 연방정부가 부담하였다. 이 기금의 설치는 연대협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연방은행의 수입 중에서 35억 유로를 상회하는 부분은 이 법의 6조에 따라 이 기금으로 직접 흡수되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통해서만도 508억 유로를 갚을 수 있었다.

구동독구채무상환기금의 독일어 표현은 Erblastilgungsfond이다. 이 명칭은 역사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독일어로 Erblast라는 표현은 이 기금을 통해서 통일된 독일의 연방정부가 지는 부담은 연방정부의 정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라는 국가가 40년 동안 존속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금이 구채무를 상환하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래의 명칭이 갖는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이 명칭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수상이 구동독구채무상환은 종결되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정책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1,000억 유로를 더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tag 26.06.1993 (Ar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Gesetz zur Umset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담당자 / 기관_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nanzen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정부가 통일 이후에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서독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처리 사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마르크를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악용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화폐교환 전 1990년 6월 29일에 동독정부가 화폐교환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을 도입하였고, 그 법은 통일조약을 통해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으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법에 따라 동독 재무부에 ‘화폐전환감사국’이 설치되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이 부서는 연방재무부에 소속되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요청을 금융기관에서 주관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였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경제법과 일반행정법의 통화규정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일반 시중은행이 처리하게 하는 것은 무리였다.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전문성면에서도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미 베를린에 외청을 설치한 연방재정청으로 이관되었다. 이 부처는 연방재무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감사국에 근무하는 33명의 직원은 연방재정청의 직원으로 신분이 변화한다. 이 부서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약 540만 마르크의 인건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 법률에 의해 감사절차가 확대됨으로 인해 약 1,000만 마르크까지 감사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환수받은 금액은 화폐전환균형기금으로 처리된다.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법의 기준을 준수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tag 04.09.1993

담당자 / 기관_ 라인하르트 폴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정부 출연 경제연구기관인 독일경제연구소(DIW)에서 화폐통합의 결과에 관해 작성한 분석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서독과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동독의 화폐가 서로 통합된 것은 유례가 드문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전환이 최적의 양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마련하는 준비는 대단히 어려웠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합의한 화폐전환비용은 안정성, 경쟁력, 예산 및 사회정책을 고려한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점을 찾은 일종의 합의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독의 구(舊)부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규정이나 동독 고정자산에 대한 주민의 배분비율이 불충분한 수준이었던 점 등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절하 및 자본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폐통합 및 정치통합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들을 극복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화폐 관련 변수와 실질적 변수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잠재적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폐량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했고, 특히 적절한 화폐량 책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관으로 작용했다.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진행한 화폐량 책정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연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놓은 화폐량 목표는 그 운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화폐량의 변동 양상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록 1991년 및 1992년의 기간 동안에는 서독에서 현격한 속도로 물가인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팽창적인 화폐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전담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및 1992년 기간 동안 나타난 서독의 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급격하게 불러오게 되었고, 아울러 물가 인상의 압박 역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결국은 소득의 규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과 경기침체의 가능성 또한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은행에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제 상황에 너무 늦게 대응했으며, 충분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

출처_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문서
번호 66

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PDS)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민사당 소속 크리스타 루프트 연방의회 의원의 질의에 이름가르트 카르바츠키 연방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신탁청 그리고 은행협의회는 현재 신연방지역의 기업을 위한 은행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경에는 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차관은 나아가 은행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여덟 개의 기업과 그 외에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15개의 기업을 밝혔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문서
번호 67

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년 3월 28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민사당의 바바라 뢰 의원(Barbara Höll)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답변을 통해 연방정부는 독일신용은행이 1990년 4월 1일에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자산은 연방예산에 이양되지 않았다. 독일신용은행의 민영화는 1994년 8월 30일에 베를린에서 신탁청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되었다. 1994년 12월 29일에 도입된 기업과 관련된 업무의 이양에 관한 신탁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연방정부가 독일신용은행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지연시키지는 않았다. 바이에른 주은행의 경우 매각계약을 통해 채권이 아니라 독일신용은행의 주식을 획득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1995년 연방예산안 초안 제0802장 항목 133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문서
번호 68

협동조합의 매각
1995년 10월 13일

담당자 / 기관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l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SPD)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탈하임 사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연방재무부차관 쿠르트 팔트호이저가 답한 것으로 탈하임 의원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이다. 그는 독일신용은행이 농업의 구채무를 상환하라고 막대부르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문서
번호 69

신연방주의 구채무 청산에 관한 연방감사원의 입장에 관하여
1995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Wieland Sorge(SPD); Bundes-
rechnungshof; Deutscher Bundestag

내용_

1995년에 연방감사원은 통일 이후 동독의 구채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빌란트 조르게 사민당 의원이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가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은행과 신용체계를 서독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동독지역의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이 높지 못하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정확히 지불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자부담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담당자 / 기관_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의 슈타르크 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이 질의는 동독의 구채무와 동독 금융기관을 서독의 시중은행이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작성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는 1995년 10월 11일에 연방의회 예산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증권법과 신용기관법에서 규정한 정보비공개원칙 때문에 슈타르크 차관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답변할 수 있었다. 연방감사원이 해당은행의 동의 하에서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금융기관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바이에른 주립은행이 선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슈타르크 차관은 나아가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동서독 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당시에 연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매각과정이 은행에게 유리하고 공공예산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슈타르크 차관은 이러한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독 은행들이 구동독에서의 업무를 위한 건물을 짓고 인력을 훈련하는 것과 같이 인프라구축에 많은 투자를 했어야만 했다고 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인력이 약 두 배 증가하였다. 동독은행의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110억 DM 이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1998년 정권을 잡게 된 사민당 슈뢰더 수상 시기에 재무차관을 역임한 하이너 플라스벡이 1996년에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에 조언을 주는 형식으로 작성, 발표한 영어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

- 통일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거나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간 공적 자금의 규모는 1993년 기준 1,700억 마르크에 달했다.
- 서독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및 국고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분단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러시아 서부지역 주둔군(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n) 철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일독일의 국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산출된다.
- 동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일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해서는 안된다.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

2.1 자본 수요에 관한 초기 견적

- 초기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필요 자금을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동독의 경우 국고 수입은 높은 반면, 국고 지출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2 동독에 대한 서독 공적 자금 지급

- 1993년에만 1,700억 마르크의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10억 마르크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매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되며, 저금리 융자도 제공된다. 동독에 대한 이러한 이전지출금은 자본시장 및 세수로 감당하도록 한다.
- 이전지출금을 서독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해소되었고, 동독에서의 경제 수요는 서독경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각 분야에 따른 자원 분배

- 이전지출금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과 교통체계 정비에 사용된다.
- 서독의 각 주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

- 통일 이후 그림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채무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및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으로부터 충당된다.
- 독일통일기금은 새로운 재정배분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 채무청산기금에서는 동독의 부채 및 채무를 인수했다.
 - 가장 중요한 그림자 예산은 신탁관리청이 담당하며, 신탁관리청의 최종 대차대조표는 (1994년 말 기준) 최소 2,750억 DM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 통일 이후에는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기금 및 개발촉진은행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동독 및 서독 국영 철도는 1994년 초 합병되었지만, 예산은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4. 동독 자본재
- 1989년 동독은 8,000억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물가수준: 1985년). 이는 서독 마르크로 약 3,190억 마르크에 해당하게 된다(물가수준: 1990년).
 -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제조산업에서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고무적인 의견으로는 동독의 자본재가 1,5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투자로 인해 향후 6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아울러 350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출처_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189-200